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일한공동심포지움

인권정보자료실

SAel.33

제2회 일한공동심포지움

■ 주제 :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일한공동심포지움

일시 : 10월 21일(화) 오전 10 ~ 오후 5시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강당(신관) (T 3476-0983)

주최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일한공동심포지움 일본측 실행위원회

후원 : 한겨레신문사, 월간 「말」지

심포지움 내용

- | | |
|----|--|
| 1부 | 사회
최규업 (전국연합 정책위원장)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의한 전후책임과 아시아 평화
발제자: 이장희(한국외국어대 국제법교수), 北川廣和(월간 '일한분석' 편집)
토론자: 조성범(전국연합 자주통일위원장), 이성우(부산연합 정치위원장)
伊藤 晃(千葉공업대학 교수, 현대사), 杉浦まこと(일한민중연대 공동행동) |
| 2부 |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수립
발제자: 강정구(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渡邊健樹(일한민중연대간담회 사무국장)
토론자: 김장수(통일맞이청천만개례모임 자료실장), 김근식(경희대 강사)
太田武二(생명존중네트워크 대표), 峯一也(아시아공동행동일본연락회의 전국사무국) |
| 3부 | 아시아 지역 평화와 진보를 위한 연대
발제자: 김용한(전국연합 미군기지대책위원장), 尾澤孝司(일한공동심포지움 일본측 실행위원회 사무국)
토론자: 이동진(전교조 부위원장), 유문중(한정협 부의장), 吉田満智子(단체 連島) 常阿雅雄 (조선문제연구회 대표) |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제2회 일한 공동 심포지움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일본 한일 공동심포지움 실행위원회

인사말

李昌馥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제2차 일한공동심포지움에 참석해주신 발제자, 토론자와 참석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자리를 함께 하기 위해 멀리 현해탄을 건너 오신 일본측 대표단 여러분께도 환영과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과 일본측 실행위원회는 지난 3월 1일 제1차 한일 심포지움을 일본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1차 심포지움은 3.1 조선독립운동 78주년에 즈음하여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로잡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생각한다'는 주제로 개최되어 매우 의미있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제1차 심포지움은 한일 양국 사이에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과거사에 대한 극복방향을 제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공동의 관심사를 양국 민중의 입장에서 허심하게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민중운동이 본격적인 연대를 형성하기 위한 소중한 경험의 장이기도 하였습니다. 제1차 한일 심포지움에서 보여준 일본의 양심적인 진보세력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환대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2차 일한 심포지움은 제1차 심포지움을 통해 얻어진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의 진보세력이 더욱 굳건하게 연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제1차 심포지움에서 다루어진 주제를 좀 더 구체화하고, 한국과 일본의 운동진영이 각각직면하고 있는 현안들을 상호지원하고, 나아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역내(域内)의 현안들에 어떻게 공동으로 대처해갈 것인지를 논의할 것입니다.

일본 식민지지배와 전후청산의 문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 그리고 아시아의 평화와 진보를 위한 연대의 문제 등 주요 현안에 관해 좀 더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미일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반평화적이고, 패권적인 신방위지침의 출현이라는 새로운 정세하에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해갈 것인지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진보를 위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역내 국가들의 민중 연대를 발전시키기 위한 협의도 진행할 것입니다. 그간 한일 운동세력의 연대는 주로 일본 양심세력의 지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습니다. 여기에는 냉전상황 속에서 한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국가보안법이라는 제도적 장벽이 큰 작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와 동북아의 국제상황은 이제 각각의 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운동진영 간의 국제적 연대가 긴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일본의 양심세력들이 한국의 민주화, 통일운동 그리고 인권신장을 위해 보여준 여러 가지 노력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제 좀 더 발전된 연대를 형성하기 위해 전국연합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만남이 한일 간 민중운동의 연대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행사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발제, 토론자 이하 모든 분들과 특히 먼 길을 마다않고 참석해주신 일본측 실행위원회 분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7년 10월 21일

인사말

제2차 일한공동심포지움 대표단 단장 吉松 鑑 (요시마쓰 시게루, 목사)

이번에 대선이란 귀국의 명운이 좌우되는 상황속에서 제2차 일한공동심포지움에 초청해 주셔서 마음속으로부터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본측 대표단은 미력이나마 지난 3월1일 한일공동심포지움에서 확인되며 그후 이번 제2차 심포지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과제에 대해 전력으로 토의를 거듭해 오면서 오늘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간 미일 양정부는 조선반도 유사를 빌미로 삼은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의 재검토에 관한 중간보고 이른바 가이드 라인'은 귀 단체가 3월 1일 한일공동심포지움 때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문제제기한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해지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내용입니다.

우리 일본측 참가자 일동은 먼저 이러한 새로운 '침략전쟁'으로 잇는 뿌리를 근절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면서 남북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분투하시는 귀 단체를 비롯하여 모든 민주세력과의 연대운동에 작은 힘이나마 기여할 결의를 새삼 다지면서 개회의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1997년 10월 21일

第 1 部

日本의 植民地 支配에 의한 戰後責任과 亞細亞 平和

▶ 발제자 ◀

이 장 회(韓國外國語大 國際法 教授)
北川廣和(월간 '일한분석' 편집)

▶ 토론자 ◀

조 성 범(全國聯合 自主統一委員長 代行)
이 성 우(全國聯合 釜山本部 政治委員長)
伊藤 晃 (千葉工業大學 教授, 現代史)
杉浦まこと(日韓民衆連帶 共同行動)

<1부 발제1>

일본식민지배에 의한 전후책임과 아시아의 평화

李長熙(한국외대교수/국제법)

- I. 일본의 전후책임과 아시아의 평화
- II. 한일기본조약의 재검토
- III. 일본군위안부문제와 청구권협정의 개정
- IV. 일본독도 영유권주장의 부당성
- V. 한일간 해양 분쟁: 베타적경제수역 설정문제와 직선기준설정의 부당성
- VI. 결론

I. 일본의 전후책임과 아시아의 평화

일본의 전몰유족회 회장이자 극우성향의 하시모토 현 일본총리는 많은 한국인이 우려한 대로 그의 재임이래 극우적인 발언을 많이 했다. 그 하나가 지난 1996년 2월 10일 독도영유권 망언이요 다른 하나가 지난 1996년 2월 6일 대동아전쟁의 정당화 및 일본군국주의 부활을 위한 평화헌법개정계획이다. 그리고 이것은 금년 9월 23일 미일 안보협력지침개정¹⁾으로 그 속셈을 들어냈다. 일본 이케다 유키희코 外相은 지난 96년 2월 9일 『한국의 독도접안시설공사』를 주권침해라고 하는가 하면, 애당인 신진당조차도 한국의 독도영유권주장을 “침략행위”라고 비난했다. 이것은 도대체 일본이란 나라가 같은 이웃나라로서 과연 앞으로 계속 상종 할만한 믿을 만한 나라이가를 의심케 한다. 많은 한국 지식인들은 최근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전혀 근거없는 일본정치인의 독도영유권 망언을 보고 일본지도층의 과거역사인식수준과 도덕불감증에 대해 경악과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한국인의 이러한 분노와 우려의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가 일본지도층의 과거사 인식에 전혀 반성이 없다는 점, 둘째는 일본이 과거 식민 침략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군사팽창주의에 깊은 미련을 갖고 재부활하려한다는 점, 셋째 이러한 일본의 겸은 속셈을 견제해온 미국마저 최근 자국이익때문에 이것을 묵인하고 있는 것을 일본이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점, 넷째, 일본의 이러한 군사팽창주의와 잘못된 과거사인식은 탈냉전후 시대정신에도 반할 뿐더러 일본의 국가이미지 손상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에 큰 위협이 된다는 점 등이다. 다시 말해 일본의 독도망언은 단순한 영토분쟁의 문제를 넘어 한일간의 왜곡된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데서 기인하는 문제이다.

독도영유권망언, 일본군국주의 부상, 일본군위안부 인권침해 손해배상거부를 비롯한 한일관계 과거청산이 아직도 미해결로 응어리진 근본원인은 한일과거를 매듭지었다는 소위 1965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한일기본조약)'과 4개의 부속협정(한일청구권협정, 재일교포법적지위협정, 한일 어업협정, 한일문화재협정)이라는 첫 단추가 처음부터 잘못 잡긴데서 비롯된다. 한가지 예로 독도문제망언도 1965년 한일 어업협정으로 1952년 평화선을 칠폐한 데서 온 것이며, 또 한일기본조약 어느 곳에도

1) 배정호, “미일안보지침개정과 한반도”, 경실련 통일협회 97년 9월 월례 토론회, 1997.9.26. 발제문 참조.

일제 36년 강점이 불법이라는 명시가 없음은 물론 기본조약 제2조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규정을 근거로 UN인권위의 권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군위안부손해배상을 일본정부는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일본침략전쟁을 마무리지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한국은 가장 큰 피해국이고 동시에 일제침략에 우리 독립군이 투쟁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요구에 의해 우리는 전승국가로서 참가하지 못하고 회담의 초청대상에서도 제외되어 버렸다. 바로 한국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샌프란시스코조약 때문에 한국은 일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요구하지 못하고 성격이 애매한 단순히 '청구권'만 제기하게 되었다²⁾.

그러면 우리민족은 왜 이러한 비애를 계속 받아야만 하는가? 여기에는 주변 강대국의 패권주의적 이해에도 원인이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양심적 민족세력이 이땅의 지배세력에서 항상 소외당하고, 부도덕한 친일세력이 지배세력으로 기득권을 유지해온데서 연유한다. 그 결과 한국의 국가정부수립초기부터 지배세력은 철저히 일제잔재를 청산하기는커녕, 친일세력을 정부의 주요 요직에 기용함으로써, 그들이 계속 한국의 지배세력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도록 해 왔다. 이러한 친일세력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체결시에도 그대로 지배세력으로 등장, 결국 일제36년을 합법화시켜주는 1965년 매국조약인 한일 기본조약체결의 배후세력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한일기본조약은 강화조약도 아니고 통상조약도 아닌, 성격이 애매한 것이고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강점을 기정사실로서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나아가 이 기본조약은 일본내부에서는 군국주의, 패권주의 및 국수주의의 온상이 되고 한국으로서는 친일 반민족 세력준동의 정치적 근거가 되고 있다. 이제 한국과 일본 두나라가 진정한 상호간의 평화와 우호 그리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동북아질서를 원한다면 우선 과거 침략전쟁을 합법화시켜준 굴욕외교의 상징인 한일기본조약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한일관계의 과거와 현재의 현안을 일본의 전후책임과 아시아의 평화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해결책을 제시해보자한다. 특히 그중에서도 현안이슈가 되고 있는 한일기본관계의 조약, 일본군위안부문제,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문제 그리고 한일간 해양분쟁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II. 한일기본조약의 재검토

1. 체결배경

연합국최고사령관의 주선으로 개최된 한일회담은 1951년 10월 20일 예비회담을 필두로 8번의 회담과 14년이란 긴 협상끝에 타결되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8차 협상까지 그 체결과정을 살펴보면, 한일기본조약은 일제침략으로부터 비롯된 과거사를 속이고 방치하면서 오로지 '돈거래'의 액수를 얼마로 결정할것인가 하는데 급급한 채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한일기본조약은 1차에서 5차까지는 역사인식과 국제법적 논리에 따라 토론과정이 진행되었지만, 그후 6차에서 8차까지는 오로지 정치적 흥정으로 타결되었다. 그러면 박정희는 왜 과거 역사인식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는가? 이는 한일기본조약체결 당시 1965년의 박정희 군사정권의 한계이기도 하다. 1961년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정권은 첫째, 미국측의 지지가 있어야 정권으로 안정이 가능했다. 미국은 월남전으로 동북아 반공방벽설치에 한·일 유대강화와 일본의 역할을 기대했다. 둘째, 군사정부는 경제개발이란 정치적 요청이 있었고, 정

2) 한상범, "한일기본조약"개정안 요강,『한일협정』개정안 요강 발표 및 기자회견 자료집, 한일과거청산운동본부, 1996.2.28., pp.15-16 참조.

권의 유지비로서 정치자금이 필요했다. 그래서 박정희는 졸속으로 몇푼의 돈에 혈안이 되어 일본의 과거 범죄를 면죄하는 문서에 합의하고 만 것이다.

한편 조약체결 당시 일본의 사정도 한몫 가세했다.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체결 이후 한국과의 국교정상화가 협안문제인데다가 박정희 정권이 이승만 정권이나 장면정권처럼 까다로운 상대도 아니고 한국민의 압력도 배제할수 있는 독재정권이자 친일정권으로서 일본에게 유리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당시 이케다 등 패전이전의 군국주의와 국수주의 맥을 이어 오던 일본의 자민당 집권세력은 박정권을 좋은 상대로 보았다. 예를 들면 오노반보꾸는 김종필과 자기의 관계를 부자지간의 관계라고 까지 공언하였다. 그리고 당시 일본은 외화보유고가 너무많아 해외로 투자할 필요성을 절감한데다 국내임금이 너무 비싸 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다른 한편 미국이 1960년 4.19 혁명당시에 이승만정권의 퇴진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이승만의 대일외교에 대한 오랜 불만도 그 하나였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월남전에 주력하고 나아가 한일간의 유대를 점차 군사유대로까지 발전시킬 의향이었고 당장 한국을 월남전에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조속히 정상화시키기를 바랬고, 이러한 미국의 의도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일본 요구대로 한국을 초청대상국에서 제외했던 데서도 잘 나타난다³⁾.

이러한 한일의 두 부도덕한 두세력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체결시에도 그대로 지배세력으로 등장, 결국 일제36년을 합법화시켜주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체결의 배후세력이 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일제과거 잔재 청산의 바로미터인 『한일기본조약』의 전면개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한일기본조약』이 왜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조약인가⁴⁾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한일기본조약의 재검토

한일협정의 가장 큰 문제는 과거사 인식과 그에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 불명확하고, 협정후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가 더 불안하고 일본내에 차별이 더 심해진데 있다. 그리고 한반도 분단에 대한 일본의 책임시인도 전혀 없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의 조항은 『기본조약』의 前文, 제2조, 제3조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청구권협정』 제2조 그리고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협정』의 조항이 가장 문제시되고 있다. 그외에도 평화선을 철폐한 『한일어업협정』 그리고 '반환'이라는 단어 하나 명시못한 『한일문화재협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한일기본 본조약의 문제를 재검토한다.

첫째로 한일기본조약의 前文에는 일본의 침략사실과 강점에 대한 시인, 사죄명시, 불법행위에 대한 명백한 손해 배상규정이 전혀 없다. 또 한반도 분단에 대한 일본의 책임명시도 없다. 다시말해 전문을 비롯한 한일협정 전반의 일제 36년의 합법화를 전제로 한 면죄부 역할을 한데 불과하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일본은 과거청산조치에 매우 소극적이다.

둘째로, 한일기본조약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3) 이장희, 『한일기본조약』의 재검토와 동북아 질서, 도서출판 아사연, 아사연 포럼 시리즈 96-2,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6.6.5., pp.3-5 참조.

4) 강창일, "한일간 과거청산의 과제와 한일협정", 『한일협정』개정안 요강 발표 및 기자회견 자료집, 1996.2.28., 한일과거청산운동본부, pp.11-14 참조.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하는 것을 두고 구조약의 무효시기에 대해 한일간의 해석이 상이하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는 기본조약 교섭과정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한국측은 한일간의 조약의 무효를 1904년 한일의정서까지 소급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일본측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수립이 되면서 무효라는 견해를 펴고 있다. 여기서 쟁점의 핵심은 제2조의 조문중『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의 시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일본측 주장대로『이미 무효』를 대한민국정부 수립에 의하여 그때부터『이미 실효(失效)』한 의미로 해석한다면 그 규정의 내용은 구조약 등이 한국의 독립시까지 유효한 것이었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그 규정의 존재가치가 전혀 무의미한 것이 된다.

한편 한국측의 주장대로 하면『이미 무효』를『당초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그 규정은 일본에 의한 36년간의 병합 및 그 이전의 이른바 보호통치는 한국의 독립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그로 인한 일본국의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그 논거는 일본이『카이로선언』 및『포츠담』선언을 수락하여서 종전되었기 때문에 1951년 연합국 대 일본의 평화조약 제2조에서『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조문화되어 이에 서명날인하였다는 것에서 연유한다. 즉 평화조약 제2조에서 명시한『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다』는 법적 조치는 1910년 8월 29일 발효한 한일간에 불법적으로 맺어진 소위 경술합방조약의 제1조『한국황제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하여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는 영구히 일본 황제폐하에 양여한다』라는 조문을 무효화시키는 것을 명백히 의미한다. 이는 한일회담의 진의가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는데 있다면, 매우 타당한 주장이다.

생각컨데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비롯해 1907년, 1910년 등에 맺어진 많은 한일조약은 강박에 의한 조약이라는 것이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이미 입증된바 있으므로 일본측 주장은 근거가 없다. 차제에 이러한『이미』라는『애매한 조항』을 삭제하고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단지『무효』라고만 명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한일기본조약 제3조는『대한민국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 제195(III)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It is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only lawful Government as specified in the resolution of the 195(III) of the United Nations Generak Assembly)』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이규정에 대한 한국측 주장에 의하면, 헌법 제3조에 명시된 것처럼『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체에 대한 유일한 합법정부이고, 북측에는 불법적인 정권이 점거하고 있음을 UN이 이규정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본다. 다른 한편 일본은『유엔총회결의가 인정하는 한도내에서 대한민국의 유일한 합법성을 인정하나, 현실적으로 관할권이 남한에만 미친다』고 보고 있다.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총회는 결의 195(III)을 통하여 대한민국정부는 한국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원문을 보면『--- declares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 that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ctions which were a vali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라고 함으로써 유엔 한국임시위원회의 활동하에 선거가 가능했던 지역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960년 냉전시대인 한일회담 협상과정 그 당시에는 한국측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

이지만, 탈냉전후 1991년 9월 남북한이 유엔 동시가입 및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발효후에는 일본측의 주장이 보다 현실성이 있다. 그러나 일본측의 주장도 남북기본합의서 前文에『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평화적 통일로 가기위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것을 고려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래서 이 차제에 상기 규정에 첨가하여『일본은 한반도분단의 책임을 시인하며,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하여 남북한의 관계가 잠정적 특수관계임에 유의하여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라는 규정을 첨가함으로써 일본의 2개의 조선의 실체주장이 한반도 분단전략에 악용되는 것을 막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III. 일본군위안부문제와 청구권협정의 개정

한일회담초기부터 한일兩國은 서로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1907년 헤이그 육전법 규 제46조⁵⁾를 근거로 당시 그들의 국민이 한국에 남겨두었던 사유재산 반환청구를 주장하고 있었다. 한일 회담 4차에서 일본이對韓請求權을 철회한 후, 5차회담에서 단 한번 한국이 제시한『8개對日請求權要綱』을 토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국은 계속 청구권의 액수와 성격문제로 다투었다. 그래서 6차 한일회담 부터는 이러한 법논리적인 회담이 포기되고, 정치적 협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한일 청구권협정은 애매모호한 문제를 남기고 있다.

『한일청구권 협정』의 문제조항은 전문과 제 2조이다. 즉 전문에는『경제협력』이라는 용어를 쓴으로써 청구권이 불법행위에 대한『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회석시키고『경제협력기금』 및『독립축하금』으로 변질되고 있다. 또 일본은 제2조 1항에서『양체약국은, 양체약국 및 그 국민9법인을 포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 a항에 규정된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규정에 근거, 협정발효후 10년에 걸쳐 일본이 한국에 무상 3억불과 유상 2억불(장기저리차관)을 제공하는 대신 2차대전 중에 피해를 입은 한국 및 한국인이 일본에 대해 갖는 모든 청구권은『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멸되었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2차대전시 식민지피해와 죄과를 모두 사면 받았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논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1)兩締約國(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확인조항(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을 듣다. 2)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협정서 명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수없다는 청구권 포기조항(동 협정 제2조 3항)을 내세운다. 3)당시 한국측이 제기한 소위 대일청구요강(8개항목)은 하나의 구체적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 그러한 것들을 전부 합쳐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해석(동협정 합의의사록 제2조 g항)했고, 마지막으로 청구권협정상 명문화된 예외(제2조 2항)가 있는데 종군위안부배상문제가 이 예외에 명문으로 유보되어 있지 않은 점을 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일본의 상기 주장은 일본군위안부 인권침해 한가지 사례를 보더라도 명백히 국제법위반이며, 동 협정 제2조에 근거, 과거청산종결 주장은 너무 일방적인 주장으로 국제법적으로 논거가 박약하다.

첫째,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소멸한 것은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이며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까지 포기할수 없으므로 개인의 청구권은 계속 유효하다.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 제3항에 한·일 양

5) 육전의 법규 및 관례에 관한조약 및 그 부속 규칙(1907년 10월 18일 헤이그 서명, 1910년 1월 2규) 제468일 발효: 일명 육전법조는 "...점령군은 점령지역에서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몰수할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국이 국가 및 국민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의 명백한 어구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권리에 관해서는 자신의 권리이므로 포기할수 있으나, 국민의 권리까지 국가가 포기할수는 없으며, 국가의 권리포기는 단지 국가의 권리추구에 관한 외교적 보호권 즉 자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데 불과한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점에 대해서는 椎名外相은 1965년 11월 5일 중의원 한일특별위원회에서의 답변에서 대일평화조약 제4조 (b)항에서 승인한 한국내의 일본국과 일본국민의 재산처리에 있어 일본국민의 재산에 대해서는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하였을 뿐 국민의 재산권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였다⁶⁾. 또 최근 일본의 야나이 조약국장도 1991년 12월 5일 참의원 PKO특별위에서 상기의 입장을 최초로 시인했다. 다만 이 발언의 구체적 의미내용이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가 보상받지 못했으므로 추가 보상해줄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인지 또는 개인적 차원의 절차적인 청구권인 소송제기권만 유효하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절차적인 소송권까지 소멸한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란 것이 1992년 2월 3일 중의원예산위 발언에서 명백해졌다.

따라서 개인의 청구권 자체는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된것이 아니며, 한국인 피해자는 당연히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권을 행사하여 피해회복을 법적으로 요구할수 있는 것이다.

둘째, 청구권협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구권문제는 해결하지 아니했다. 청구권협정은 1910년 한일합방조약이 적법하다는 묵시적 전제하에 체결되었기때문에, 과거 식민지 지배기간중 한국 또는 한국인이 입은 일체의 손실을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우편저금통장, 채권증서, 미불입금 등 재산권문제만 타결된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정신대문제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문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한다. 청구권협정상 어디에도 일본의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동 기간중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한국인이 일제때의 징용, 징병, 강제연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당시 실정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일본에게 법적 보상, 배상 책임이 없으며, 설사 불법행위가 있다하더라도 청구권 협정 합의의사록(제2조 a 항)은 일체의 보상 또는 배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65년 협정의 협상과정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한국정부가 제1차회담부터 일본에 제시한 8개항목의『대일청구권요강』에 관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8개항목의 청구권내용도 들여다보면, 일본국이 한국인에 가한 전쟁범죄나 비인도적 범죄와 관련한 민형사책임을 추궁하는것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⁷⁾. 그 청구내용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독립되어 두개의 국가로 분리됨으로써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 돌려주어야 할 재산의 반환이나 한국국민에 대하여 미변제한 채무의 변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8개항목청구권에 대해서도 1차에서 4차회담까지는 전혀 토의조차 이루어진바 없고, 이기간에 유일한 성과라면 구보다망언의 취소와 함께 對韓請求權철회이다. 그후 1960년 민주당 정권이 수립된뒤 개최된 제5차회담에서 비로소 한국측에서 제시한 8개항목의 청구권요강에 대하여 항목별로 토의가 시작됐으나 일본정부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만 변제할수 있다고 주장, 한국측은 세세한 청구권에 기초한 주장을 포기했다. 이어 6차회담부터는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정권이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게되자 종전의 법적인 청구권주장을 포기하고 '전체액수'와 '명목'에 대한 타협으로 협상의 성격을 완전 전환하여 양정부간에 일괄적 정치적 타협으로 만든 것이 청구권협정이다⁸⁾.

셋째, 청구권협정의 체결의 법적 근거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손해보상)에 근거하고, 제14조

6) 한형건, "일제하 조선인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전후보상에 관한 국제법적 문제", 국제법학회 논총, 제40권 제1호, 1995년 6월, p.346에서 재인용.

7) 김찬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국제법적 재검토", 제1회 세미나 「65년 한일협정과 일본의 전후배상」, 1992년 9월 14일, 통일국민당/태평양전쟁희생자 대책위원회 주최, pp.9-10 참조.

8) 특히 1962년 8월 이후 한일회담부터는 준정치적 방법으로 청구권에 대한 명목과 액수를 토의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오늘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元庸奭, 韓日會談 十四年, 삼화출판사, 1965년, p.71-72 참조.

(손해배상)에 근거하지 않은데서 한일청구권협정에는 보상청구권만 포함되고, 배상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다. 특히 제14조는 전승국과 패전국사이의 명백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고,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전승국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1조는 "... 한국은 본조약의 제2조(독립승인), 제4조(재산청구를 위한 특별쌍무협정), 제9조(어업형정), 제12조(우호통상조약)의 이익을 향유할 권리가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상기 제14조에 규정된 권리 즉 배상청구권은 누리지 못할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1910년 한일합병조약은 무효이므로 일제식민기간중 일본이 한국과 한국인에 가한 일본의 강제행위는 불법행위이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에 명시되어야 했다.

넷째, 국제선례로서 독.불간 포괄보상협정후 프랑스에서 국내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독일에 추가보상을 요구한 예가 있다. 독일은 이웃국가인 불란서와는 1960년 7월 15일에『독불간 나치피해 박해조치로 피해를 입은 프랑스국민을 위한 지불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4억 마르크를 지급했다. 동조약 제3조에도 나치박해로 자유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프랑스인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완전히 해결한다는 취지의 완결규정을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독일에『강제징집자』등에 대하여 추가보상을 요구하자 독일은 1981.3.13. "독.불이해증진 명목으로"『독불이해증진재단에 대한 출연조약』을 체결하여 2억 5천만 마르크를 위 재단에 출연했다. 따라서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종료를 주장하고, 추가 손해배상요구를 할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권위있는 국제법학회 및 UN국제기구도 일본의 군대위안부 인권침해 책임이 한일청구권협정과 관계없이 아직도 유효함을 주장하고 있다. 1994년 11월 22일 이미 국제법률가협회(ICJ: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도 그 최종보고서에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에서 위의 법적 논거를 모두 인정했다. 특히 국제법률가 협회는 일본정부가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를 처벌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 배상의 의무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 지난 96년 2월 5일 UN인권위원회에 제출된 특별보고자(Special Rapporteur)의 보고서도『일본군대위안부』를『군사적 목적에 의한 제도적 성폭행 피해자』로 표현하고, 이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인 동시에 노예제도를 금지한 국제관습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동보고서는 일본이 종군위안부피해자 대해 사죄 및 국가배상을 할것과 가해자 전원처벌 그리고 종군위안부에 관한 역사교과서의 기술을 고칠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월 나온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도 위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일본 군대위안부문제는 협정체결당시 협정의 본질을 이루면서 또한 교섭당사자간에 전혀 그 해결을 의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1969』상 사정변경의 원칙(제62조)에 의하여 조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조약의 종료에는 조약의 수정도 포함된다고 보는바, 정신대문제의 새로운 발견은 중대한 사정에 해당. 한.일 청구권협정의 최종타결조항에 포함된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정부는 일본측에 추가 배상을 요구할수 있다. 일부학자는『사정변경의 원칙』의 주장을 위해서는 그사정의 존재가 당사국의 조약에 대한 동의의 본질적 기초여야 하고, 또 사정변경의 결과로 조약상 이행해야할 의무의 범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우인 점, 그리고 국제적 사례가 없는 점을 들어 반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정신대문제등 일본의 조직적이고 인도에 반하는 전쟁범죄의 존재는 인간을 성적노예화하는『인간성파괴행위』라는 중대한 인권침해이므로 조약의 충분한 동의의 본질이며, 근본적 사정변경을 발생한다.

그리고『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1969』상 착오(제48조)와 기망(제49조)에 의해서도 청구권협정의 제2조 무효의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다⁹⁾. 이제 일본은 더이상 청구권협정 제2조를 근거로 과거청산의 종결을 강변할수 없게 되었다.

9) 이상희, "二次大戰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청산", 해방 50년, 한일수교 30년의 제조명, 아사연 학술포럼 시리즈 95-2, 1995.9,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pp.49-50 참조.

IV. 일본독도 영유권주장의 부당성

1. 문제제기

독도문제는 한국이 1952년 1월18일 평화선을 선언한 이래 일본이 매년 한국정부에 외교공한을 보내 독도가 자국영토임을 알려오고, 우리정부는 이를 일축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한일양국에서는 상당히 감정적인 분위기에서 이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바, 우리는 좀 더 냉정하게 독도의 국제법적 역사적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일본은 닦아오는 총선거와 관련하여 일본어 민들과 보수층의 표를 의식한점, 그리고 일·중국 및 일·러시아와의 영토문제해결을 위한 다목적 카드로 이용할 속셈 등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본고는 과연 독도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어느 나라의 영토적 權原(Title)에 속하는지 한일 양국의 논점을 비교, 검토해 일본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2. 독도의 역사적 연혁 및 양측의 주장

독도는 신라시대 울릉도와 더불어 “于山國”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고, 우산국은 신라 지증왕 13년 (서기 512년)에 신라에 귀순해 왔었고, 역사적으로 우리땅이다. 조선조 숙종 19년에(1693)는 동래어민 안복용이 독도근해에서 조업하던 일본어민을 내쫓고, 단신 일본으로 건너가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다시 독도근해에 어민을 출어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처럼 한국은 신라때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울릉도의 부속도로서 독도를 영유해왔으며, 그러한 사실을 알리는 문헌이 다수 존재한다. 조선사문현에 의하면, 독도가 于山島, 三峯島, 가지도 등의 명칭을 거쳐서 독도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그러한 명칭들이 모두 현제의 울릉도라고 반박한다.

조선은 1438년 이래 울릉도에 대해 400년간 空島정책을 펴왔다. 이 틈을 타서 17세기초부터 일본인이 약 80년간 별목 및 어로작업을 하였다. 조선측이 항의, 일본은 마침내 1696년 동섬으로부터 일본인을 철수, 도항을 금지시켰다. 이때 안복용이 일본에 가서 독도가 조선령임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자기들의 기록은 다르다고 주장한다. 또 조선의 울릉도에 대한 공도정책기간중 일본의 막부는 울릉도에 도항금지후에도 독도에의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으며 이는 쇄국정책기간중에도 계속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은 이 공도정책기간에도 관원의 경기파견순찰, 현지탐사, 일인축출담판 등을 통해 영유의 권원을 계속 이어 나갔다.

그후 한국은 일인참입에 대한 항의교섭(1881), 개척사임명(1883), 도편제 강화(1884, 1888, 1895), 관보 칙령에 의한 울릉전도와 독도의 확인(1900) 등 적극적인 조치로 근대적 권원의 새모습을 갖추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개국의 깃발을 드높인 식민지열강의 여세를 몰아 노일전쟁와중인 1905년 일본은 독도를 일령으로 편입했다. 이 1905년 편입이 현재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1905년 島根縣의 지방고시 제40호로 행정관할에 편입했는데 이는 그때까지 이 섬이 일본의 영토가 아니어서 어느 행정관할에도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가이라는 한 어부가 한국의 독도에서의 어업을 위해 중앙정부에 교섭을 요청하자 일본은 한반도침략이라는 국제사회의 의심을 우려하는 동시에 노일전쟁 해전에서의 전술적 필요를 저울질하다가 내각에서 ‘무인도이며 어느 나라의 영토에도 소속되지 않은 리양고(독도의 프랑스명칭)’를 영토편입한다는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는 격에 맞지 않는 지방고시로 은밀하게 지방행정관할에 편입한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방식을 국제법상 “무주지(terra nullius)에 대한 선점(occupation)”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독도의 프랑스어 이름인『리양고 島』가 쓰인 사실도 이때 까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었다는 한 증거이다.

그러나 한국은 역사적으로 계속 독도를 울릉도의 관할에 두고 지배하고 있었으며, 島名을 바꾼 1900

년 칙령41호에서도 울릉도 군청은 ‘울릉도 전도(全島)와 죽도, 석도(돌섬·독도)를 관할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일본이 영토편입 다음해인 1906년 지방관리를 보내 일본편입을 통고하자 당시 울릉군수 심홍택은 ‘본군 소속의 독도를 이제부터 일본령’이라고 주장하니 대책을 세워달라는 보고서를 중앙정부에 올린다. 이와 같이 이미 한국의 고유한 영토로서 실효적인 지배상태에 있었고, 따라서 무주지가 아닌 독도를 일본이 영토편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불법한 침략인 것이다.

그리고 2차대전 패전후인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 훈령 677호』 제3항에서도 동사령부는 명시적으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부터 배제하였다. 또 카이로선언(1943.11.27) 및 포츠담선언(1945.7.26)에서도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는 상실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은 1951년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을 근거로 상기 동사령부의 훈령은 잠정조치에 불과하며, 영토귀속의 최종결정에 대한 연합국측의 입장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1952년 1월 18일 한국정부가 “인접해양주권선언(소위 평화선 선언)”을 선포하자, 일본은 국제법상 공해자유원칙의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특히 일본외무성은 1월 28일 “... 대한민국의 선언은 竹島로 알려진 도서에 대해 영역권을 갖는것처럼 보이나,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에 의한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항의해 온데서부터 한일간에 최초로 독도문제가 시작되었다. 그후 독도의 영유권주장을 둘러싼 한·일간의 외교전은 교환각서의 형식으로 10여 차례 반복되어왔다.

그후 1954년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주장했고, 한국은 이를 거부해왔다. 또 일본은 1965년 『분쟁해결에 관한 한일교환공문』에 의해 독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비해, 우리는 이 독도문제가 이 교환공문에 말하는 분쟁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할 필요조차 없다고 일축해왔다.

그리고 1965년 국교정상후 일본은 독도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이러한 일본측의 주장의 핵심은 1952년 1월 18일 항의서와 1962년 7월 13일자 외교각서에서 일본의 “고유영토(Japan's inherent territory)”라는 주장과 1905년 독도를 국제법상 『선점』에 근거 편입했다는 것, 그리고 최근 대일평화조약의 제2조에서 명시적 규정의 不在 등이 주요 논거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과연 타당한가?

3.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부당성

(1) 일본의 固有영토설의 부당성

일본외무성은 1952년 1월 18일 항의와 1962년 7월 13일자 각서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的 영토라고 주장해왔다. 바로 지난 2월 9일 이케다 일본외상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는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측이 추진하고 있는 부두건설은 주권침해라고 했다. 이는 1905년 편입이전부터 독도는 무주의 영토가 아니라 일본의 영토라는 것이다. 즉 “역사적 권리(historic title)” 또는 “본원적 권리(original title)”으로서의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고유의 영토란 선점, 시효, 할양, 침부, 정복 등으로 국가성립후에 취득된 것이 아니라, 국가성립당시부터 그 국가의 성립기초 되어 있는 영토를 말한다. 이와같이 영역권의 역사적 출발점인 전법적 주권(pre-legal sovereignty)이 미치는 영토를 고유의 영토 또는 본원적 권리에 의한 영토라 한다.

독도가 일본의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은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 첫째, 역사적 근거이다. (1) 이미 상기에서 본바와 같이 독도는 울릉도와 같이 신라지증왕 13년(서기 512년)이래 우리의 영토이며, 이조시대에 일정기간 공도정책을 시행한바 있으나, 이 역시 주권의 행사이며 영역권포기의 의사를 표명한 바 없다. (2) 이조시대에는 독도를 우산도라고 울릉도와 같이 강원도 울진현에 부속시켰으며, (3) 숙종 19년(서기 1693년)의 안복용사건에 관해 일본은 對馬島主를 통해 독도에 줄이를 금하겠다는 공한을 보내온 사실

(4) 고종은 1900년 10월 25일 칙령을 발하여 “울릉도”를 “울릉”으로 개칭하고 島監을 郡守로 대치하고 郡守는 울릉全島, 竹島, 石島를 관할하게 하였다는 사실 (5) 울릉도가 공도인 틈을 타서 일본인이 잠입한 사실을 두고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했다는 주장은 고유영토라는 주장의 논거가 될수 없다. 또 일본 어부의 기항 및 어로활동이 국가기관의 공적 행위로 인정될수 없다.

둘째, 일본이 1905년(명치 38년)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는 “島根縣告示 제40호”의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님을 실증하는 것이다.

(2) 일본의 先占 주장의 부당성

국제법상 先占(occupation)이란 무주의 토지(terra nullius)를 새로 발견하거나 前에 통제하던 국가에 의해 포기된 지역을 타의 국가보다 먼저 실력적으로 지배(실효적 선점)함으로써 성립되는 영역취득의 權原(title)이다. 단지 국지는 제외된다. 선점의 요건에는 주관적 요소로서 국가의 영유의사를, 객관적 요소로는 국가권력에 의한 실효적 및 계속적 지배를 요구한다. 이 객관적 의사는 영역취득의 의사는 주관적 요소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하여 특히 중시된다. 국내사회와는 달리 국제사회는 중앙집권성이 없다. 따라서 배타적 영역주권은 항상 실효적 점유(국가활동의 평온하고 계속적인 표시)에 의하여 유지될 필요가 있다. 선점의 주체는 국가이다. 선점의 주관적 요소로서 영유의사는 영유선언, 입법행정상의 조치, 타국에 대한 통고 등에 의하여 표시된다. 다만 통고에 관하여는, 그것이 선점의 요건이 아니라는 다수설과 선점의 필수요건이라는 소수설이 있다.

이러한 국제법적 선점이론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일본측의 1905년 선점주장은 다음과 같이 모순된다.

첫째, 이해관계국인 한국에通告가 없었다는 점이다. 1905년 독도편입을 일본은 한국에 전혀 통고하지 않았다. 국제법상 The Palmas Island Case를 살펴볼 때, 無人島인 독도는 통고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¹⁰⁾.

둘째, 선점의 의사는 대외적으로 표시됨을 요한다. 1905년 일본의 선점의사표시는 단순히 국내적 지방자치단체의 告示에 불과하다. 또 선점의 주체는 국가이지, 島根縣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될수 없다.

셋째, 일본은 1905년 2월 22일에 「島根縣告示」로써 이것을 그 현에 편입, 선점을 완료하였고, 그후 한국의 항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1905년 당시 일본은 을사보호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 독도의 일본열도편입에 대해 한국이 정식 항의할 입장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넷째, 선점의 대상은 무주지인데, 1905년 독도는 역사적으로 무주지가 아니고, 한국의 실효적 지배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선점의 대상이 아닌 점 등을 들수 있다. 무주지라는 것은 어느 국가의 국가영역에도 귀속되지 않은 지역, 국가영역으로서의 통치를 떠나 유기된 지역이다. 영역유기 또는 포기에는 포기의 의사는 주관적 요소와 포기의 사실이라는 객관적 요소가 필요하다. 국가정책상 어느 영역을 일시적으로 사실상 포기하였을 지라도 포기의 의사가 명시적, 대외적으로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이것을 포기로 보지 않는다. 조선이 1438년 이래 빈번한 왜구침범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독도와 울릉도에 대해 空島정책을 편것은 영역포기가 아니다.

다섯째,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은 미완성의 권원이다. 선점은 실효적이지 아니면 안된다. 무인도를 발견하여 거기에 국기를 세우는것과 같은 상징적인 영토편입행위만으로는 부족하다. 일본은 1905년 영토편입조치만 하고 후속 조치가 없었다.

10) 1885년 베를린 의정서는 선점의 요건으로 통고를 의무화하고 있고, 이 의정서를 폐기한 상제로망 조약에 1905년에는 유효했다.

(3) 對日 平和條約 제2조 解釋의 誤解

일본정부는 1962년 7월 13일 일본정부견해에서 1946년 1월 29일의 “연합군최고사령부 훈령 677호”(SCAPAIN No.677)에 독도가 한국점령군사령관의 관할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대일강화조약 제2조”에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독도는 일본으로부터 분리된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일본은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에 의해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하였으나 이때 독도는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이 포기한 섬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일본측은 상기의 세섬은 한국근해에 있어 대표적인 섬들일 뿐만아니라 한반도의 최외단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논거가 박약하다.

첫째, “연합군 최고사령부 훈령 제677호”(1946.1.29)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규정한 것을 “대일평화조약”이 달리 규정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규정이 있음을 요한다. 그 근거는 연합국의 일본점령 관리중의 영토처리 과정에서 찾을수 있다. 첫째로 무조건 항복후 미국의 초기 대일방침(1945.9.22)은 일본의 주권이 4개 本島와 카이로선언 및 미국이 이미 참가하였고 또 장래에 참가하는 기타협정에 의하여 결정될 주변의 제소도(minor outlying islands)에 국한한다고 했다. 둘째로 일본의 점령관리를 위한 연합국최고사령관에 대한 항복후의 초기의 기본지령(1945.11.1)에서 일본의 지리적 범위를 4개 本島 및 대마도를 포함한 약 1천개의 인접소도(smaller adjacent islands)로 보고 있다. 셋째 맥아더의 원수의 관하부대에 보내는 훈령(1945.12.19)에서도 일본의 주권을 연합국의 4개 本島 및 대마도를 포함한 약 1천개의 인접소도(smaller adjacent islands)에 국한시키고 있다. 이처럼 연합국의 일본영토처리가 단계적으로 보다 구체화되어져서 마침내 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부 훈령 제677호”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일본의 주권에서 제외되는 영역으로 ‘독도’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런데 1952년 발효된 샌프리시스코 평화조약은 1946년 훈령보다 후에 이루어진 조치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번복하려면 좀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둘째, 독도가 울릉도의 외측에 있다는 이유로 이섬이 일본의 영토라 한다면 제주도의 외측에 있는 馬羅島도 일본의 영토가 되어야 한다는 모순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대일평화조약 제2조에 열거한 도서는 일본에서 분리되는 주요도서만을 열거한것이고, 모든 도서를 열거 한것은 아니다. 이는 한국의 영토인 도서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에 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명백하다.

이상으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일본의 “固有영토”도 아니고, “先占영토”도 아니며 한국의 權原(title)이 유지되어 왔음에는 異論이 없다. 더구나 1946년 1월 29일의 “연합군 최고사령부 훈령 제677호”는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지역으로 독도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한국의 영토임을 국제적으로 公認해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에 대한 내정간섭이자 분명히 한국의 주권침해이며 일본은 정식으로 사죄하고 재거론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한일간의 양식있는 국제법학자들간에 진술한 대화를 정식으로 제의하는 바이다.

V. 한일간 해양 분쟁: 배타적경제수역 설정문제와 직선기준설정의 부당성

현재 한일간의 현안 해양분쟁의 핵심은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문제와 일본의 일방적 직선기준설정

문제이다. 이 두문제가 매우 민감한 것은 전자는 독도 영유권분쟁과 후자는 한일 어업협정의 개정문제와 간접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6년 3월 3주동안 온 나라는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선포를 계기로 나온 독도문제망언으로 떠들썩했다. 이것은 독도문제가 단순한 영토분쟁의 차원을 넘어 한일관계의 양국민의 응어리진 사연과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잘못된 일제과거사와도 깊은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하필 일본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선포를 계기로 독도영유권주장을 들고 나왔는가? 다른 선진 해양국인 미국, 캐나다, 소련은 이미 신해양법에 관계없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했다. 물론 일본도 1977년 200해리의 어업수역을 선포했으나 한·중·일과 관련된 동해의 동경 135도 서쪽수역과 큐슈의 서남쪽수역에는 그 선포를 보류해 한국과 중국에 조업을 허용해 왔다. 그런데 일본이 최근 태도를 바꿔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선포를 하는 그 첫째 이유는 자국어민 보호를 위한데 있다. 한중일과 관련된 이 수역에는 나름대로 1965년 한일어업협정, 1955년 한중 민간어업협정, 1975년 한중 어업협정 등 쌍무 어업협정으로 연안어업질서가 유지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한국·중국의 어업기술발달로 일본연안해에 어획이 너무 많아지면서 일본어민의 타격이 심해지자 일본어민단체가 정부에 200해리 경제수역 설정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다. 둘째는 일본은 한국과도 독도문제, 중국과는 센카쿠열도문제 등 영토분쟁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는 자칫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을 유발할 수 있어 이 지역에서는 그동안 200해리 선포를 자제해 왔다. 더구나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는 수역간 중복이 되므로 한·중·일간 경계선 획정작업이 불가피했다.

그런데 극우성향의 하시모토 현 총리가 등장하면서 일본은 일본어민의 보호라는 명분하에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를 기화로 독도영유권문제를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의 양국의 대처 방안을 분석해 볼 때 이것은 몇 가지 점으로 요약된다. 첫째 일본이 공세적이라면 한국은 매우 수세적 자세다. 둘째 핵심인 경제수역 선포기선 설정점에 대해서는 양측이 모두 피해갔다. 즉 200해리 기선을 독도인지, 울릉도인지 아니면 오끼섬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실무협상에서 그 기선획정을 맡기자고 만 했다. 셋째 양국이 처한 국내 정치상황이 이 문제의 해결여하에 따라 정권유지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넷째, 양국은 독도영유권문제와 경제수역문제는 별개이므로 분리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아마도 양국 정권당국은 양국 국민의 정서를 감안, 일단 이문제에 대한 여론을 냉각, 통합시키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지난 96년 3월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을 뿐 핵심적인 문제의 단서는 못 찾았다.

그후 지난 97년 6월 13일 외무부에서는 금년 들어 3번째 韓日 어업실무자회담이 열렸었다. 회담의 주제는 한일어업협정방향이었는데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려 가까운 시일내에 후속회담을 갖는다는 것 이외의 어떤 결론도 얻지 못한 채 헤어지고 말았다. 회담에서 일본측은 자국 국내법인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EEZ)법이 국회에서 통과된지 1년이 되는 지난 7월 20일까지 어업협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는 국내여론의 압력에 견디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협정개정에 대해 한국측은 협정개정은 하되 양국간의 EEZ경계획정을 선행시키자고 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독도의 영유권문제는 걸림돌이 있어 양국간의 EEZ경계획정이 쉽지 않으니 협정개정부터 먼저하고 독도 영유권문제는 접어둔 채 그 주변수역에 공동관리수역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상기의 양국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영토인 이상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일본 국제법학자나 해외여론도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일본의 200해리 경제수역선포 수위에 따라 우리의 입장을 취하겠다는 매우 피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 추세를 보면 한일 양국은 독도를 우리 수역에 포함한다는 전제 하에 울릉도와 일본 오끼섬을 200해리 기선점으로 삼아 그 중간선을 경계획정선으로 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는 독도를 무시해버리고 경제수역만 논하는 발상으로서 독도가 한국영유일수도 있고 일본영유일수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 이론적 근거는 신해양법 121조 3항 “인간의 주거 또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岩石(rocks)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인데, 이것은 독도를 경제수역문제와 분리 논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 신해양법 121조 3항도 해석여하에 따라 독도에는 이 조항적용이 배제되며, 충분히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발상은 바로 일본이 노리는 바이며, 매우 안이한 무책임한 관료적 편의주의에 의한 발상이다.

그런데 일본의 이러한 독도영유권주장의 속셈은 우선 그들이 취하는 영토전략의 한 방법일 뿐지도 모른다. 즉 자기들이 갖고 있는 남의 영토는 실효적 지배를 단단히 하고, 남이 갖고 있는 자기네와 연관된 영토에는 계속 권원을 주장하여 흡집을 내자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하시모토의 이 2중적 영토전략을 잘 파악하여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다음으로 일본이 경제수역 선포를 계기로 독도영유권을 들고 나오는 핵심 저의는 바로 경제수역 설정과 한일어업협정 개정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먼저 200해리 경제수역 기선점을 독도로 선포해 거기서부터 일본과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옳은 법법이다. 또 獨島가 명백히 우리의 영토라면 그 수역에 대한 공동관리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본의 안을 받아 들일 경우 독도에 대한 우리의 權原이 그 만큼 회박해 질 수 있다. 그래서 독도 영유권문제와 경제수역설정문제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독도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국제법으로나 역사적으로 우리의 영토임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제적으로 일본주장의 부당성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또 최근의 일본의 일방적 직선기준설정과 한일어업협정의 일방적 폐기주장이 국제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알아보자.

우선 일본의 일방적 직선기준설정과 관련하여, 일본 해상보안청은 지난 97년 6월 한달동안 일본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직선기선에 의한 영해내에서 한국어선 5척을 납치, 억류하고 가혹행위까지 하였다. 이것은 우리국민의 분노를 샀으며 한·일 외교문제까지 일으켰다. 일본은 그동안 영해의 기선으로써 연안의 低潮線을 기준으로 하는 통상기준선을 사용해 왔으나 96년 6월 영해법을 개정, 일본의 전 해안에 걸쳐 165개의 직선기선을 일본 영해법 시행령에서 설정하고 97년 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이중에서 46개의 직선기선이 문제가 되는데, 직선기선의 설정요건을 규정한 해양법협약 제7조¹¹⁾와 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해양법협약 제10조의 설정기준에 명백히 어긋나 그 적법성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기선이 19개이며 나머지 27개의 기선은 지리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법성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우리의 문제제기에 따라 적법성을 다룰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기선기준설정은 우선 해양법협약의 설정기준에 위반되기 때문에 적법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

또 1965년 한일어업협정상 양 당사국은 12해리 어업전관수역의 설정에 있어서 그 기선을 연안국의 저조선을 원칙으로 하되, 직선기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상대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동협정 제1조 1항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한일 어업협정체결시 서해와 남해의 일부해역에서 직선기선을 설정하면서 {직선기선 사용의 협의에 관한 교환공문}에 의거, 일본정부에 우리의 의향을 통보하고 일본정부가 이를 양해한 사실이 있다. 또한 77년 한국이 영해법을 제정하여 남서해안에 대해 일부 새로운 직선기선을 설정했을 때도 우리정부는 일본의 불만사항을 일부 수용한 바 있다.

그런데 일본은 이러한 한일 어업협정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직선기선을 설정했다. 따라서 일본이 직선기선에 의해 영해내에서 한국어선을 납치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다.

일본의 이러한 무리한 주장은 특히 한일어업협정의 폐기를 기정사실화하고 한국을 재협상에 끌어 들어

11) 해양법 협약 제 7조(직선기준 설정기준): 1) 해안의 굴곡여부 2) 도시의 산재여부 3) 일반적 방향에 일치여부 4) 밀접한 관련 여부 5) 적법성 여부 등이다.

일본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한일 어업협정을 개정하여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VII. 결론

세계는 탈냉전화되어 각지역의 문화적 정치적 특성에 맞게 지역 통합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유럽은 유럽연합(EU)이, 미주는 NAFTA, 아프리카는 OAU 등 이 경제적 협력차원을 넘어 각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그런데 아시아 지역은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지역간의 분쟁이 발생시 자체의 제도적인 지역 해결기구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유럽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국식민지 침탈과 개방을 강요당해 우리의 주체적 의지와 무관하게 그들의 문화를 수용당해 왔다. 현재 이 지역에는 조금씩 지역 협력과 통합의 노력이 있긴하나 아직도 미미한 상태이다. 이 지역의 단합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은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이다. 또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간에도 이상하게 협조체제가 잘 되지 않고 있다. 우선 동북아의 일본·중국·한국사이에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 지역평화를 위한 제도적 틀이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지정학적으로 주요한 위치에 있는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다는데 있다. 다음으로 일본과 중국사이에 보이지 않는 패권주의적 잠정적 경쟁이 동북아는 물론이고 아시아의 전체의 번영과 평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지난 9월 23일 발표된 미일신방위지침개정은 중국의 패권주의를 자극하여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의 원천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이 아시아 주변국가와 과거 식민지상처를 치유하고 아시아 국간간의 협조를 다지는데 솔선수범하여 성의를 다하지 못할 망정 어떻게 주변국가에 대해 과거 식민지 악몽을 다시 일깨우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아시아인으로서 일본이 세계경제 대국 2위로서 번영하고 있는데 대승적 시각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일본이 과거식민역사에서 오는 책임과 과오인정에 대한 지나친 인색함과 최근의 군사대국주의적 모험 시도에 깊은 우려를 가진다. 현재 일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변국에 대해 과거 식민지 책임을 정치적 선언으로 남발할 것이 아니라 국제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상응한 일본 관련 국내법을 개정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일본을 움직이는 것은 강한 국제여론이다. 우리는 일본의 과거책임문제를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과도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우리의 의사관철방법은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신중하게 임해야 할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최근 들어 한일 간 해양분쟁시 일본의 행위는 명백히 국제법 위반행위이다. 일본과 한국사이의 관계는 더욱더 복잡하고 깊은 문제가 가로 놓여 있기에 양국은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다음세대에 자랑스런 한일관계의 새모습을 전승해주기 위해 모든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적 차원에서는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남북한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 “아시아의 안보·협력을 위한 회의(Conference on Security & Cooperation in Asia:CSCA)”라는 다자간 지역협력체를 탄생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 이 아시아 안보 협력회의는 유럽안보 협력체(Conference on Security & Cooperation in Europe:CSCE/1975년 8월 1일)처럼 모든 이념의 장벽을 넘어 상호 지역 국가간의 안보·경제·기술·인도주의적 문제 협조 등을 약속하고 이것의 실천을 확인함으로써 역내 국가간의 협력과 신뢰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독일 통일과정에 동서독이 함께 참여한 유럽안보 협력회의가 일등 공신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아시아 국가간에는 과거 식민지적 피해의식과 깊은 불신으로 협조체제 구축이 어렵다. 아시아지역에는 쌍무적 협력조약은 있으나, 다자간 협력체제 조약은 없다. 이러한 아시아국가간 생기는 다양한 문제를 쌍방조약으

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은 매우 매우 필요하다. 이 “아시아 안보·협력회의”는 지난 9월 23일 발표된 미일안보협력지침을 무력화시키며 나아가 아시아의 잠재적인 군사적 패권주의 경쟁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1부 발제2>

어업협정체결을 위해서는 ‘과거의 청산’이 필요하다.

北川廣和(월간 ‘일한분석’ 편집)

현재 일한 양국간에 가로놓여 있는 최대의 현안은 어업협정문제이다. 96년 5월에 시작된 일한어업협정교섭은 97년 10월인 지금도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그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일한 양국의 어민에게 일본해(동해)가 평화롭고 풍족한 바다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일본에 의한 한국어선의 나포는 잘못이다.

일한 양국은 각각 96년 중에 유엔 해양법조약을 비준, 발효하였다. 동 조약은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정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일본측은 65년 일한 국교정상화 시기에 체결된 어업협정이 이제 시대에 맞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일본 연안에는 많은 대형 한국어선이 어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어업협정은 불법 어선단속권이 어선이 속하는 나라에 있다는 ‘기국주의(旗國主義)’를 취하고 있어서 마음대로 배제할 수가 없다. 이 ‘기국주의’를 해양법조약에 명기되어 있는 연안국이 단속권을 갖는 ‘연안국주의(沿岸國主義)’로 바꾸자고 일본측은 요구하고 있다.

단,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측도 이론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다. 일한 양국의 대립은 EEZ의 전면적용을 어떻게 하는가에 있다. 일본측은 잠정협정의 체결, 즉 ‘쌍방의 경제수역의 중복부분에 관해서는 중간선을 긋는 잠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주변수역은 공동관리로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잠정협정의 체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지 않지만 ‘경제수역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독도 주변 수역의 공동관리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여 대립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결론 짓기가 불가능하다고 본 일본은 6월부터 7월에 걸쳐 강경입장으로 선회하였다. 6월 13일에 서울에서 열린 제6회 실무협의 석상에서 일본은 ‘한국이 조기체결에 응하지 않으면 현행 어업협정의 과기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해상보안청이 한국어선의 나포를 실제로 시작하였다. 6월 8일과 9일 각 1건, 15일 2건, 그리고 7월 8일 1건의 나포사건을 일으켰다.

한국측은 7월 9일 이 외무차관이 야마시타(山下)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나포사건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나포는 국제해양법조약에 의거하여 변경한 영해법 상 신영해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양보하지 않았다.

어느 쪽 주장이 옳은 것인가? 8월 15일 하나의 판단이 제시되었다. 마쓰에(松江) 지방법원 하마다(濱田)지부가 나포된 한국어선의 전순기 선장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판결은 ‘기소는 무효’이었다. 이튿날인 16일, 전선장은 석방되어 비행기 편으로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하세가와(長谷川) 재판관은 ‘한국 어선이 조업하고 있던 곳은 영해이지만 일한 어업협정 상 단속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다. 유엔 해양법조약에 의거한 영해법은 일반법이며 특별법인 일한어업협정이 일반법

에 우선한다는 것은 국제법의 관례이다. 일한 어업협정에는 새로운 영해법의 채용에 즈음하여 서로 협의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 점을 소홀히하였다. 일본이 일으킨 나포사건은 기존 협정을 일탈한 불법행위였던 것이 분명하다.

신어업협정을 둘러싸고 초조해하던 일본이 애초의 목적에서 벗어난 잘못을 범했던 것이다. 즉, 일본이 부당하게 한국어선을 나포하는 무리를 범한 것은 일본측 제안을 한국측에 강권하기 위해서였다. 폭력적 조치도 불사하는 태도를 드러내면서 협정체결을 강박하는 일본의 태도는 우리들에게 19세기말 20세기초에 걸친 과거사를 상기시킨다. 우리들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가해자로서 다시 등장하고 있는 사실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영토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스스로 범한 과오를 반성하지도 않고 ‘어업교섭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한국이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되풀이해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일본의 언론도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다케시마’ = 독도의 영유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일본이다. 일본측은 ‘영토문제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안의 속 뜻은 보류에 있지 않다. ‘중간선을 그어야 한다’는 제안은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애매하게 만들자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리고 공동관리 제안을 통해 일본은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한국과 동등한 입장에 서서 주장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제안에 대한 경계심에서 어업교섭에 신중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즉 교섭 난항의 원인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대립을 해소하고 신어업협정체결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는 독도이고 한국영토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포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케시마’ = 독도는 역사적으로 원래 한국영토이기 때문이다. 2차대전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일본정부가 말하는 ‘실효지배’를 한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즉 한국이 영토의 일부로서 실제로 관할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영토이고, 일본이 조선식민지 지배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한국으로부터 빼앗았던 것은 이하의 사실에서 명백해진다.

① 명치시대 초기, 일본정부는 ‘다케시마’를 조선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것은 1870년(명치3년)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에 기재되어 있다. 또한 1877년 내무성이 시마네(島根)현에서의 문의에 대해 ‘다케시마는 본국과 무관계’라고 답한 것이 ‘공문록’에 기록되어 있다. 한편 당시 대한 제국은 1900년에 독도의 관할권을 칙령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

② 그것을 일본 해군수로부(水路部)가 기업가인 나카이 요오차부로(中井養三郎)를 이용해서 일본영토에 편입시켜 버렸다. 그 경위에 대해서는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시마네현 다케시마 신연구(島根縣竹島新研究)」(田村清三郎, 島根縣縣政資料主任著) 등에 기재되어 있다.

- 1904년 9월 ‘다케시마’의 물개잡이에 대한 독점을 노린 나카이(中井)가 ‘다케시마’는 조선영토라고 인식하여 명치정부를 통해서 조선으로부터 대여허가를 얻으려고 상경하였다.

- 그러나 청원을 받은 농상무성은 ‘다케시마’의 소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해군수로부에 문의하였다.

- 그랬더니 肝付水로부장이 나카이를 불러 ‘소속은 분명하지 않지만 일본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일본영토로 편입청원을 내면 독점적으로 대여해주겠다’라고 했다.

- 그 때문에 청원은 ‘영토편입 및 대여청원’이라는 일개 기업가가 제출하기에는 이상한 청원이 되었다.

- 그 청원이 제출과 동시에 즉각 수리되었다. 등이다.

③ 조선영토로 인식하던 독도를 ‘소속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마음대로 일본영토에 편입시킨 후 멎(",");

도 지장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으로는 일본정부가 현재 주장하는 '영유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영유 의사는 2월 시마네 현 고시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조선에는 즉시 통고도 하지 않고 있다가, 1905년 11월 제1차 일한협약(을지5조약)에 의해 외교권을 약탈한 후 1906년 4월이 되어서야 했다.

④ 해군수로부가 독도에 눈을 돌려 일본 영토로 한 이유도 명백하다. 1904년부터 1905년의 일로(日露)전쟁 시 일본의 연합함대는 1905년 4월부터 5월에 걸쳐 러시아의 발츠크함대와의 소위 일본해 해전을 통해 러시아 함대를 궤멸시켰지만 그 장소는 독도의 남남서 18해리 수역이었다. 같은 해 7월 해군수로부는 독도에 해군인부 38명을 보내어 망루(감시하기 위한 누각)를 건설하여 감시원을 상주시켰다. 군사적 요충으로서의 가치를 느낀 그 시기에 조선으로부터 빼앗은 것이다. 원래 일로전쟁은 조선의 지배권을 둘러싼 전쟁이었다. '다케시마 편입'은 바로 일본의 조선지배권 확립의 한 과정이었다.

⑤ 1945년 조선해방과 동시에 독도도 일본군국주의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다. 이 사실은 총사령부 각서 제677호 등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로부터 분리된다'고 명기되어 있는데서 확인된다.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영토의 일부로서 관할하고 있다.

이것으로 일본이 독도를 '합법적으로 편입했다',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 독도는 역사적 경과와 현상을 보아도 한국영토임에 확실하다. 신어업협정체결을 위해서는 일본정부가 그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병합조약(한일합방)은 합법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일본정부나 여당인 자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여당, 그리고 모든 야당까지도 '다케시마는 일본영토'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진보적인 입장에 서있다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독도문제 자체에 무관심하거나 의도적으로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원래 일본 국내에는 '조선 식민지지배는 잘못이었다'고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일본 정부나 언론계에 그러한 인물들이 다수이다.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 서있는 사람이 최근 하시모토(橋本)정권 성립 이후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먼저 이 현상부터 바꾸는 것이 일본 정부로 하여금 '다케시마는 한국영토'라고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식민지지배에 대해 일본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각이 일반적이다. 일본에서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요미우리(讀賣)신문은 4월 13일 「현법시행 50년 - 아직도 남아있는 "일본성악설"이라는 주술적 속박」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게재하여 '일한 병합조약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 국제정세 하에서 열강제국의 승인까지 얻은 합법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사람들에게 군사력에 강요된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고 하였다. 근래 일본의 역대 수상은 '조선 식민지지배는 합법적으로 행해졌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배하는 과정에서 폐를 끼친 적도 있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요미우리 사설도 이것과 같은 취지이다. 일본정부와 언론 모두 '폐를 끼친' 일은 일단 인정하지만 '합법적이었다'는 점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과연 조선 식민지지배는 합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정규적인 수속을 밟고 합법화시킨 것인가? 또한 조약의 내용이 정식 체제를 갖춘 것인가? 근래 한국의 학자, 지식인에 의해 도저히 합법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제2차 일한협약에 대해 ① 한국측 조인자가 전권 위임장을 갖고 있지 않았던 점, ② 한국이 체결후에 비준하지 않은 점, ③ 당시 주권자인 고종이 조약의 무효를 선언했던 점, 그리고 ④ 일본군대가 둘러싸고 협박하여 조인시킨 조약이 유효라고는 말할 수 없는 점 등이다. 한국 병합은 합법적으로 행해졌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군국주의가 먼저 일으킨 중국과의 전쟁이 잘못된 전쟁인 것처럼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도 잘못된 식민지 지배이다. 과거 청산에 대해서 가장 전향적 입장을 보인 무라야마(村山)수상은 전후 50년 담화에서 '식민지지배와 침략에 의해 아시아 각국의 사람들에게 막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95년 8

월 15일)고 표명했다. 얼핏 보기에도 그럴 듯한 발언으로 들린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를 침략과 병렬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문제다. 중국에 대한 전쟁이 침략전쟁이라는 사실은 조선식민지지배도 잘못된 지배라는 의미에서 침략식민지지배라고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 일방적으로 상대국가에 군대를 보내어, 일방적으로 영토를 짓밟고, 일방적으로 사람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침략행위이다. 침략은 전쟁이건 식민지지배이건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일본은 남북한에 대해, 침략식민지지배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충분한 보상을 행해야 한다. 그 침략성을 인정한다면 '식민지지배는 합법이었다'는 식의 발언은 결코 가능치 않을 것이다.

'식민지지배는 합법적이지 않았다, 잘못이었다'고 인정하게 된다면 '다케시마는 한국 영토'라고 인정하는데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식민지지배합법론을 타파하는 것은 독도영유권문제해결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어업교섭 타결을 위해 일한조약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정부는 기존의 일한 어업협정에 대해서 '시대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1965년의 협정체결이 일본측의 의향에 따른 협정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맞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어선의 크기, 수, 혹은 엔진 등의 성능면에서 당시는 기국주의가 일본의 입장에서 유리했다. 협정이 맺어진 6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쳐 대기업 경영하의 일본 대형어선이 한국연안에 출어하여 난획(亂獲)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일본에서 대기업은 주로 원양어업에 자본을 투자, 근해 어업은 점점 쇠퇴해갔다. 일본 어선은 소형화, 노후화하여 어업이 영세기업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반해 어업을 활성화시켜 어선성능을 향상시킨 한국의 배가 일방적으로 일본 연안에 밀려오게 되었다. 바로 이 점이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에 새로운 협정체결을 제기한 배경이다.

그렇다면 현행 협정은 시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일본 정부가 대기업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국의 손익만을 고려, 억지로 한국에 강요한 협정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일한 어업협정은 양국 어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애초부터 잘못되었던 것이다. 구종주국으로서의 권위를 앞세워 과거 식민지-한국을 굴복시킨 것이 금일의 어업협정인 것이다.

왜 이러한 불평등한 어업협정이 체결되었는가? 그 기저에는 같은 시기에 체결된 일한 기본조약이 존재한다. 기본조약 제2조에는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일본과 한국간에 맺어진 조약 및 협정은 이제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이제'라는 단어(영문으로는 already)를 삽입함으로써 일본의 조선 식민지지배가 과거에는 마치 합법적인 일이었던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문맥으로 만들어 버렸다. 일본측은 실제로 '애초에는 유효했다'고 해석하여 식민지지배에 대해서 사죄도 보상도 하지 않았다. 일한조약에는 '유감', '반성'이라는 말조차도 없다. 일한 양국 민중의 참된 우호를 막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일한조약이다.

이러한 일한조약을 반영한 것이 현재의 어업협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어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한조약을 먼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신어업협정체결을 둘러싸고 일한 간에 일고 있는 격랑의 밀바닥에는 '다케시마' = 독도영유권문제가, 일한조약의 문제가, 나아가서는 조선 식민지지배의 문제가 얹혀 있다.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청산'이 필요하다.

우리들은 이 사실, 즉 '식민지지배는 합법적이지 않았다, 일한조약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독도는 한국영토이다'고 확실히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널리 일본 민중에 호소하여 이 런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힘을 기초로 일본정부를 움직여 나갈 것이다. '과거의 청산'이야말로 우리 일본 민중에게는 한국 민중과 연대하는 출발점에 다름 아니다.

「漁業協定締結のためには『過去の清算』が必要だ」

北川 広和

現在、日韓両国間に横たわる最大の懸案は、漁業協定問題である。96年5月に始まった日韓漁業協定交渉は、97年10月の現在もなお暗礁に乗り上げたままである。その原因は一体どこにあるのか。どうすれば解決できるのか。日韓両国の漁民にとって、日本海（東海）を平和で豊かな海にするためには何が必要なのか。

■日本による韓国漁船だ捕は誤りだった

日韓両国は、ともに96年中に国連海洋法条約を批准・発効させた。同条約は200カイリの排他的経済水域（EEZ）を設定するよう明記している。新たな漁業協定を結ぶことについては、65年の日韓国交正常化時に締結された漁業協定がもはや時代にそぐわなくなつたとする日本側がより積極的である。

現在、日本の沿岸に大型の韓国漁船が大量に押し寄せている。しかし、現行の漁業協定では、違法な漁船の取り締まり権は漁船の属する国にあるとの「旗国主義」がとられていて、勝手に排除はできない。この「旗国主義」を、海洋法条約に明記されている沿岸国が取り締まり権をもつ「沿岸国主義」に代えよう、と日本側は求めている。

ただ、この点について韓国側も異論を唱えてはいない。日韓両国の対立は、EEZの全面適用の仕方にある。日本側は暫定協定の締結を主張し、「双方の経済水域の重複部分については、中間線を引く暫定措置をとるべきだ」、そして「竹島（韓国名・独島）周辺水域は共同管理とすべきだ」と主張している。これにたいし韓国側は暫定協定の締結については反対していないが、「経済水域の重なる部分についても境界を確定する必要がある」「独島周辺水域の共同管理提案は受け入れることはできない」と主張し、対立している。

このままでは決着不可能とみた日本は、6月から7月にかけて、強硬手段にうつてでた。6月13日にソウルで開かれた第6回実務者協議の場で、日本は韓国に「早期締結に応じなければ、現行の漁業協定の破棄も辞さない」との立場を伝えた。そして、海上保安庁が韓国漁船のだ捕に実際に乗り出した。6月8日と9日に各1件、15日に2件、さらに7月8日にも1件のだ捕事件を引き起こしている。

韓国側は、7月9日に李外務次官が山下駐韓大使を呼ぶなどして、だ捕事件について厳しく抗議した。これにたいし日本側は、だ捕は国際海洋法条約にもとづき変更した領海法の新領海内で行われており、正当であると主張してゆづらなかった。

いずれの主張が正しいのか。8月15日、ひとつの判断が示された。松江地裁浜田支部

がだ捕した韓国漁船の全順基船長にたいする判決を下したのである。判決は「起訴は無効」であった。翌16日、全船長は釈放され韓国に空路送還された。担当の長谷川裁判官は、「韓国漁船が操業していたのは領海であるが、日韓漁業協定上は取り締まり権が及ばない」として公訴を棄却した。国連海洋法条約にもとづく領海法は一般法であり、特別法である日韓漁業協定が一般法に優先するのは国際法のルールである。その日韓漁業協定には、新たな領海法の採用に際しては互いに協議することと明記され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日本はそれを怠った。日本が起こしただ捕事件は、既存の協定を逸脱した不法行為であったことが明らかである。

新漁業協定をめぐり、業を煮やした日本が勇み足を犯したといえるだろう。つまり、日本が不当に韓国漁船をだ捕するという暴挙に出たのは、日本側提案を韓国側に受け入れさせるためであった。暴力的措置も辞さない態度をちらつかせて協定締結を迫る日本の態度は、私たちに19世紀末から20世紀初頭にかけての出来事をほうふつさせずにおかない。私たちは、日本政府が韓国にたいする加害者として、ふたたび登場している事実に強い懸念を表明する。

■独島は歴史的経過から韓国領である

日本政府は、現在、みずから犯した過ちを顧みることもなく、「漁業交渉が進展しないのは、韓国が竹島の領有権に固執しているからだ」と繰り返し主張している。こうした見方に日本のマスコミも同調している。

しかし、実際にはそうではない。「竹島」＝独島の領有権に固執しているのは、むしろ日本なのである。日本側は「領土問題を棚上げすべきだ」と主張しているが、提案の中味は棚上げになっていない。「中間線を引くべきだ」との提案は、韓国の独島領有権をあいまいにしようとの意図にもとづいている。共同管理提案に至っては、日本が「竹島」の領有権を韓国と同等の立場に立って主張するものである。韓国はそうした主張を掲げる日本側提案への警戒感から、漁業交渉に慎重にならざるをえなくなっている。つまり、交渉難航の原因は、韓国が一方的に領有権を主張しているからではなく、日本が領有権を主張する提案を行っているからなのである。

では、どうすればよいのか。どうすれば対立は解消し、新漁業協定の締結が可能となるのか。日本政府が「竹島は独島であり、韓国領である」と公式に認める必要がある。日本政府は「竹島」の領有権を放棄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なぜならば、「竹島」＝独島は歴史的にそもそも韓国領だからであり、戦後は一貫して現在に至るまで韓国が日本政府いうところの「実効支配」をしているから、つまり韓国が領土の一部として実際に管轄しているからである。

独島は歴史的にみて韓国領であり、日本が朝鮮植民地支配の過程で、一時的に韓国から

奪い取ったことは、以下の事実から明らかである。

①明治時代の初期、日本政府は「竹島」を朝鮮領と認識していた。そのことは1870年（明治3年）の「朝鮮国交際始末内探書」に記されている。また、1877年に内務省が島根県からの問い合わせにたいし「竹島は本邦と無関係」と答えていることが「公文録」に記されている。一方、当時の大韓帝国は1900年に独島の管轄権を勅令で明らかにしている。

②それを日本の海軍水路部が、企業家・中井養三郎を利用して、日本領に編入してしまった。その経緯については、「竹島」が日本領であることを証明するために書かれた『島根県竹島の新研究』（田村清三郎・島根県県政資料主任著）などに記されている。

- 1904年9月、「竹島」のアシカ漁の独占を狙った中井が、「竹島」は朝鮮領と認識し、明治政府に朝鮮から貸し下げ許可をとってもらおうと上京した。
- しかし、請願を受けた農商務省は「竹島」の所属が分からず、海軍水路部に問い合わせた。
- すると、肝付水路部長が中井を呼びよせ、「所属ははっきりしないが、日本の方が近いから、日本領への編入願いを出せば、独占的に貸し下げてやる」と説得した。
- そのため請願は「領土編入並びに貸下願」という一企業家が提出するにしてはおかしな請願となつた。
- その請願が提出と同時にすぐさま受理されている、などである。

③朝鮮領と認識していた独島を「所属が確定していない」として勝手に日本領に編入した後ろめたい気持ちが明治政府の言動にあらわれている。1905年1月の閣議決定では「島根県が編入しても差し支えない」と表現している。これでは、日本政府が現在主張する「領有意思を再確認したもの」とは言えない。また、領有の意思は2月に島根県告示として示すにとどめている。そして、朝鮮への通告はすぐには行わず、1905年11月の第2次日韓協約（乙支5条約）によって外交権を奪つてのちの1906年4月になって行っている。

④海軍水路部が独島に目をつけ日本領とした理由も明白である。1904年から5年の日露戦争において、日本の連合艦隊は5年4月から5月にかけて、ロシアのバルチック艦隊といわゆる日本海海戦を戦い、ロシア艦隊を壊滅したが、その場所は独島の南南西18カイリの水域であった。同年7月、海軍水路部は独島に海軍人夫38人を送り込み、望楼（監視のためのやぐら）を建設し、監視員を常駐させた。軍事的要衝としての価値に気づいたこの時期に、朝鮮から奪つたのである。そもそも日露戦争は朝鮮の支配権をめぐつての争いであった。「竹島編入」は、日本による朝鮮支配の一過程にほかならない。

⑤1945年の朝鮮解放と同時に、独島も日本軍国主義の支配から解放された。このことは総司令部覚書第677号などで「竹島は日本領土から分離される」と明記されている。

そして、以後、今日に至るまで、韓国が領土の一部として管轄している。

これでは、日本が独島を「合法的に編入した」「法的に根拠がある」とは到底言えない。独島は歴史的経過をみても、現状をみても、韓国領にはかならない。新漁業協定の締結のためには、日本政府がその事実をはっきりと認めることが必要である。

■併合条約は合法ではなかった

しかしながら、それは決して容易なことではない。日本政府や与党の自民党はいうまでもなく、他の与党、そしてすべての野党までが「竹島は日本領」としているからである。また、日本では進歩的な立場に立つ人の多くが、独島問題そのものに無関心であったり、意図的に言及を避けている事実を率直に明らかにしておきたい。

ではどうしたらよいのか。そもそも日本国内には「朝鮮植民地支配は間違っていた」と認めない勢力が厳然と存在している。日本政府やマスコミのなかにそうした人物が多数いる。認めない立場に立つ人が、最近では、橋本政権の成立以後かえって増殖しているほどである。この現状をまず変えることが、日本政府に「竹島は韓国領」と認めさせるために必要ではないだろうか。

植民地支配について、日本では次のような見方が一般的になされている。日本一の発行部数を誇る読売新聞は、4月13日に「憲法施行50年——まだ残る“日本性悪説”的呪縛」と題した社説を掲げ、「日韓併合条約は、日本の立場からは、当時の歴史的状況、国際情勢下で、列強諸国の承認を得た合法的なものだった。しかし、朝鮮半島の人々にとっては、軍事力に強要されたものであったことは、まぎれもない事実だろう」としている。日本の歴代首相は近年、「朝鮮植民地支配は合法的に行われた」としつつ、「支配のなかで迷惑をかけたこともあった」との立場を表明している。読売の社説もこれと同様の趣旨である。日本政府もマスコミも「迷惑をかけた」ことは一応認めているものの、「合法的であった」との点はゆずろうとしない。

しかし、はたして朝鮮植民地支配は合法と言えるだろうか。正規の手続きを踏んで合法化したものなのかな。また、条約の中味は正式な体裁を整えているのか。韓国の学者・知識人から、近年、到底合法とはいえないことが事実をもって明らかにされている。たとえば、第2次日韓協約について、①韓国側調印者は全権委任状をもっていなかったこと、②韓国が締結後に批准していないこと、③当時の主権者である高宗が条約の無効を宣言していたこと、そして④日本の軍隊がとりまいて脅迫によって調印させた条約が有効とはいえないこと、などである。韓国併合は、合法的に行われたとは決して言えない。

日本軍国主義が中国に仕掛けた戦争が間違った戦争であるように、朝鮮に対する植民地支配も間違った植民地支配である。過去の清算にもっとも前向きとみられた村山首相は、戦後50年談話のなかで「植民地支配と侵略によって、アジア諸国の人々に対して多大の

損害と苦痛を与えた」(95年8月15日)と表明している。一見、もっともな発言に聞こえる。しかし、植民地支配を侵略と並列的に扱っているのが問題だ。中国にたいする戦争が侵略戦争であるということは、朝鮮の植民地支配も間違った支配という意味で侵略植民地支配と呼ぶべきではないか。一方的に相手国に軍隊を送り込み、一方的に領土を踏みにじり、一方的に人々の人権を著しく侵害する行為は侵略行為である。侵略は戦争であろうと植民地支配であろうと決して許されることではない。日本は南北朝鮮にたいし、侵略植民地支配について心から謝罪し充分な補償を行わねばならない。その侵略性について認めるならば、「植民地支配は合法だった」などとは決して言えないだろう。

「植民地支配は合法でなかった。間違っていた」と認めることになれば「竹島は韓国領」と認めることにおのずと接近することになる。このように植民地支配合法論を打ち破ることが、独島領有権問題解決の重要な契機にほかならない。

■日韓条約の見直しが漁業交渉妥結に必要だ

日本政府は既存の日韓漁業協定について「時代にそぐわなくなった」としている。1965年の協定締結当時は、日本側の意向に沿った協定だったが、今ではそうではなくっているという。漁船の大きさ、数、あるいはエンジンなどの性能の面からいっても、日本にとって当時は取り締まりは旗国主義が有利だった。協定が結ばれた60年代から70年代にかけて、大企業経営下の日本の大型漁船が韓国沿岸に出漁し、乱獲していたのである。しかし、80年代以降、日本では大企業が遠洋漁業にのみ資金を投じ、近海での漁業は衰えていった。日本の漁船は小型化・老朽化し、漁業は零細企業化をよぎなくされた。これにたいし、漁業を活性化させ漁船の性能も向上させた韓国の船が、一方的に日本の沿岸にやってくるようになった。そこで、日本は韓国に新たな協定の締結を持ちかけた。

とするならば、現行の協定は時代にそぐわなくなったのではなく、そもそも日本政府が大企業の要請を受け入れて、自國利害のみ貫いてむりやり韓国に押しつけた協定であったという事実が浮かび上がってくる。日韓漁業協定は両国漁民のためにつくられたのではなかったのであり、当初から間違っていたのである。旧宗主国としての権威をちらつかせて、かつての植民地・韓国を屈服させたのが、今日の漁業協定なのである。

なぜこうした不平等な漁業協定が結ばれたのか。その基底に、同時に結ばれた日韓基本条約がある。基本条約の第2条には「1910年8月22日以前に日本と韓国との間で結ばれた条約および協定は、もはや無効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る」とある。「もはや」という単語(英文ではalready)の挿入によって、日本の朝鮮植民地支配がかつては合法であったかのように読める文面にしてしまった。日本側は実際「当初は有効だった」と解釈し、植民地支配について謝罪も償いもしなかった。日韓条約には「遺憾」も「反省」という言葉すらもない。日本と韓国の人々の和解を妨げているのは、日韓両国民の眞の友好を妨げ

ているのは、この日韓条約にほかならない。

こうした日韓条約を反映したのが現在の漁業協定である。したがって、現在の漁業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は、まず日韓条約を全面的に見直さなくてはならない。

新漁業協定の締結をめぐる日韓の荒波の下には、「竹島」＝独島領有権問題が、日韓条約の問題が、さらには朝鮮植民地支配の問題が渦巻いている。荒波を鎮めるためには「過去の清算」が必要だ。

私たちは、この事実、つまり植民地支配は合法ではなかった、日韓条約は見直すべきである、そして独島は韓国領であるとはっきり認識することの重要性について、広く日本の民衆に訴え、この認識を共有できるよう努力し、その力をもって日本政府を突き動かしていきたい。「過去の清算」こそが、私たち日本の民衆にとって、韓国民衆との連帯運動の原点にほかならない。（了）

第2部

4者会談과 韓半島 平和體制 樹立

▶ 발제자 ◀

강정구(동국대 사회학과교수)

渡邊健樹(일한민중연대간담회 사무국장)

▶ 토론자 ◀

김창수(통일맞이칠천만겨레모임 자료실장)

김근식(경희대 강사)

太田武二(생명존중네트워크 대표)

峯一也 (아시아공동행동일본연락회의 전국사무국)

<2부 발제1>

동북아의 평화구도와 한반도 통일전망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강정구

1. 머리말
2. 동북아 질서재편: 신냉전의 도래
3. 미일방위지침과 동북아 평화
4. 대북흡수통일정책과 한반도 통일 및 평화
5. 평화협정의 진요성
6. 4자회담의 과제
7. 맷음말

1. 머리말

90년대를 맞아 우리 민족사는 통일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한다. 미국과 소련간에 조성되었던 극단적인 냉전체제가 사회주의체제의 소멸로 인하여 탈냉전으로 나아감으로써 민족재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자결권이 높아지는 외적 조건이 마련되었고, 내적으로도 87년 6월민주항쟁으로 인하여 시민사회 수준의 통일운동이 비약적인 발전을 함으로써 민족내적 통일역량이 성장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97년을 맞은 오늘의 시점에서는 민족통일에 대한 전망은 흐려지고,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과 이에 대한 남한의 대북흡수통일정책이 추진됨으로써 오히려 분단고착화나 전쟁위험에 대한 시급한 대응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악화되었다.

또한 탈냉전 이후 동북아질서는 안정과 균형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단기적으로는 동북아의 평화적 질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최근 미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미·일신방위지침이나 미국과 중국간에 조성되는 작은 긴장의 연속은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에 신냉전을 가져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의 통일을 불가능하게 하여 분단고착화로 나아가지 않을까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96년 4월 16일 제주한미정상회담에서 제안되어 3자설명회 등으로 15개월 이상을 끌던 4자회담의 예비회담이 열렸다. 예측한대로 예비회담은 별 진전이 없었고 또 앞으로도 결코 순탄치는 않겠지만 통일시대라는 한반도의 전환기적 역사행로를 규정짓는 전기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 글은 시론적 수준에서 동북아 평화체제의 유지가 한반도 통일환경에 결정적임을 강조하고, 혼존의 평화상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미국과 중국사이에 예상되는 새로운 동북아신냉전, 미국과 일본간에 체결된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기점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현시화, 남한의 대북 흡수통일정책,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지연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인식하에 첫째, 중국의 경제력이 일본을 능가하는 시점인 약 15년 이후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동북아신냉전이 도래하여 동북아평화를 위협할 것과 이 신냉전의 구

도하에서는 한반도 통일이 거의 불가능함을 강조하고, 둘째, 미국과 일본사이에 체결된 미·일신안보협력지침으로 일본이 동북아신냉전을 초래하는 또 하나의 주체로서 '아세아사람에 의한 아세아'를 거절하고 미국의 세계단일화권주의 전략에 편승하여 동북아신냉전을 촉진시키고 결과적으로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환기시키고, 셋째, 북한 식량난을 계기로 표출된 남한의 흡수통일정책이 그 의도와는 달리 한반도의 평화, 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또 궁극적으로 분단고착화의 공고화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통일정세임을 강조하고, 넷째,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평화협정의 체결을 비롯하여 한반도 현황을 해결할 4자회담의 과제를 제시해 본다. 끝으로 동북아인의 주도와 동북아전체의 이익을 보장하는 동북아연합과 같은 공동의 틀을 통하여 나아가는 과정에서 동북아평화체제가 구축되고 한반도 통일이 촉진되는 역사전망을 이상적인 대안으로 상정하고 이를 희망수준에서 서술해 본다. 전국연합과 일본실행위원회와 같은 진보연대가 이러한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

2. 동북아 질서재편: 신냉전의 도래

탈냉전을 맞은 동북아 새로운질서는 협력과 유대를 바탕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질서이다. 이 때문에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에 의한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로 나아갈 때 한반도 주위의 외세는 이 통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기는 힘든 상황이었고 동북아의 평화전망 또한 낙관적이었다. 이러한 한반도를 둘러싼 장기적 정세 전망은 강대국간, 특히 미국과 중국간에 동북아 현상유지를 위한 협력 관계가 지속될 경우, 곧 평화상태하에서만 유효하다. 그러나 최근에 서서히 드러나고 있듯이 미국과 중국간의 마찰이 심화되어 동북아에 신 냉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점은 동북아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협하는 요소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¹²⁾

미국은 80년대에는 일본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미국의 상대적 침체라는 경제현상을 바탕으로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상정하였으나 이제 미국의 경제력 회복과 일본의 거품경제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일본경계론은 사라지고 전통적인 미일 유대 정책으로 기울어졌다. 96년 4월 양국간의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신안보공동선언', 이를 뒷받침하는 최근의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한반도와 인근 지역의 유사시(대만 등을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자위대의 군사작전을 가능케 하는 자위대법 및 유사법 재정비 등을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북한의 노동1호 개발에 대응한다는 빌미로 '전역미사일방어(TMD)'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최신 무기 생산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90년대 미국의 가장 적은 이제 일본이 아니라 중국으로 바뀌었다. 중국은 경제성장이 지속되어 총량 규모에서 2천10년경에는 일본을 능가하고 미국 다음가는 경제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세계 최대의 인구,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민족주의, 홍콩의 반환, 싱가폴을 비롯한 동남아 등지에서 막강한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는 화교 등의 요인들이 중국위협론으로 등장하면서 미국은 서서히 중국 봉쇄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96년 중국과 대만 사이의 분쟁시 미국이 인디펜던스호 등 항공모함을 파견해 중국을 위협함으로써 공식적인 1개의 중국정책에서 중국과 대만의 분리 지배라는 실질적인 두 개의 중국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더 나아가 홍콩의 반환에 영국과 합작하여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¹³⁾ 지속적으로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트집잡기에 여념이 없다.¹⁴⁾

12) 전국방부차관이었던 Richard Perle은 "중국은 태평양 지역을 지배하기 위한 공격적인 조치를 취할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파국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무시무시한 지난 미소간의 냉전이 되살아나는 것을 예고하는 것임이 틀림없다." Washington Post 1997.5.18

13) 미국 의회는 92년 홍콩의 민주화, 홍콩문제 개입의 합법화를 겨냥한 '홍콩정책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러한 중국위협론은 랜드연구소의 마이클 스웨인이 지적하였듯이¹⁵⁾ 실제 중국의 도전 가능성에 기반하였다기보다 냉전시대 제1의 적인 소련을 포위하는 동맹국으로서의 중국의 중요도가 이제 탈냉전을 맞아 사라진 점과 2차대전 중반 이후 등장한 초파권주의 지향적인 미국의 지배욕과 오만함에서 나온 중국 악마만들기의 의도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아래의 서술은 전형적인 보기의 하나이다.

"증가하는 중국의 경제 및 군사력은 그들의 야망과 외국 혐오증과 결합이 되어 더 공격적이 될 것이다. 중요한 점은 중국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에 전쟁을 도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중국의 일부 통치도당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전쟁을 도발할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소득 격차가 증가되고, 부패가 더 만연해 지도력에 대한 신뢰가 허물어지고, 또 1989년 천안문사태와 같은 새로운 자유화 운동이 일어난다면 아마도 중국정부는 이들을 호도하여 중국의 민주주의나 자존심으로 진의를 숨기려 할 것이다. 바로 중국 내부 문제를 호도하고 왜곡시키기에 제일 좋은 대상은 바로 외부 세계, 특히 미국에 비난을 집중시키는 것이다.(Bernstein, 1997: 11)"

물론 이러한 대 중국 봉쇄 정책은 동북아에 대한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개입정책(engagement)의 형태를 취하여 중국에는 봉쇄를, 북한에는 영향력 강화를, 일본과는 유대·협력강화를, 남한에는 현상유지를

더 나아가 97년 3월 12일에는 홍콩 반환 뒤 고도 자치권과 미국이의 침해 경우 행정부의 대응 조치를 요구하는 '홍콩반환법안'을 압도적으로 가결시켜 미국의 초파권적 개입 주의를 노골화하고 있다. '홍콩반환 D-30'『중앙일보』 1997.6.2:9쪽

14) 여기에서의 신 냉전은 자본주의체제의 지도국인 미국과 사회주의체제의 지도국인 소련간의 체제간, 이념간의 극단적인 대립에 바탕을 두는 세계적 수준의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은 아니다. 탈냉전 이후 초파권주의적 단극질서구도를 최소한 2015년까지 세계적으로 관철시킨다는 미국의 장기적 구도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이고 지구촌 규모의 대응이라기보다 미국의 대중 포위망 구축 등과 같은 대중국 공세에 중국이 대만의 분리 제동 등 동북아 영역에서의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대응을 취하기 위하여 군사력 증강과 대북한 완충 지역 확보 등을 추구하는데서 비롯되는 동북아의 불안정이다. 근대 이후 중국은 미국 및 일본과 달리 주변을 침략하는 등 패권주의 정책을 취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 기간까지 세계적 수준에서 미국과 대치할 능력이 없고 또 의도도 없는 것으로 예측된다.

15) 스웨인은 중국악마만들기가 다섯 가지 근거 없는 신화에서 비롯되었다고 신랄히 비난하였다. 첫째, 최근 중국이 대만에 취한 위협 행위를 근거로 아시아 전체를 위협한다는 가설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엄연한 사실과 또 대만이 제국주의 중국 침략의 희생물이었다는 역사성을 인정한다면 신화에 불과한 것이다. 둘째, 중국 군사비를 8백억에서 1천5백억달라로 추정하는 가설은 실제 2백80억-3백60억에 불과하고 중국 GDP의 0.8-1.5% 수준으로 미국의 3-4% 수준에 비하면 엄청나게 낮은 비율이다. 셋째, 중국이 보유한 현대첨단무기 수준은 이미 아시아 각국의 균형수준을 넘었고 이들을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가설은 홍콩이나 대만의 언론들이 과장보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데서 오는 근거 없는 신화이다. 실제 중국의 최신병기 구입은 대만의 최신무기 구입에 버금가는 것에 불과하고 일본의 순양함, 한국의 최신 독일 설계 6척의 잠수함,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 등의 병기 구입을 고려할 때 결코 위협적인 것은 아니다. 넷째, 중국의 군사력이 앞으로 10년 이내에 공격 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가설 또한 신화에 불과하다. 중국이 현대병기를 외국에서 대부분 구입한다는 사실은 국내의 방위산업이 노후하고 후진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에서 병기를 구입해야 하는 국가가 주변을 위협할 공격 능력을 갖춘다고 보기 어렵다. 최소한 중국은 현대병기 생산 면에서 한세대정도 뒤졌다. 다섯째, 중국군의 현대화가 미국에 도전을 위한 것이라는 가설은 중국의 현대화 계획은 소련이나 미국을 상정한 것이 아니라 주변국과의 사소한 분쟁에 대비한 개편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화일 수밖에 없다(Swaine, 1997).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한일공동심포지움

추구하여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에서 미국 단일초폐권주의 세계질서를 위협하는 거대국가의 출현을 억제하는 장기적인 구도 하에 추진되고 있다(김용호, 1997).

이에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로비활동 등을 지속하는 한편,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고 97년 정상회담에서는 “해제모니와 힘의 정치”에 반대한다는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등 미·일의 동맹 강화에 대비하고 프랑스와의 연대를 추구하면서 “냉전후 다극화 체제를 지지하고 단일국가에 의한 세계 지배에 반대한다”라는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초폐권적 단극질서(unipolar)의 지속에 대응하여 다극적(multi-polar) 세계질서 형성을 공개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또한 중·일안보협의회에서 중국은 “대만은 중국의 국내 문제이며 일본이 미국과 협력해 간섭해서는 안된다”며 항의했다(『한겨레』 1997.6.5). 물론 이러한 중국의 대응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일방적 공세에 대한 방어적 수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이 약화되는 한 동북아신냉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약해진다.

그러나 미국은 탈냉전인 현시점에서도 약 2500억달라에 달하는 엄청난 군사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고 이를 정보사회인 21세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력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를 입증하듯이 97년 5월 19일 발표된 미국의 ‘4개년 국방계획보고서’는 2015년까지 미국이 초폐권 국가로서 단극세계질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선언하였고, 또 중국을 암시하여 2010-15년 사이에 “1개 이상의 지역국가가 이 기간중 미국의 이익에 군사적으로 도전하려는 야망과 수단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중국위협론을 공공연히 주장했다. 또한 나이보고서에서 밝힌 것처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10만의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을 언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국 포위 전략을 점차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과의 신 냉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한 걸 높아지고 있다.¹⁶⁾

이 경우 중국과 일본간에 군비경쟁이나 긴장고조가 예상되고, 한반도 또한 편가르기에 편승하지 않을 수 없어 남과 북이 외적 상황 때문에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강화되어 한반도의 평화가 더욱 위협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과 한반도의 통일은 다시 미·소냉전구도하의 분단고착화 경로로 회귀하게 되어 통일시대는 미완의 형태로 끝맺을 수밖에 없게 된다.

3. 미·일방위협력지침과 동북아 평화

1997년 9월 23일 미·일방위협력지침의 최종안이 발표되자 일본주위의 한국, 중국, 동남아국가 등 모든 국가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과거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이라는 기치아래 전개된 일본의 침략 및 범죄행위에 대한 일본의 철저한 자아반성, 진정한 사죄의 회피, 신대동아공영권의 부활, 경제대국, 군사대국화에 덧붙여 진행된 이 방위지침은 일본이 ‘힘의 정치’를 잠재력 수준에서 시현적 수준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와 위협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미·일의 상호 전략적 의존관계를 근간으로 진행된 방위지침은 미국이 1995년 2월의 Nye 보고서(East Asia Strategy Report)에서 동북아에서 10만명수준의 미군주둔을 천명하고, 11월 일본측에서 ‘신방위 대강’으로 이에 대한 화답을 하고, 1996년 4월 정상회담에서 ‘미·일안보장 공동선언: 21세기를 향한 동맹’을 선언하는 등 일련의 연속적 조치로서 미일안보장체제의 확대발전과 일본의 군사적 역할증대를 공식화하는 것이다.

방위지침 최종안의 특징은 기존의 미·일방위협력의 초점이 ‘일본유사’와 ‘극동유사’에서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주변유사’로 옮겨진 것이다. 더 나아가 ‘일본 주변지역 유사시의 범위’를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사태의 성질에 파악하는 개념.’ 곧, 상황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사태가 (situations) 발생하는 경우 “난민구호·이송, 피난민에 대한 응급물자지원등 인도적 조치와 일본 주변해역에서의 수색및 구난활동·선박검사활동,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필요한 경제적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

기 위한 보조활동, 미군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원활동” 등을 전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탈냉전하 동북아에서는 평화를 교란하는 요인이 거의 사라졌고 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방폐막이인 군사동맹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 곧, 한미상호방위조약, 미일안보조약, 북한군사력 역량의 급속한 강화, 10·21북미협정과 북한생존권보장정책인 연착륙정책(soft landing), 소련의 해체와 옛 소련위협의 소멸, 미국에 도전할 폐권국가의 미존재, 탈냉전 등의 상황에서 굳이 미·일방위협력지침을 체결하는 것은 미국의 단일세계폐권주의를 지속하는 세계전략,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한 동북아신냉전에 대비한 장기적 동북아전략 등이 결합된 산물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한반도유사’가 아니다. ‘한반도유사’나 한반도에서의 전쟁도발을 억제한다는 빌미로 미국은 ‘대만유사’에 개입할 준비를 하고 또 ‘중국위협’을 제기해 미국이 ‘4개년 국방계획보고서’에서 우려하였던 중국의 폐권국가화에 대비하는 대중국포위망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미·일의 전략적 상호의존을 통하여 일본은 미국의 등에 엎혀서 아세아주변국가의 저항을 막고 군사대국화와 정치대국화를 실현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미·중간의 동북아신냉전 도래가 촉진되고 한반도 통일전망은 분단고착화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 지게될 것이다.

이 방위지침이 우리의 남과 북 및 민족안보에 보다 직접적으로 끼칠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자. 한반도와 대만해협에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나 기준은 무엇인가? 일본과 미국의 자의에 따라 ‘유사’로 규정될 가능성을 어떻게 배제할 것인가? 또 ‘유사’시에 무엇을 근거로 미국과 일본이 자의적으로 군사활동과 개입할 수 있단 말인가? 안보리상임이사국에 진출이 예정될 정도로 강화된 일본의 유엔내 위상과 유엔폐권국인 미국의 합작에 의해 한반도 유사시 개입의 명분을 유엔으로부터 부여받을 가능성은 없는가? 또 중국견제라는 미국의 대동북아안보전략에 편승하여 신역할론으로 일본이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 있는 점, 군사비 세계2위를 점유하는 4조8,405억엔(96년기준) 군사예산, 또 이 군사예산이 GNP의 1%수준에 불과하여 필요에 따라 군사비를 대폭증가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 남과 북사이에 조그만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베제할 수 없고 또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 등은 우리에게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더구나 이 방위지침은 미국과 중국간의 동북아신냉전을 촉진시켜 우리 민족의 절대과제인 통일을 결정적으로 저해시킨다는 장기적 전망을 가져오는 점을 우리는 예의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동북아는 이미 군비경쟁하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일본이 연간 약 500억불, 중국이 약 3-400억불(공식적인 발표는 150억불정도에 불과하나 서방의 추정은 3-400억불 수준으로 소련군사비를 과장한 미국 CIA 등의 과거 행위로 볼 때 이 추정 또한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대만이 약 120억불, 한국이 170억불을 군사비로 투입하고 있다. 이러한 군비경쟁의 상황에서 일본이 미국의 세계전략과 대동북아포위전략에 편승하여 군사대국화를 시도하는 것은 군비경쟁의 가속화와 대결구도를 침예화시켜 동북아에 긴장과 안보위협을 촉진시키고, 2015년 경 도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간 동북아신냉전 구도를 촉진시킬 위험이 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이에 대한 응분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동북아는 동북아 스스로 동북아자간안보체제 등의 결성을 통하여 평화체제의 구축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기에는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아세아 평화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쌓는 일이 선결되어야 한다. 또 한반도의 분단에 대한 원인제공자인 일본은 한반도에 우호적인 통일환경을 조성해야하는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다. 이 방위지침과 군사대국화의 역사행로는 이에 대한 역행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16) 미국의 대중국봉쇄정책은 중국지식인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1996), 「중국 방문 보고서」,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정책포럼』 통권 19호, 1996 가을호

4. 대북흡수통일정책과 한반도 통일 및 평화

최근 정부 일각에서는 몇 백명에 이르는 요원들에게 긴급히 통일대비교육을 시키고, 북한 긴급 봉괴를 상정한 통합방안을 여러 분야에 걸쳐 급작스레 연구를 진행시키는 등 긴박한 모습을 물밑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한겨례』 1997. 7.30). 이러한 긴박한 대응은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에 따른 북한정권의 조기 봉괴 가능성에 가상한 시나리오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북한식량난을 계기로 표출된 남한 통일정책의 본질인 대북봉쇄정책에 의한 흡수통일을 살펴보고, 이러한 북한정권 봉괴에 의한 흡수통일시나리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평화를 깨뜨려 전쟁을 초래할 위험을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분단고착화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도래할 미국과 중국간의 동북아신냉전에 대비한 장기적인 통일정책이 요구됨을 밝히고자 한다.

(1) 대북식량정책과 통일정책

남한정부의 대북식량정책은 이제까지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지원을 일체 거절하고(6.27지자체 선거 당시의 15만톤 쌀지원외에는) 국내외적인 압력에 의해 체면치레로 적십자를 통하여 몇만톤규모를 간접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 더 나아가 시민사회에서의 민간차원 북녘동포돕기운동까지도 기부금 모집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적용하여 탄압하고, 수시로 '모금유용'이라는 명목으로 전국연합 등을 표적 조사하여 찬물을 끼얹고, 식량군인탈취, 구호옥수수 일본수출, 황장엽기자회견, 통일원의 북한식량난 축소발표¹⁷⁾ 등의 역정보나 미확인 보도 등을 확대 및 왜곡함으로써 시민사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구호운동을 위축시키고 식량무기화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려는 술수를 벌이고 있다. 또한 창구단일화라는 명목으로 한국적십자에 전달시켜 민간차원의 지원까지도 시간을 끌면서 시급한 식량구호를 지연시키기도 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국이나 일본의 정부차원 식량지원까지도 한비일공조정책이라는 미명하에 봉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대북식량정책은 반인도주의적이고 반민족적이면서 결과적으로 반통일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러한 대북식량정책은 바로 김영삼정권의 대북흡수통일정책에 근거하고 있다. 비록 곁으로는 흡수통일을 부정하고 있지만 통일정책의 기본 방향은 북한 조기봉괴 촉진정책에 의한 일방적 흡수통일정책이다. 소련 멸망 이후 여러 가지 위기를 중첩적으로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봉쇄정책을 지속하여 북한정권의 봉괴를 이끌어 내어 흡수통일로 귀결시킨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북한 목조르기 정책이 김일성사망시의 조문과 북·미핵협상에 과정에서 '잿뿌리기'라는 북미 이간 정책(강정구, 1994), 10.21북미협정에

17) 97년 6월 2일 알려진 통일원의 '북한의 식량 사정 평가'는 96.11-97.4월 북한도착분을 중국 교역 18만톤, WFP등 국제기구 3만 톤이고; 97.5-6월 도착예정분이 WFP 12만톤, 중국 20만톤(원조 7만톤과 교역 13만 톤), 국제 적십자 1만5만 톤, 베트남 1천 톤, 97년 6월 이후 지원 예정뿐 대한 적십자 5만 톤, 유럽연합 15만5천 톤으로 합계 75만 1천 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루 460-480그램정도의 배급량을 기준 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1만톤정도의 소요량이기에 2개월 이상 연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8월말이면 옥수수 생산력 1백98만 톤이 수확되기 때문에 4개월 분의 식량이 되며 쌀의 수확기인 10월말까지는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한겨례』, 1997.6.2). 그러나 이러한 통일원의 축소설은 북한 식량난이 제기되던 1995년부터 위기과장설을 의도적으로 조성해 왔던 전력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떨어진다. WFP를 뒷받침하는 주장은 97년 6월 6일 미국무성 번스대변인의 논평에서 잘 나타난다. "세계식량계획은 전문가들이며, 미국은 이들을 신뢰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통일원의 북한 식량난 축소설을 간접 부인했다(『한겨례』 1997.6.9).

의한 북미관계개선과 대북제제조치의 해제 등의 약속 이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정책, KEDO협상 과정에서의 트집잡기 정책으로 나타났다(강정구, 1996b). 그 이후 95년부터는 북한의 대남 비방 중지, 한반도에서 남북 당국자 회담 개최, 북한 당국의 직접 요청 등의 조건을 부쳐 정부 차원의 식량지원 불가 정책과 이를 위한 한미일공조정책을 취해 왔다. 96년 제주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는 4자회담 수용 이전 북한식량지원 불가라는 식량무기화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견해를 '세계평화를 위한 정상회의'의 연구 이사인 마크 베리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 속마음은 필멸의 적인 북한을 굴복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곁으로 내보이는 공식정책은 대북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실질적 정책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1994년 김일성성주석 유고시 의례적인 조문 표시조차 단호히 거절하는 점에서 이러한 남한의 참된 의도는 가장 잘 드러난다. 이로써 서로 관용을 표시하고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발판을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 버렸다. 지금 북녘에서 굶주림에 허덕이는 형제들에게 가장 가깝고 또 그들을 구제할 능력을 가진 바로 그 당사자인 남한이 같은 동포를 구출하기 위한 식량지원을 거절하면서 정치적 양보를 이끌어 내는 모습에서도 이러한 파라독스를 확인할 수 있다."¹⁸⁾

이러한 대북봉쇄정책과 더불어 경제적 위기에 몰린 북한을 마지막 코너에 내몰려는 듯 남한은 해마다 군사비를 10% 가깝게 증액시켜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¹⁹⁾ GNP수준에서 남한의 1/20정도에도 못 미치는 북한이 이러한 군비경쟁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계산한 정책이다.²⁰⁾ 이 결과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오는 생존권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Moon, 1997). 미국이 얼마전 한국이 가지고 있는 평상시 작전권 행사의 경우도 대북관계에 관한 한 미국과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한 점도 마크 베리가 말하듯이("정말이지 북한은 남한을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 당분간 미국과 일본을 그 완충 역으로 여기고 있다") 오히려 미국을 대 남한 완충 역으로 설정하려는 북한의 안보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대북 식량정책의 뿌리가 북한 봉괴에 의한 흡수통일정책에 있기 때문에 설사 북한이 4자회담의 본 회담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남한정부는 또다시 북한 군사력 후방 배치, 화학무기 폐기, 군사비 감축 등 북한 無力化의 요구를 전제조건으로 내 걸 가능성이 높다(이삼성, 199). 잠수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 사과나 황장엽에 대한 조기 망명 인정 등 북한 나름대로의 전향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식량무기화

18) The text of a talk given February 8, 1997, by Dr. Mark P. Barry, Director of Research at 'Summit Council for World Peace' in SPECIAL REPORT of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NETWORK on Feb 14, 1997.

19) 김정권 출범 이후 군사비는 93년 9.6%, 94년 9.3%, 95년 9.9%, 96년 10.7%, 97년 대통령 특별 지시에 의해 12.7% 늘어났고 98년 예산은 97년보다 1조9천5백11억이 늘어난 16조3천16억원을 요구해 13.6%의 증액을 꾀하고 있다(『한겨례』 1997.6.6:8쪽) 또 스토훌롬 평화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1996년 한국은 17억\$의 무기를 수입하여 세계3위를 기록하였다. 북한의 경우 91년까지 20억불정도의 군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스토훌롬의 평화연구소가 분석하고 있으나(강정구, 1996b: 2부3장) 95년 GNP가 52억불이라는 자체보고를 감안한다면 최근 군사비는 10억불수준으로 추정된다. 남한의 군사비는 96년 156억불, 97년 170억불로서 이미 북한의 전체 GNP를 능가하고 있다.

20) 1995년 남·북한의 GNP(한국은행 추정-『중앙일보』 1996. 6.18)는 각기 4,517억달라와 223억달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97년 6월 UN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GNP는 88년 161억\$에서 95년 52억\$로, 1인당 GNP도 868\$에서 239\$로 격감하고 대외 부채는 39억에서 76억\$로 증가했다(『중앙일보』 1997.6.30).

정책이 바뀌지 않는 점은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와 김영삼정부가 지속적으로 외교 마찰을 빚은 주된 요인은 바로 남한의 대북봉쇄정책과 미국의 대북포용정책(engagement)에 의한 변화를 유도하는 연착륙정책과의 충돌에서 비롯되었다. 또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대북한 봉쇄를 통한 북한 폭조르기(대북식량지원 거부 정책은 북미 및 북일 관계 개선 제동정책 등과 같이 이 가운데 하나임)-->북한정권의 붕괴-->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성취'라는 단순 도식을 맹신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등식은 그 실현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폭조르기를 계속하고 식량지원을 봉쇄 하면 과연 북한정권은 붕괴할 것인가? 우리는 수많은 아사자를 경험한 중국이나 소련의 역사에서 이를 선불리 단정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특히 북한 내부에서 김정일세력을 대체할 대안 세력이 부재함은 이러한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은 어렵게 한다(강정구, 1996b: 1부4장). 또한 분단고착화를 지향하는 동북아의 새로운질서와 미국,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의 대한반도정책도 북한의 붕괴를 뒷받침하고 있지 않다.

설사 김정일정권이 붕괴된다 해도 과연 흡수통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흡수통일을 이룬다 하더라도 통일비용을 감당하고 통일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전쟁위험과 분단 고착화로 귀결될 전망이 더 높다.

(2) 북한정권 붕괴 시나리오와 통일 및 평화전망

정부의 북한붕괴 시나리오와 더불어 미국의 국방부나 CIA 등 일부에서 대북연착륙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제 연착륙이 아니라 연·경붕괴(soft-hard collapsing)라는 비상사태에 대비할 것을 주창하고 있다. 종종 들려 오는 한반도 유사시의 미일공조체제에 대한 협의 소식과 주한미군사령관의 '북한붕괴 7대시나리오' 등은 이러한 우려를 더 해 준다. 이러한 북한정권 붕괴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면(그렇게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지만) 남한의 대북봉쇄정책이 실효를 거두어 흡수통일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도식은 바람직하지도 않거니와 실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실적 차원에서 등장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겠다.

첫째는 중국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친중정권의 조속한 수립이다. 이는 대미 및 대일 완충지역으로서 북한 존재의 필요성이라는 중국의 근본적 안보이해관계와 더불어 실제 중국은 북한에 매년 50만톤의 식량지원 및 석유등을 공급하고 있는 맹방이라는 점에 있다. 이 밖에도 전통적 유대관계, 친중인맥의 형성, 지리적 근접성, 역사적으로 나타난 중국의 대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안보이해관계 등 현실적인 발판을 갖춘 점에서 가능성이 높은 행로이다. 이 경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북한은 중국에 의존하게 되어 독자성을 상실하게 되고 분단고착화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는 중국이나 미국이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하고 6.25전쟁 당시와 같이 북한을 유엔의 잠정적 신탁 통치나 미·중 중심의 다국적 신탁통치하에 두는 행로이다. 6.25 당시 북한을 이승만정권의 경찰국가형태의 통치하에 두기보다는 신탁통치를 실시하겠다는 유엔의 결정을 담습하는 행로이다.²¹⁾ 남한의 대북봉쇄정책이나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마저 거절하는 반민족적 행태, 수시로 조성되는 공안정국에 의한 통일운동이나 진보세력의 탄압, 헌법에 의해 보장된 학문·사상·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국가보안법으로 무력화시켜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리도 지키지 않은 반민주성 등은 지구촌에서 남한 주도의 통일을 수용하지 못하는

21) 실제 6.25이후 수복 지구였던 속초, 양양, 명주 등에서는 1954년까지 유엔군사령관의 군정 하에 놓여 있었고 형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까닭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행로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²²⁾

일정 기간의 유엔 통치하에 두어 북한사회가 안정을 어느 정도 되찾을 경우 북한 주민의 자결권에 의해 북한의 진로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선택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물론 이제까지의 남한에 의한 대북봉쇄정책과 식량정책의 악몽 때문이다. 중국식 개혁사회주와 자본주의 가운데 어느 체제를 택한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국가체제로 나아갈 것이고 이는 장기간의 분단고착화로 귀결될 것이다.

셋째는 남한이나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전격적으로 추진하는 행로이다. 이 경우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과의 집적접인 충돌이라는 엄청난 참화를 다시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러시아와 일본이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게 되어 통일시대의 한반도는 6.25전쟁과 같이 엄청난 비극을 맞게 될 것이다.

넷째는 미국의 개입없이 남한이 북한의 접수를 위해 휴전선을 넘었을 경우 비록 정권이 붕괴하였다 하더라도 군부의 일부 또는 전부와 반남한세력들이 남한에 대한 무력항쟁을 시작하여 내전상태로 접어들 위험성이 농후하다. 일부 외국에서는 유고슬라비아의 내전보다 더 치열한 살륙전이 전개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경우 중국이 북한의 잔존 세력을 돋기 위하여 내전에 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필연적이고, 이 경우 다시 미국과 일본 및 러시아의 개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북한정권붕괴의 경우에도 남한정부의 정책과는 달리 흡수통일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내전과 국제전 형태의 제2 및 제3의 6.25로 회귀되거나 분단고착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봉쇄정책으로 북한정권 조기붕괴를 유도하여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현 통일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전쟁이나 분단고착화의 파행적 역사행로를 막는 대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²³⁾

5. 평화협정의 긴요성

최근 한반도는 한국전쟁이후 가장 불안정한 구도 속으로 빠져들어가 평화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평화위협의 근원적인 구조적 요인들은 지속되는 남북간의 긴장상태, 해마다 거의 두 자리 수에 육박하는 남한군사비의 증액과 최신병기의 도입, 남한의 대북봉쇄정책에 의한 북한고사정책, 북한의 남한배제 정책, 정전협정의 사실상 무력화로 인한 위기관리 제도와 평화를 위한 안전장치의 부재, 흡수통일정책,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난, 미국의 대중국봉쇄정책에 의한 미·중간의 갈등 등으로 이 요인들이 한반도 평화상태를 위협하는 불안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불안정 요인에다 당면한 여러 국면적 요인이 중첩되어 남북간의 무력충돌까지 배제할 수 없게 되어 평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몇 가지 국면적 요인을 제시해 본다면, 첫째 앞절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북한정권의 붕괴와 남한의 대북흡수통일정책에 따른 내전의 발생과 이의 확산으로 또다시 6.25와 같은 국제전으로의 비화 가능성이 있다. 둘째, 조문과동, 북한식량난 등을 계기로 최악의 상태로 접어든 남북긴장하에서 남북양쪽의 일부 극단적인 강경세력이 1965년도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조작했던 통킹만사건처럼 사건 조작에 의해 무력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휴전선 근처에서의 우발적 사고로 인한 남북간의 충돌이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지난번 잠수

22) 홍관희도 이와 유사한 가정을 하고 있으나 그는 통일외교 등으로 통일로 이끌 수 있다고 본다.

23) 일부에서는(홍관희, 1996) 통일외교를 통하여 이러한 흡수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기본적인 정책전환이 없이 단순한 외교적 수단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다.

함사건이나 황장엽사건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방의 적대적 행위에 대하여 어느 한쪽이 일전 불사와 같은 과잉 반응을 보임으로써 무력 시위용 충돌이 일어나고 이를 극단적인 언론이나 극한 세력들이 적대적 여론을 조장하거나 자극하여 국지전이든 전면전이 초래되는 경우이다. 다섯째, 올해는 대통령선거의 해이다. 95년 6월 26일의 『와싱턴 타임스』가 폭로한 미국의 '비밀정보보고서'의 설명과 같이 남북관계의 사건 조작으로 선거를 왜곡하려는 기도가 올해도 되풀이 될 경우 초긴장상태에 있는 남북관계로 인해 겉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빠져들어 갈 수도 있다.

"김영삼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이유 때문에 휴전선 일대에서 한국군 활동을 크게 늘려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 김영삼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은 92년 대통령선거 이전에도 분명히 이러한 휴전선 일대 긴장고조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김대통령자신도 그런 계획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군으로 가장시킨 한국의 특수대원을 이용해 휴전선 일대에서 사건을 일으키는 긴급 계획을 마련한 인물은 당시 김영삼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 부위원장이었으며 현 민자당 대표이다. 이 계획은 김영삼 후보가 선거에서 패배할 것으로 컴퓨터가 예상하면 실행에 옮길 계획이었다"(『한겨례21』 67호, 1995.7.13. 52쪽).

특히 우발적 충돌이 정전협정이라는 위기관리기제의 와해로 인하여 제대로 통제되지 못한 채 의도치 않게 대규모의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이 우리의 우려를 더 해준다. 지난 7월 16일 비무장지대에서 각기 무반동총까지 발포함으로써 남북한은 72년 이후 처음으로 비무장지대에서 포사격까지 주고받았다. 다행히 이 사건은 23분만에 종료되었지만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남북한의 충돌이 국지적 분쟁 또는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97년 4월 10일에도 강원도 철원군 북방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5~6명 남한군 사이에 서로 사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조선일보 97.4.11). 또 백령도와 연평도 주위의 해상에서도 무력충돌이 있었다. 이런 우발적인 충격전은 통제불능의 상황을 초래하여 언제든지 대규모 충돌의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판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러한 최근의 국면적 상황은 평화협정의 체결을 긴급히 요구하고 있음을 응변해주지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는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되자 말자 지속적으로 대두된 과제였다. 정전협정 자체가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치회담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54년 제네바회담에서 미국의 고의적인 사보따위로 평화협정은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북한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1994년 10.21조미협정이 이뤄지지 까지는 한국이나 미국이 제대로 이를 이행할 의사를 보여주지 않았다. 더 나아가 미국은 아이젠하워대통령의 대공산권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대량보복전략을 세워 이를 동북아에 적용하기 위하여 1957년 북한이 군사력을 증가한다는 구실로²⁴⁾ 정전협정 13조 d항(정전협정 당사자의 무장증강이 금지되고 이를 중립국감시단이 감시한다는 조항)을 파기하고 중국군이 철군하는 58년에 남한에 핵무기와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이후 팀스피리트훈련에서부터 1994-4년 핵위기까지 지속적으로 평화상태를 위협해 왔었다. 이 시점까지 평화협정을 거부하고 '순전히 군사적 성격'에 국한된, 곧 일시적인 전투행위의 중단에 불과하고 법률적으로는 어느 한쪽이라도 전투행위를 '합법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 준전시상태를 지속하여 왔다. 그러나 대북압살정책에서 북한 껴안기로 나아가는 1994년 10.21 북미협정이후 평화협정체결 의도를 나타내고 1995년 2월의 나이보고서에서 이를 공식화하였다.

24) 북한은 1965년까지 군사비를 전체예산의 5% 이내로 할당하였고, 5.16군사쿠데타 이후 소련 및 중국과 각기 상호우호협정을 체결하고, 1966년 10월 로동당2차당대표자대회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노선을 천명하면서부터 군사비를 30%로 급증시켰다. 이는 미국의 정전협정 13조 d항 파기의 명분인 북한의 군사력 증강이 근거가 없음을 입증한다.

평화협정체결에 대한 호의적 반응은 미국의 전략변경과 북한의 지속적인 압박의 산물이다. 91년 3월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측 대표로 한국군 황원탁소장을 임명하자 북한은 군사정전위 참석을 거부하였고, 94년 4월에는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며 군사정전위의 북한대표부를 철수시켰고, 5월에는 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설치하였고, 95년 2월에는 북미군사위원회를 근간으로 하는 중간적 조치를 제안하기도 하였고, 95년 6월 25일에는 일방적인 정전협정의 파기를 선언하였고, 96년 2월 22일에는 '단계적 조치로서 군사적 충돌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잠정협정'체결을 제안하였고, 96년 4월 5일에는 비무장지대 불인정 선언을 하였다. 이로써 남북간의 위기관리기제로 작동하였던 정전협정은 실제 94년 이후에는 사문화가 되어 버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시급하게 대두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압박과 미국의 평화협정에 대한 긍정적인 대응으로 남한이 더 이상 이를 지연시킬 수 없는 상황에 몰리자 남한은 이제까지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96년 4월 16일 4자회담을 제안하였다. 15개월 이상 4자회담에 대한 설명회 등 공방을 벌이다 97년 8월 5일 이제 겨우 4자간의 예비회담을 가지기로 하여 평화협정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리라 예측된다.

평화협정은 한반도의 당면 과제인 평화체제, 곧 단순한 평화공존이 아니라 남북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소멸시켜 평화를 근원적으로 보장하는 체제를 구현시키기 위해 가장 긴요하게 요구되는 필요조건이다. 또한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더구나 그나마 전투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안전판으로 작용하여 왔던 정전체제마저 이미 무력화되어 평화가 지속적으로 유혈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하루가 시급한 문제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정전협정은 '외국으로부터 신무기 도입 금지' 등 군사력 증강을 억제하는 조항(2조 13항)이 이미 57년 미국의 주도에 의해 사문화되었고,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단의 기능도 북한의 주도로 유명무실화되어 정전협정의 이행을 담보하고 감시할 기구가 사실상 소멸되었다. 또 북한의 비무장지대 불인정 선언으로 군사분계선의 효력이 육상에서나 해상에서 도전받고 있다. 이렇게 정전체제를 유지해 온 분계선과 감독기구, 완충지대, 협정 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정전체제는 점차 현실적으로 의미를 잃어 가고 있기 때문에 평화협정에서 이의 조속한 복원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군비억제와 군축, 군사적 신뢰구축, 외국군 철수, 평화유지를 위한 장치 확보, 동북아집단안보체제 등까지도 협약하여 높은 수준의 평화체제 구현으로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4자회담에서의 평화협정 타결이 장기간을 요구하므로 협정체결까지 평화를 담보하는 잠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가 4자회담에서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

6. 4자회담의 과제

4자회담은 1996년 4월 16일 제주한미회담에서 남한의 주도로 이제까지 한미일공조체제아래 압박해 왔던 북미간의 관계개선을 어느정도 묵인하면서 남북 당사자 원칙의 평화협정을 관철시키려는 의도하면서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 제주선언은 지극히 간략하고 미국이나 중국의 역할이나 중심 의제 등에 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주대상자인 북한 측은 물론, 러시아, 카나다 등 주변국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²⁵⁾ 초기의 회의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으로서는 긴박한 식량지원을

25)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이 축소된 점에 대하여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면서 이고르 로디오노프 국방장관이 4월 15일 "러시아는 결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힘의 균형을 변경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경고까지 하였다(『조선일보』 97.4.16). 또 일부에서는 4자회담대신 러시아와 일본을 포함하여 6자회

받기 위해서도 이를 외면할 수 없고, 또 북미관계개선의 상대방 쪽인 미국이 제안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어 미온적이나마 이를 수용하였다. 비록 남한의 의도나 북한의 반응 등에서 회담전망이 밟지는 않지만 앞으로 한반도 역사방향의 기본 틀이 확정지어질 수 있는 핵심적인 회담이 될 것으로 예견된다.

(1) 4자회담의 역사적 상격

앞 절에서도 논의되었지만 4자회담은 1953년 정전협정에서 미국에 의해 유예되었던 한반도에 대한 통일, 외국군 철수, 평화정착 등의 정치·군사 회담을 이제 한반도의 평화상태가 지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야 비로소 열리게 되는 역사적 성격을 갖는다. 정전협정 4조60항은 “3개월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코리아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코리아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를 협의할 것을 이에 관계 각국 정부에 건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정치회담이 1954년 제네바에서 열렸으나 미국의 불참선언으로 무산되었고 바로 이 군사·정치회담의 연장선상에 4자회담이 놓여 있는 셈이다.

비록 제주선언은 평화협정과 북미관계개선에 대한 간략한 언급밖에 없지만 4자회담은 그 성격상 평화협정에 국한되지 않고, 북미관계개선, 남북긴장완화, 남북관계개선, 대북식량지원, 동북아집단안보체제, 나진선봉 등 경제특구 지원문제 등 포괄적인 회담이 된다. 노태우정권하의 남북고위급회담 또한 이러한 포괄적 성격을 띤 회담이었지만 이 회담에서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는 남북간의 신사협정에 불과하여 어느 한 당사자라도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의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4자회담의 합의사항은 당사자인 남과 북, 그리고 당사자이면서도 보증국인 미국과 중국이 함께 협의하고 합의하는 국제적 조약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구속력과 집행력이 거의 강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²⁶⁾

(2) 4자회담의 과제

4차회담의 역사적 성격에서 보았듯이 이 회담은 정전 협정과는 달리 단순한 군사협정이 아니라 평화구도의 정착화, 통일 등 한반도에 관련된 제반문제에 대한 포괄적 해결을 시도하기 때문에 정치·군사회담의

담과 더 나아가 안보리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 유엔사무총장 및 IAEA까지 포함하는 다자회담을 제안하기도 하였다(Bajanov, 1997). 카나다 일부에서는 호주와 카나다 등 한국전쟁에 가담한 유엔참전국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회담을 제의하기도 하였다(Bedeski, 1997). 일본 또한 4자회담이 동북아다자간집단안보체제의 형성에 대한 논의로 발전된다면 75년 키신저가 30차유엔총회에서 제안한 것처럼 (곧 1단계 4자회담, 2단계 소련과 일본이 참가하는 6자회담) 그들의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한반도문제의 국제화에 대한 주변국의 요구가 남과 북의 갈등이 높을 수록 거세어 질 것으로 예측된다.

26) 이러한 강제력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할 때 장기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게 국제관계의 현실이다. 미국의 대중국정책을 대중국봉쇄를 위한 개입정책에다 비중을 두는 필자의 견해는 주로 장기적 전략 차원에서의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단기적 미·중관계는 대중봉쇄보다는 포용적 참여 전략으로 그 정책을 특징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력 성장이 가속화되면 될 수록 포용적 참여 정책 보다는 대중봉쇄정책이 주도할 것으로 필자는 예상하고 있다. 4자회담을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포용적 참여 정책의 일환으로 또 장기적으로는 대중죽봉쇄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양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성격이 주도적인 회담이다. 여기에다 현 북한이 처하고 있는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에 대한 협의 또한 주요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성격의 회담에서 논의가 예상되는 구체적인 의제는 아래의 표가 명시하고 있듯이 평화협정, 북미관계개선, 남북긴장 완화, 남북관계개선, 식량지원, 남북경제협력, 동북아집단안보체제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물론 회담 진행과정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한의 정치·경제적 통일역량이 향상될 경우 통일 논의까지 진행될 수도 있지만 현상황으로는 이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제 이들 각 의제의 합의나 해결과정에서 지향하여야 할 방향과 과제에 관하여 간략히 논의하겠다. 4자회담은 출발부터 태생적 한계를 가졌다. 그러나 이러한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4자회담은 한계를 내포한 채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미 주어진 기본 틀이다. 앞으로의 총체적 과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면서 민족재통일의 성취라는 장기적 민족사의 과제와 유기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이다.

첫째, 이 회담에서 논의될 평화협정이나 북미관계개선 등이 일차적으로는 남북간 평화공존의 실현에 있기는 하지만 이 평화공존구도가 통일에 역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순기능적인 구도를 떠어야 한다. 곧 통일기반의 조성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결합되는 평화공존이어야 한다. 보기를 듣다면 교차승인문제가 필연적으로 논의되겠지만 이 교차승인이 73년 6.23선언에서와 같이 분단고착화의 과정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또한 남한은 미국에 북한은 중국에 정치, 군사적으로 심히 종속되는 형태를 띠게 될 때 남북은 민족자결권의 제약으로 오히려 분단고착화로 나아가게 된다. 남북관계는 어디까지나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남북합의서와 같이 민족내부의 관계로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회담참가국에 관하여 러시아에서는 처음부터 4자회담이 아니라 6자회담 또는 영국과 프랑스,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까지 참석하는 다자간협상을 제안하기도 하고, 카나다의 어느 지식인처럼 한국전쟁 참전국이 모두 참석하는 회담을 제안하기도 하지만 이는 한반도문제의 지나친 국제화로 민족자결권에 대한 중대 침해의 결과를 가져온다. 회담 참가국은 4자에 국한시키되 동북아안보체제 등의 논의에 합정하여 6자회담으로 확대하는 잠정조치를 취하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셋째, 4자회담의 핵심고리는 북미관계개선이고, 미국이 이를 장기적으로는 연착륙정책의 구도하에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남한도 기존의 대북봉쇄를 통한 북한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을 달성하려는 정책에서 코페르티쿠스적 전환을 기해 대북지원을 통한 개방·개혁 유도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로써 북한이 생존권 위협을 해소하고 과감한 체제개혁으로 나아가 남북간의 공통분모 확대를 기하고, 신뢰회복과 민족화합을 진전시켜 통일기반 조성으로 나아 갈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현시점에서는 남북의 갈등이 심화되고 긴장이 고조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반도문제를 남과 북이 상호협력하여 민족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도로(회담의 형식이나 내용의 측면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넷째, 미국의 입장은 남북간의 긴장완화를 평화협정 체결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달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듯 하나(『한겨례』 1997.8.4) 군축을 전제로하지 않은 신뢰구축은 불안정한 긴장완화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평화협정에서 신뢰구축 못지 않게 군축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군수산업 이해가 베제되고 북한 군사비에 비하여 4-5배에 달하는 남한 군사비에(97년 남한 군사비 170억달라 대 북한군사비 20-30억달라) 대한 대규모 감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반도에서 높은 수준의 평화체제보장은 궁극적으로는 동북아협력안보나 집단안보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또 통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미·일신안보공약 등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므로 러시아나 일본 등의 참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4자회담에서 6자회담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6자회담은 어디까지나 동북아집단안보체제나 협력안보체제의 논의에 국한되어야 한다.

여섯째, 국제간의 협상에서는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우위에 따라 협상이 타결되는 경향이 있다. 북한이 4자회담에 앞서 '3+1'회담을 제안하면서 주장하였듯이 외교적으로 북한은 남한과 동등한 지

위에 있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해결 골, 북미관계개선을 선행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외교력이나 경제력 등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북한에 북미핵협상에서처럼 '양파껍질 벗기기'식의 양보를 강요하거나 자주성에 대한 침해가 있어서는 안된다. 보기론 든다면 4자회담의 참여와 식량지원의 연계에서 황장엽의 전쟁위협론이 제기되자 북한군의 후방이전과 화학무기 금지협정 가입까지를 식량지원에 연계시키는 방침을 정부가 발표한 점은 기존의 약속이나 합의를 상황에 따라 바꾸어 협상의 신뢰성을 침해하기 마련이다(『중앙일보』 1997. 7.12).

일곱째, 주한미군에 대한 논의와 처리방향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비록 통일이전까지 반드시 철군을 해야한다는 경직성은 떨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통일여정에 맞추어 철군, 감군, 후방배치, 행정협정 등이 민족자주성과 자존심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재구도화되어야 한다.

여덟째, 남한 외교는 민족문제까지도 민족공조의 차원이 아니라 한미일공조체제 유지라는 탈민족적 기본 구도하에 추진되었다. 북한 또한 남한배제전략을 기본구도로 설정하였다. 4자회담과정에서 이러한 탈민족적 구도에서 민족적 구도로 전환하여야 한다.

아홉째, 비록 예비회담이 8월 5일에 열린다고 하나 본격적인 회담은 김영삼정권이 아니라 차기정권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조문파동, 대북식량정책, 북한붕괴촉진에 의한 흡수통일정책으로 김영삼정권은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간 역사적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 임기말에 처한 이러한 정권이 단기적 업적용으로나 대통령선거용으로 4자회담을 악용하는 정략적 정책추진이 있어서는 안된다.

열째, 앞에서도 밝혔지만 최악의 식량난에 처한 북한동포에 대한 식량지원은 "인류의 도덕적 의무"일뿐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고 민족화해와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전제이다. 북한동포돕기를 회담진행과 연계시키는 식량무기화정책을 곧바로 폐지하고 전폭적인 정부차원의 대북식량지원과 농업기반 복구지원을 시작해야 한다.

(3) 동북아집단안보체제

남북간의 대립구도가 평화협정과 긴장완화로 이어지고 북미관계개선이 이뤄질 경우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단계는 동북아집단안보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이에는 일본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확대회담이 요구되므로 엄밀히 4자회담의 틀내에서만 추진될 성격의 것은 아니다. 4자회담의 결과가 어떠하나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의제이므로 현시점에서 전망하기는 힘들지만 동북아평화체제의 구축과 한반도 통일환경의 지속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동북아의 평화정착이나 공동번영과 직결되어 있는 점과 공동안보에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각나라의 이해가 걸려있기 때문에 밝은 전망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만 미국의 패권주의와 이에 편승하여 군사대국화를 지향하려는 일본의 탈아세아정책이 가장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7. 맷음말

이제까지 살펴본대로 통일시대의 현 통일정세는 평화에 대한 위협과 분단고착화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동북아에서 앞으로 15여년 후에 서서히 도래될 미·중간의 신냉전질서는 분단고착화를 공고히 할 역사행로를 암시하고 있어 시급한 통일행진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동북아의 평화구도를 위협할 장기적 불안요소를 자리잡게 될 것이다. 잠정적인 평화구도가 깨어지기 이전에 우리의 통일은 부분통일 단계로 까지 발전하여 동북아촌에서 통일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 남북의 최대 우선정책이 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빈사상태에 빠진 북한, 흡수통일을 추구하는 남한, 최악의 상태로 빠진 남북적대관계 등은 조속한 통

일이 내부식민지화를 기하는 반민족적 통일로 나아갈 우려를 더해 준다. 여기에 우리의 전략적 선택의 딜레마가 있다.

이러한 딜레마에 빠진 민족통일구도하에서 4자회담은 외세에 의해 제약될 위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나마 통일과 평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현실적인 틀이고 기회이다. 또 현존의 동북아질서도 남과 북이 적대적이지 않고 민족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 민족자주적으로 우리의 통일행로를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우리 자신에 있다. 남과 북이 어떻게 민족중심적인 기조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민족화해와 통일기반 조성을 통한 남북간의 평화구도 정착은 민족통일에 긴요한 전제이고 동시에 동북아평화에 긴요하다. 우리의 통일추구는 단순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평화에 이바지하면서 민족자주와 자결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지향은 일본중심의 침략적 대동아공영권이 아니라 동북아인의 주도와 동북아전체의 이해에 걸맞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발상이 동북아공동체나 연합등으로 발전되어 새로운 동아시아의 공생공영 구도로 정착되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정구(1994). 「북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대응의 실체: 한국·미국·IAEA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계간 27호, 1994년 겨울호
- 강정구(1996). 『통일시대의 북한학: 민족중심적 이해를 위하여』. 서울: 당대
- 강정구(1997). 「대북식량정책과 민족통일의 전망」 한국사회학회 1997년 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 김국진(1997). 「4자회담 추진방향과 정부의 과제」,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일경제』 통권 28호, 1997년 4월호, 특집 "4자회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김성주(1996).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현황과 전망」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통구년26호, 1996년 하반기.
- 김용호(1997). 「4자회담 제의 1년에 대한 평가와 각국의 입장」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일경제』 통권 28호, 1997년 4월호, 특집 "4자회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김창수(1996). 『평화만들기, 통일이루기』 (서울: 대동)
- 김창수(1997). 「4자회담에 대한 남북한과 미국의 시각」 전국연국연합통신 126호(97.7.21)
-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1996), 「미국 방문 보고서」,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정책포럼』 통권 19호, 1996 가을호
-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1996), 「중국 방문 보고서」,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정책포럼』 통권 19호, 1996 가을호
- 도서출판 통일샘(1997). 「정말이지 살아남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울: 도서출판 통일샘)
- 선우학원(1997). 『한·미관계 50년사: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서울: 일월서각)
- 이근(1994). 「참여시장경제와 통일한국의 새 경제체제」 이근, 『발전·개혁 통일의 제모델』 (서울: 21세기북스).
- 이삼성(1997). 「북미관계 정상화 저지는 반민족노선이다」 월간 『말』 1997년 7월호
- 이원섭(1997). 『새로운 모색』 (서울: 한겨례신문사)
- 조동호(1997) 「통일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 민족통일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주최 학술회의,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발표문, 1997. 6.5
- 조민(1997) 「분단의 정치사회적 비용과 통일의 이익」 민족통일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주최 학술회의,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발표문, 1997. 6.5
- 허남성(1997).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조건과 과제」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일경제』 통권 28호, 1997년 4월호, 특집 "4자회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홍관희(1996).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통권 26호, 1996 하반기
- Barry, Mark P. (1997). the text of a talk given February 8, 1997 at 'Summit Council for World Peace'. distributed on Feb. 14, 1997 by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NETWORK, Special Report-Policy Forum
- Bajanov, Evgeni(1997). "A Russian Perspective on Korean Peace and Security"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NETWORK, SPECIAL REPORT, POLICY FORUM ONLINE (#8) July 28, 1997
- Bedeski, Robert.(1997). "Challenges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NETWORK, SPECIAL REPORT, POLICY FORUM ONLINE (#7) July 23, 1997
- Bernstein, Richard and Ross Munro(1997). The Coming Conflict with China, (NY: Alfred Knopf)
- Linton, E. Stephen.(1996). "North Korea under the Son"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MIT, Washington Quarterly v. 19-2
- Landsberg, Martin Hart.(1995). "Korean Reunification: Learning from the German Experience" in 'International Symposium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by The South Koran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50th Anniversary of National Liberation
- Moon, Chong-in.(1997). "Rethinking Arms Control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earch for Alternatives"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Network, Special Report, Policy Forum Online #5. NAPS Network on June 2, 1997
- Swaine, Michael(1997). "Don't Demonize China" in Washington Post 1997.5.18.

〈2부 발제2〉

일미 新가이드라인과 동아시아

渡邊健樹 〈일한민중연대간담회 사무국장〉

9월 23일 뉴욕에서 개최한 일본과 미국의 외무, 방위 각료들로 구성된 일미 안전보장협의위원회는 '일미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이라는 개정된 최종보고를 발표하였다. 新가이드라인은 일미군사협력체제를 비약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한반도 유사시' 대응을 공식화하였다. 또한 '일본 주변사태'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대만해협 유사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활동하는 전쟁에 일본이 일체가 되어 참전하는 것을 결정한 '전쟁시나리오' 그 자체이다. 그 내용에는 미군과 자위대의 공동작전만이 아니라 지방자치체로부터 민간에 이르는 국가총동원체제의 구축을 겨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본 정부는 新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법의 정비, 즉 '유사시 입법'을 내년도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다.

위험한 '전쟁지침'인 新가이드라인

新가이드라인은 전체 7장과 40항목에 달하는 별표('주변사태시' 군사협력 목록)로 구성되어 있다.

평시에서 전시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일미 군사협력태세를 구축하는 것(제1장), 그러나 이에 기초한 '일본의 모든 행위는 일본 헌법상의 제약 범위 내에서 즉, 전수방위, 비핵3원칙 등'에 따라 행해진다(제2장)는 기반을 부리면서, 제3장 이하에서는 평시, 일본 유사시, 주변 유사시로 각각 나누어 일본이 참전국으로 등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1) 우선 '평시 협력'으로는 아시아 태평양과 지구적 규모의 문제에 관여하는 일미군사동맹관계의 구축을 겨냥함과 동시에 일미간에 '포괄적 메카니즘', '조정 메카니즘'을 평시부터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제6장의 '일미공동체제' 안에서도 반복해 강조되고 있는데 '포괄적인 메카니즘'이란 일본측은 외무, 방위, 운송, 후생, 법무 등 각 부처로, 미국측은 국무, 국방 양 부처와 재일미군 등으로 구성하고 '별표'에 제시하고 있는 바 일본 사회 전반을 군사협력체제 구축에 맞추어 편제하고, 유사시 법제를 정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정 메카니즘'은 마찬가지로 관계가 있는 제 기관을 망라하여 '유사시와 그 전단계'부터 '작전, 정보활동, 후방지원'에 대하여 조정하는 말하자면, 일미 공동의 전쟁지도부라고 할 수 있다.

더우기 이 '조정 메카니즘'의 일환으로 일미 양군으로 구성된 '공동조정소'를 준비해두는 것도 명기되어 있다. 이것은 이미 자위대 제복팀에서 실시한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1963년의 도상연구, 이른바 '삼시(三矢)작전연구'에서 구상되었던 '일미공동작전 조정소'를 공개적으로 등장시킨 것이다.

이들 전쟁수행 메카니즘의 구축은 현재 하시모토정권이 행정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추진하고 있는 수상, 관방 즉 내각으로의 권력의 집중, 국가의 군용지 강제사용권한을 집중시키고, 지방자치를 제한하는 등 국가체제의 재편, 강화 움직임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다.

(2) '일본 유사시' 대처에서는 미군의 대규모 이동을 위한 기반을 사전에 구축,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일미공동작전에서는 자위대는 주로 방공, 항만, 해협의 방위, 선박 보호, 상륙침공의 저지, 배제, 계렬라 공격에 대한 작전 등 '방어작전'을 담당하고, 미군은 '타격력', '기동타격력'의 사용을 수반하는 작전을 포함하여 자위대를 보완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타격력이란 경우에 따라서는 전술핵등의 사용을 포함하여 상대국에 대한 침공, 제압전력을 의미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미 미군은 '한반도 유사시'에는 항공모함기동군, 항공전력, 미사일 등의 압도적인 전력을 집중한 북한 공격과 해병대에 의한 기습 상륙을 포함한 해안전쟁형 '지공전'이라고 불리는 군사작전을 상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일본 유사시'는 '주변 유사시로부터의 폐급'과 '상호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일본 유사시'와 '주변 유사시' 대응은 사실상 동일하다. 즉 타격력의 행사를 포함한 전쟁에 일본은 언제라도 참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가이드라인 개정의 가장 주된 목적인 '주변 유사시' 대응에서는 자위대는 ① 재난지역에서의 구원활동과 피난민에 대한 대응 ② 행방불명된 미군의 수색, 구난 ③ 비전투원의 대피활동 ④ 경제제재에 대비한 타국 선박의 임검 ⑤ 공해상에서의 기뢰 제거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재난지역에서의 구원과 일본인등의 대피활동이란 타국에 대한 자위대 파견의 확대와 직결된다. 과거 침략전쟁에서도 "일본인 보호" 구실은 일본군 과병확대의 상투적 수단이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일본인 구출시 자위대기(機)만의 과병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자위대법을 개정하여 대량수송이 가능한 자위함 과병의 길을 열려고 하고 있다. 이미 자위대는 98년 3월에 헬리콥터의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모함으로 전용 할 수 있는 대형 강습양륙함, '오오쓰미'의 취역을 예정하는 등 강습상륙능력도 계속 증강시키고 있다.

또한 '전투해역'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행방불명된 미군의 수색, 구난, 타국 선박에 대한 임검 그 자체는 전투행동과 직결되어 있는 군사작전이며, 기뢰 제거도 전투함정의 '안전 항해'를 도모함과 동시에 특히, 상대국에 대한 강습상륙작전의 수로를 여는 역할과 직결되어 있는, 즉 전투행동 그 자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더우기 미군에 대해서는 자위대가 미군 측에게 무기, 탄약, 연료, 물자의 수송, 보급과 함께 ① 자위대 시설, 민간공항, 항만의 사용, ② 물자의 사전 집적시설의 확보, ③ 공항, 항만의 운영시간의 연장, ④ 훈련 연습구역의 제공, ⑤ 미군시설, 구역내의 사무소, 숙박시설 등의 건설 따위의 시설제공, 나아가 항공기, 함선, 차량의 수리와 조정, 부상 미군의 치료와 수송, 시설내의 하수처리와 급수, 전기공급 따위의 노무 등을 제공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공항, 항만, 항공, 선박, 교통운수, 의사, 간호사, 기타 민간 노동자, 자치체 노동자를 비롯하여 광범위한 민간의 동원도 계획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중앙정부 및 지방공공단체가 지난 권한과 능력, 그리고 민간이 지난 능력을 적절히 활용한다'는 것, 나아가 자위대는 '공공의 질서유지(치안관리)'등의 임무와 조화를 도모하면서 작전행동을 실시한다는 것까지 명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일본인만이 아니라 '제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이 작년 가지야마의 발언에서 확인되었다. 이미 일본정부는 도청을 합법화하고 단체활동을 규제하는 '조직범죄 대책법'을 올 가을 임시국회에 상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新가이드라인-유사시 입법체계란 전후 일본국가 자체의 '메카니즘'의 역사적 전환이며, 국내적으로 우익체계의 성립과 치안관리의 강화를 동반하면서 다시한번 일본이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여러나라와 민중들 앞에 직접적인 가해자로 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新가이드라인에 이르기까지의 일본의 정치과정

일본의 새로운 '전쟁이 가능한 국가'체제의 확립이 일본 지배층의 입장에서는 비전-비무장을 규정한 현

법 제9조등 패전국으로서의 '전후적 제약'에서 벗어나 '보통의'(오자와 이치로) 정치-군사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말 그대로 숙원이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1)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조선침략과 식민지지배, 아시아, 태평양에 대한 침략전쟁에 의해 한반도 및 아시아인들에 심대한 피해를 주었다. 패색이 농후해졌음에도 유일 천황제의 연명을 목적으로 항복조건을 유리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전쟁은 지속되었다. 오끼나와 전은 소위 시간을 벌기 위한 '사석작전'이었다. 1945년 8월 15일 천황의 '종전조치(칙서)'은 '포츠담선언을 수락하지만 황국의 번영을 위해 더욱 분투하자'는 것이었다. 8월 17일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서둘러 최초의 황실수반내각을 성립시켰는데, 그 수반인 히가시구니노미아(東久彌宮) 수상이 행한 제일성은 '일억 참회'였다. 그것은 천황, 군부, 정치가의 책임을 뒤로 하고, 아시아 민중에 사죄도 없이 힘이 부족하여 패전했으므로 '일억국민'이 참회하자는 대체 품이었다. 천황제의 연명을 위해 아시아 민중에 반성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전후 일본의 출발점이었다.

미군점령하에서 군부, 재벌의 해체, 농지개혁 등의 일련의 개혁이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천황제는 상징 천황제로서 연장되고, 일부 관료기구도 살아남았다. 상징 천황제와 비무장, 비전쟁, 국민주권, 기본적인 인권규정이 혼재된 현행헌법은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전전과 전후의 연속성과 단절성이 혼합된 채 전후 일본의 구조는 이와같은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다.

(2) 일본의 재무장과 경제부흥이 한국전쟁을 계기로 하여 추진된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한국전쟁시 일본 전역은 미군의 병참기지화하고, 출격하는 미군의 공백을 메운다는 명목으로 최초의 군조직인 '경찰 예비대'가 창설되었다. 또한 한국전쟁에 의한 군수경기는 일본 독점자본 부흥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일본이 침략한 피해국에 지불해야 할 배상도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일한조약 등에 의해 대폭 면제되고, 태반이 일본경제침투의 길을 여는 '경제원조'로 뒤바뀌었다.

이리하여 일본은 1950년대 후반부터 일미안보체제에 의한 미국의 핵우산을 전제로 '고도경제성장'정책을 채용하여 경제대국노선의 길로 나아갔다. '구미를 따라잡고, 추월하자!'는 것이 이 과정에서 국민의식으로 광범위하게 침투되었다. 60년의 일미안보조약개정은 일미간 쌍무성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었는데 그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수면 아래에서는 자위대에 의한 '유사시 연구'가 개시되고, 그것을 공공연하게 실행에 옮길 준비가 착실하게 진행되었다. 63년의 '삼시(三矢)작전연구'는 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나아가 65년 일한조약체결을 계기로 대한 경제진출을 개시한 일본은 70년에 들어 대외 경제진출을 본격화하여 80년대 중반에는 미국이 채무국으로 전락한 반면 일본은 '세계 제일의 채권국'임을 호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90년대 들어 동서냉전 붕괴를 거쳐 바야흐로 경제대국에서 권역방위를 근거로 한 정치군사대국의 지위를 본격적으로 추구하는 단계에 이르른 것이다.

(3) 그 획을 그은 계기가 된 것은 걸프전쟁과 소위 '북한핵의혹' 문제였다. 일본정부는 걸프전에 130억 달러 이상의 전비를 지출하였지만 자위대의 참전은 이룩하지 못하였다. 그 후 '국제공헌'을 명목으로 하여 캄보디아등지에 PKO과병이 강행되었다. 그리고 '북한핵의혹' 문제를 둘러싸고 경제제재가 취해지자 당시의 내각은 여기에 참전하기 위해 유사시한입법까지 준비한 것이다. 이때 미군은 1900항목의 대일군사협력요구를 일본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번 新가이드라인, 유사시 입법은 이미 이 때 원형이 만들어졌다.

(4) 그렇다면 이러한 정치과정 속에서 일본의 전후 평화운동은 어떠했는가? 일찌기 일본의 평화운동은 수십만명의 대모대가 국회를 포위한 60년 안보투쟁을 필두로 총평과 사회당 블럭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와 민중의 다양한 지향운동을 전개해 왔다. 그것은 전후 동서냉전체제의 한편에 깊숙이 편입되었던 일본

상황에서 '전쟁에 다시 휘말려서는 안된다', '전전형 군국주의로의 회귀반대'라는 국민적 요구를 배경으로 수동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헌법개악과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허용하지 않는 일정한 제어장치의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여기에는 커다란 약점이 존재하였다. 첫째는 오로지 피해자 의식에서만 출발하여, 일본의 가해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를들면 한국만큼의 규모는 아니었지만 65년 일한조약체결 반대운동이 일본에서도 전개되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동서대결 하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공포위망의 강화반대가 중심이었고, 일부의 선구적 사례를 제외하면 한국민에 대한 가해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후보상을 요구하는 발상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과거청산-전후보상문제등이 일본에서도 중시되기 시작한 것은 주지 하다시피 피해당사자의 고발이 행해진 90년대 이후이다. 당연히 추궁되어야 할 일본의 전쟁, 전후책임은 동서냉전이라는 상황에서 불문에 붙여져 온 것이다. 이것은 운동측에서도 마찬가지였는 바 이 점은 일본 민주주의의 불철저성으로 투영되고 있다.

두번째로 해외 경제침략의 확대와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경제대국노선에 대한 대항전략이 결여되었다는 점이다. 전후 일본의 통치구조의 특징 중의 하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지향의 통합사회라는 점에 있다. 총평을 필두로 하는 일본의 노동조합의 대부분도 기업별로 조직되어 격심한 기업간 경쟁에 늘 휩쓸리는 구조를 지녀왔다. 이런 구조하에서 노동귀족층이 형성되고 국영기업노조의 해체와 함께 총평은 해체의 길로 내몰렸다. 일본의 경제대국화가 현실로 되었을 때, 그러한 현상을 유지하는 입장에서 '경제대국으로서의 국제공헌은 불가결'하다는 대국주의적 경향이 강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사회당의 안보, 자위대 용인 등 기본노선의 전환의 기초는 여기에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런 경향들을 대체하는 새로운 대항적 정치세력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반대하는 것과 더불어 경제대국 노선을 부정하는 경제, 사회의 구상이 동시적으로 요구된다.

근래에 진행되고 있는 오끼나와 민중의 반기지운동은 미군기지의 대부분을 오끼나와에 떠맡기면서 '번영'을 구가해 온 '본토'의 존재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의 전략동향과 동아시아의 평화

(1) 新가이드라인은 96년 4월의 일미수뇌회담에서 채택된 일미안보공동선언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지만, 그 기초에는 조셉나이 미국방차관보(당시)의 주도로 작성된 '동아시아 전략보고'(95년 2월)가 있다. 이것은 세계 어느 지역에서 동시에 2개의 대규모 지역분쟁이 발생하여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방전개전력(前方展開戰力)을 유지한다(미국방총성 'Bottom up review')는 전략에 따라 동아시아에 미군전력 10만명체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계속해서 미국이 세계의 '경제성장센터'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깊게 관여하고, APEC을 통해 역내 자유무역권을 형성하며, 일본경제의 영향력이 특히 강한 동아시아에서의 경제적 주도권을 재확립하려는데에서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

이것들은 소련붕괴에 따라 '중국의 위협', '한반도 유사시'론을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제기하고, 나아가 일본의 독자적인 군사적 대두를 억제하는 '병마개'로서 일본의 군사력을 일정한 틀내에 계속 묶어두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셉나이의 주도하에 진행된 일련의 일미안보에 대한 '재정의' 작업이 일미안보체제를 상대화하고 독자적으로 아시아 집단안보체제를 형성하려고 하는 일본의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의 전략은 군사적으로는 계속 미국에 협조하고 新가이드라인에 의한 역할분담을 확대하면서 정치, 군사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서서히 강화, 독자의 세력권 형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

에는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대항이 큰 축으로 되어 갈 것이다.

미국의 2대 지역분쟁 동시대응전략에서 상정하는 2대 지역이 중동, 걸프지역과 한반도임을 고려할 때 미군 10만명체제는 재일미군 5만 5천명(일본을 포함으로 하는 제7함대의 해상병력을 포함), 재한미군 3만7천명이 일본과 한국에 실제로 주둔하는 전반전개태세를 의미한다.

특히 한반도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면서 대북관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북한을 시장경제체제로 연착륙시켜, 이 지역 전체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을 확립하려 하고 있다. '동아시아 전략보고'에서는 '북한의 위협이 저하된 경우에도 강고한 한미 안전보장관계가 이 지역에서의 한미 상호의 안전보장상의 이익이 된다'고 하여, 남북통일 후에도 재한미군을 유지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2) 96년 4월에 한미수뇌에 의해 제출된 '4자회담'은 이러한 구도에 북조선을 편입시키려는 의도와 함께 중국도 편입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미국은 21세기 경제력을 겸비한 아시아의 대국이 될 것이 예상되는 중국에 대해 현재 '적극관여(engagement)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에 대항하여 미국 주도의 '아시아 신질서'에 중국을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다. 일미 新가이드라인에 의한 일미군사체제의 강화에 대해 만일 한반도의 남북이 미국의 주도하에 들어가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미국에 의한 '포위망'을 경계하는 중국은 이미 新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일본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반복하여 표명하고 있으며, 4자회담을 둘러싸고도 미국과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은 4자회담 예비회담에 출석하였지만, 결국 북한측의 향후 태도는 '항구적 평화협정 실현의 개시와 이를 위한 광범위한 긴장완화조치를 토의한다'는 4자회담의 제안취지가 얼마나 내실을 동반한 것인지, 북한측이 제안하는 내용과 접근점을 얼마나 형성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미국의 보장이 확인될 것인지의 여부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도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남북합의서를 이행하며, 7.4 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에 기초한 남북통일의 전제로서 한반도에 평화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군사대국화를 강화하고, 일한조약을 고수하면서 의연히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지속하여 한반도의 전강격화에 일조하고 있다. 최근 소위 '일본인처'의 귀국문제를 통해 일본과 북한 간에 교섭재개가 합의되었지만 일본은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식량지원에 대해서도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는 과거 일북 정상화 교섭과정에서 확인된 문제가 게재되어 있다. 일북 정상화교섭은 91년 1월부터 개시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정부는 '일한조약과의 정합성' 확보를 지상명제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말할 것도 없이 일한조약은 과거 일본의 침략, 식민지지배를 정당화하고, 한국과만 정상화함으로써 일본이 남북분단에 직접관여를 개시한 조약이다. 이런 '일한조약과의 정합성'이란 일본이 북한과 정상화하는 경우에도 침략, 식민지지배를 계속 정당화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한조약 재검토와 일북 정상화는 하나의 쌍을 이루는 것이며, 핵심적인 것은 금후 일한관계, 일북관계를 일한조약체제와의 '정합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한조약에 포함된 부당성을 시정하는 위에서 재구축함으로써 남과 북의 구별없이 한반도 전체와의 화해와 공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일본의 진로를 전환시키는 문제이다. 이것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일본의 길이다.

(4) 현재 新가이드라인에 대하여 민간군사협력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항공노동자와 항만노동자들은 군사 협력거부의 입장을 표명하고 저항을 서서히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반기지운동을 전개해 온 시민운동의 전국적 연대, 제휴도 형성되고 있다. 재일미군의 주둔을 지원하는 '남을 생각하는 예산' 폐지운동도 개시되고 있다.

오끼나와에서는 반전지주를 선두로 한 기지철거운동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으며, 열화우라늄탄의 사용에 항의하는 운동, 나고야 시민을 중심으로 새로운 해상기지(헬리포트) 건설에 반대하는 운동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들은 한국민중과 연대를 지속, 강화하고 일본 국민들과 함께 新가이드라인 반대, 유사시 입법저지 운동을 전개하고 운동진영을 더욱 확대하여 일본의 전쟁정책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동시에 일한조약 재검토, 일북 정상화의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아시아 평화를 위해 함께 연대를 강화하자!

日米新ガイドラインと東アジア

渡辺健樹

9月23日、ニューヨークで開かれた日米外務・防衛閣僚による日米安全保障協議委員会は、「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ガイドライン）」見直しの最終報告を発表した。

新ガイドラインは、日米軍事協力体制を飛躍的に強化し、とりわけ「朝鮮半島有事への対応」を公言し、「日本周辺事態」なる概念のもとで、「台湾海峡有事」への対応を含めアジア太平洋においてアメリカが発動する戦争に、日本が一体となって参戦することを取り決めた「戦争マニュアル」そのものである。その中には米軍と自衛隊の共同作戦だけでなく、地方自治体から民間に至る国家総動員体制をめざすことまで明記されている。

そして日本政府は、この新ガイドラインの実効性を確保するための国内法の整備、すなわち「有事立法」を来年の通常国会にも提出しようとしているのである。

危険な「戦争マニュアル」としての新ガイドライン

新ガイドラインは、全7章と40項目に及ぶ別表（「周辺事態」の際の軍事協力リスト）によって構成されている。

そして、平時から戦時に至る全段階を通じて日米の軍事協力態勢を構築すること（第1章）、しかしそれに基づく「日本のすべての行為は、日本の憲法上の制約の範囲内において、専守防衛、非核三原則等」に従って行われる（第2章）という欺瞞を弄しながら、第3章以下では、平時・日本有事・周辺有事のそれぞれに分け、日本が参戦国として登場するための具体的な内容が挙げられている。

(1) まず「平素（平時）から行う協力」では、アジア太平洋と地球的規模の問題に関与する日米軍事同盟関係の構築をめざすとともに、日米間で「包括的メカニズム」「調整メカニズム」を平時から構築することを打ち出している。これは、第六章の「日米共同の取り組み」の中でも繰り返し強調されているものだが、「包括的メカニズム」とは、日本側は外務・防衛・運輸・厚生・法務の各省など、米国側は国務・国防両省と在日米軍などで構成し、「別表」に示されている日本社会の広範囲にわたる軍事協力体制づくりと、有事法制の整備も検討するものとなる。他方、「調整メカニズム」は同じく関係の諸機関を網羅しつつ、「有事」やその前段階から「作戦、情報活動、後方支援」について調整する、さしつけ日米共同の戦争指導部といえよう。

さらにこの「調整メカニズム」の一環として、日米両軍による「共同調整所」を準備しておくことも明記されている。これは、すでに自衛隊制服組の「朝鮮半島有事」を想定した1963年の図上研究、いわゆる「三矢作戦研究」の中で構想されていた「日米共同作戦調整所」を一挙に表舞台に登場させるものである。

これらの戦争遂行「メカニズム」の構築は、現在、橋本政権が「行政改革」の名のもとで推し進めようとしている首相・官邸、内閣への権力の集中、軍用地強制使用権限の国への集中を始めとした地方自治の制限など、国家体制の再編・強化の動きと一体のものである。

(2) 「日本有事」への対処では、米軍が大挙して来援するための受け入れ基盤を事前に

構築・維持しつつ、日米共同作戦では、自衛隊は主として防空、港湾・海峡の防備、船舶保護、上陸侵攻の阻止排除、ゲリラ攻撃への作戦など「防勢作戦」を担い、米軍は「打撃力」「機動打撃力」の使用を伴う作戦を含め、自衛隊を補完する作戦を遂行するとしている。ここでいう「打撃力」とは、場合によっては戦術核等の使用を含む、相手国に対する侵攻・制圧戦力を差していることは明らかだろう。すでに米軍は「朝鮮半島有事」に際し侵攻・制圧戦力を差していることは明らかだろう。すでに米軍は「朝鮮半島有事」に際し侵攻・制圧戦力を差していることは明らかだろう。

(3) ガイドライン改定の最大の眼目である「周辺有事」への対応では、自衛隊は、①被災地における救援活動と避難民への対応、②行方不明米兵の捜索・救難、③非戦闘員の退避活動、④経済制裁に対応した他国船舶の臨検、⑤公海上における機雷掃海などを行うとしている。

「被災地」の救援や邦人等の退避活動とは、他国に対する自衛隊派兵の拡大と直結している。かつての侵略戦争でも「邦人保護」を口実とすることは、日本軍の派兵拡大の常套手段であった。このため、日本政府は邦人救出において自衛隊機のみの派兵を認めており、現行自衛隊法を改定し、大量輸送可能な自衛艦の派兵に道を開こうとしている。すでに自衛隊は98年3月にヘリ空母に転用可能な大型強襲揚陸艦「おおすみ」の就役を予定するなど、強襲上陸能力も増強しつつある。

また、「戦闘地域と一線を画した海域」との限定をつけているが、行方不明米兵の捜索・救難、他国船舶に対する臨検それ自体、戦闘行動と一体の軍事作戦であり、また機雷掃海も戦闘艦艇の「安全航行」を図ると同時に、特に相手国に対する強襲上陸作戦の水路を開く役割とも直結しており、まさに戦闘行動そのものにはかならない。

そして、さらに米軍に対しては、自衛隊による米軍への武器・弾薬、燃料、物資の輸送・補給とともに、①自衛隊施設、民間空港・港湾の使用、②物資の事前集積施設の確保、③空港・港湾の運用時間の延長、④訓練・演習区域の提供、⑤米軍施設・区域内の事務所・宿泊施設等の建設などの施設の提供、さらに航空機・艦船・車両の修理・整備、傷病米兵の治療・輸送、施設の汚水処理・給水・給電等々の労務の提供などが盛り込まれている。ここでは空港・港湾、航空・船舶、交通・運輸、医師・看護婦その他の民間労働者、自治体労働者を始めとして広範な民間労働員ももくろまれている。

そのため、日本は「中央政府及び地方公共団体が有する権限及び能力並びに民間が有する能力を適切に活用する」こと、さらに自衛隊は「公共の秩序維持」（治安管理）などの任務との整合を図りつつ、作戦行動を実施することまで明記されているのである。これが日本人ばかりでなく、「在日」にも向けられたものであることは、昨年の梶山発言にも明らかである。そして、すでに日本政府は盗聴を合法化し、団体活動を規制する「組織犯罪対策法」を、今秋の臨時国会にもかけようとしている。

以上見てきたように、新ガイドライン・有事立法体制とは戦後日本国家そのものの「メカニズム」の歴史的転換であり、国内における新たな翼賛体制の成立と治安管理の強化をともないながら、再び日本が、朝鮮半島をはじめアジア諸国・民衆の前に直接的な加害者

として登場することを意味している。

新ガイドラインに至る日本の政治過程

この日本の新たな「戦争のできる国家」体制の確立が、日本の支配層にとって、非戦・非武装をうたった憲法第9条など敗戦国であるがゆえの「戦後の制約」を取り払い、「普通の」（小沢一郎）政治・軍事大国としての地位を確保するため、まさに宿願であったことはいうまでもない。

(1) 周知のように日本は、朝鮮侵略・植民地支配とアジア・太平洋への侵略戦争によって、朝鮮半島およびアジアの人々に甚大な被害を与えた。敗色濃厚となつても、唯一天皇制の延命を目的として、降伏条件を有利にするために戦争は続行された。沖縄戦は、その時間稼ぎのための「捨て石」作戦であった。1945年8月15日の天皇の「終戦の詔勅」とは“ポツダム宣言を受諾するが、皇国の繁栄のためさらに奮闘せよ”というものである。8月17日、いち早く支配固めのため初の皇室首班内閣を成立させたが、その東久邇宮首相の第一声は「一億総ざんげ」であった。それは天皇・軍部・政治家の責任を棚上げし、アジア民衆への謝罪もせず、力及ばず敗戦したことへの「一億国民」のざんげという代物であった。天皇制の延命と、その裏腹の関係にあるアジア侵略への無反省—これが戦後日本の出発点であった。

米軍占領下において、軍部・財閥の解体、農地改革などの一定の改革がなされたとはいえる、天皇制は象徴天皇制として延命し、一部の官僚機構も延命した。象徴天皇制と非武装・非戦、国民主権、基本的人権が混在した現行憲法が、こうしてもたらされた。

戦前から戦後の連続性と断絶性を合わせ持つ、戦後日本の構造はこうして形作られた。

(2) そして、日本の再軍備と経済復興が、朝鮮戦争をテコとして推し進められたことは周知のとおりである。朝鮮戦争で日本全土は米軍の兵站基地となり、出撃する米軍の空白を埋めるため最初の軍組織「警察予備隊」が創設された。また、朝鮮戦争による軍需景気は日本独占資本復興の重大なテコとなった。さらに、本来日本が侵略被害国に支払うべき賠償も、サンフランシスコ講話条約や日韓条約等により大幅に免除され、大半は日本の経済浸透に道を開く「経済援助」にすり替えられた。

こうして日本は、1950年代後半から日米安保体制による米国の核の傘を前提に「高度経済成長」政策を採用し、経済大国路線へ歩を進めた。「欧米に追いつき、追い越せ」、これがこの過程で国民意識として広範に浸透していった。60年の日米安保条約改定は、日米のより双務性を強めるものとなったが、それはこうした状況に対応するものであった。そして、水面下では自衛隊による「有事研究」が開始され、それを公然と実行に移す準備が一貫して進められてきた。63年「三矢作戦研究」はその典型事例である。

さらに65年の日韓条約締結をバネに対韓経済進出を開始した日本は、70年に入ると対外経済進出を本格化させ、80年代半ばには米国の債権国への転落の一方向で、日本は「世界一の債権国」を豪語するに至った。そして90年代に入り東西冷戦崩壊を経て、いまや経済大国から権益防衛のための政治軍事大国の地位を本格的に追求する段階に至ったのである。

(3) その画期となったのは湾岸戦争であり、いわゆる「北朝鮮核疑惑」問題であった。

日本政府は、湾岸戦争に130億ドルもの戦費を支出したが、自衛隊の参戦はまだなし

債務国

えなかった。その後、「国際貢献」を名目として、カンボジアなどへのPKO派兵が強行された。そして「北朝鮮核疑惑」問題をめぐり経済制裁が取りざたされるや、当時の内閣はこれに参戦するため有事時限立法の準備まで整えたのである。このとき米軍は、1900項目の対日軍事協力要求を日本政府に提出している。

今回の新ガイドライン・有事立法は、すでにこの時に原形を整えたのである。

(4) 一方、こうした政治過程の中で日本の戦後平和運動の限界点をどう見るべきか。

かつて日本の平和運動は、数十万人のデモ隊が国会を包囲した60年安保闘争をはじめ、総評・社会党プロックを中心としながら、労働者・民衆はさまざまな抵抗闘争を繰り広げてきた。それは、戦後の東西冷戦体制の一方で深く組み込まれた日本にあって、「戦争に巻き込まれたくない」「戦前型軍国主義への回帰反対」という国民的なコンセンサスを背景として、受動的なものではあったが、憲法改悪と自衛隊の海外派兵を許さない一定の歯止めとして存在してきた。

だが、そこには大きな弱点が存在した。その第一は、もっぱら被害者意識のみから出発して、日本の加害責任を不間に付してきたことである。たとえば韓国などの規模ではないが、65年日韓条約締結反対闘争が日本でも闘われた。だがその内容は、東西対決のもとで米国を中心とした反共包囲網の強化反対が中心であり、一部の先駆的事例を除けば韓国民に対する加害責任を明らかにし、戦後補償を要求する発想もほとんどなかった。過去清算一戦後補償問題等がようやく日本でも重視され始めたのは、周知のように被害当事者の告発がなされた90年以降である。当然追及されるべき日本の戦争・戦後責任は東西冷戦のもので不間に付されてきた。これは運動の側でも同様であり、そのことが日本の民主主義の不徹底さにも投影している。

第二に、海外経済侵略の拡大と大量生産・大量消費による経済大国路線に対して、対抗戦略を欠いていたことである。戦後の日本の統治構造の特徴のひとつは、大企業を中心とした企業への統合社会という点にある。総評を始めとする日本の労働組合の多くも、企業別に組織され、激しい企業間競争につねに巻き込まれる構造を持ってきた。その中で労働貴族の分厚い層が形成され、国労解体とともに総評は解体に追い込まれた。そして、日本の経済大国化が現実のものとなったとき、そうした現状を維持する立場から「経済大国としての国際貢献は不可欠」という、大臣主義的な土俵にはまり込んでいかざるを得なかつた。社会党の安保・自衛隊容認など基本路線の転換の基礎はここにある。

現在、日本ではこれらに変わる新たな対抗的政治勢力をどのように形成するかがさまざまに模索されているのが現状だが、それは日本の軍事大国化に反対するとともに、こうした経済大国路線を否定する経済・社会の構想を不可欠としている。

この間の沖縄民衆の反基地闘争は、米軍基地の大半を沖縄に押しつけながら、「繁栄」に浸ってきた「本土」のあり方を問うものでもあった。

日米の戦略動向と東アジアの平和

(当時)

(1) 新ガイドラインは、96年4月の日米首脳会談で打ち出された日米安保共同宣言に基づいて作成されたものだが、その基礎にはナイ米国防次官補のイニシアチブで作成された「東アジア戦略報告」(95年2月)がある。これは、世界のどこかで同時に二つの大規模

地域紛争が発生しても、同時に対応できる前方展開戦力を維持する(米国防総省「ボトム・アップ・レビュー」)という戦略に沿い、引き続き東アジアに米軍戦力10万人体制を維持するというものである。

このことは、引き続き米国が、世界の「経済成長センター」であるアジア太平洋に深く関与し、APECを通じて域内自由貿易圏を形成し、とりわけ日本経済の影響力の強い東アジアにおいて経済的主導権の再確立をはかる重要なテコとなっている。

これらはソ連崩壊にともない、「中国の脅威」「朝鮮有事」論を新たなシンボルとし、さらに日本の独自の軍事的台頭を押さえ込む「ピンのフタ」として、日本の軍事力をそこに組み込みつつ進められている。このナイのイニシアチブのもとで進められてきた一連の日米安保「再定義」が、日米安保体制の相対化と独自にアジア集団安保体制を形成しようとする、日本の動きへの懸念に端を発していたことは周知の事実である。ナカガワ

日本の戦略は、引き続き軍事的には米国に強調し、新ガイドラインによる役割分担を拡大しながら、政治・軍事大国としての地位を徐々に強め、独自の勢力圏化を追求していると見るべきだ。その際、中長期的には中国への対抗が大きな軸となってくるだろう。

米国の二大地域紛争同時対応戦略において想定されているのは、中東・湾岸と朝鮮半島であり、米軍10万人体制とは、在日米軍5万5千人(日本を母港とする第7艦隊の洋上兵員を含む)、在韓米軍3万7千人の実に日韓に大半が駐留する前方展開態勢である。

とりわけ朝鮮半島に対しては、いつでも軍事的に対応できる態勢を維持しつつ、対北朝鮮関係改善を段階的に進め、北朝鮮を市場化の方向へと軟着陸させ、合わせてこの地域全体への米国の主導権を確立しようというのである。「東アジア戦略報告」では「北朝鮮の脅威が低下した場合でも、強固な米韓安全保障関係がこの地域における米韓相互の安全保障上の利益を守る」と述べ、南北統一後も在韓米軍を維持することを示唆している。

(2) 96年4月に米韓首脳によって打ち出された「4者会談」は、こうした枠組みに北朝鮮を組み込む意図と同時に、中国をも枠組みに組み込む意図が込められている。

米国は、21世紀に向かって、経済力をも兼ね備えたアジアの大國となりつつある中国に対して、現在、「積極関与(エンゲージメント)政策」を取っている。これは、中国に対抗しつつ、米国主導の「アジア新秩序」に中国を取り込もうとする戦略である。日米新ガイドラインによる日米軍事体制の強化に加え、仮に朝鮮半島の南北が米国の主導下に入る場合などを含めて、米国による「包囲網」を警戒する中国は、すでに新ガイドラインに対して日本政府に重大な懸念を繰り返し表明しており、4者会談をめぐっても米国との微妙なかけひきが生まれてくると見るべきだろう。

現在、北朝鮮は4者会談予備会談に出席したが、「恒久的平和協定実現の開始とそのための広範な緊張緩和措置を討議する」という提案主旨が、内実を伴い、北朝鮮側が提案している内容と接点を持ち、それに対する米国の保障が確認されるのかどうかが、北朝鮮側の出方に大きく影響するだろう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

何よりも、休戦協定を平和協定に代え、南北合意書を履行し、7・4南北共同声明で打ち出された自主・平和・民族大团结に基づく南北統一の前提として、平和な環境を朝鮮半島に構築する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といえるだろう。

(3) これに対して日本政府は、軍事大国化を強め、日韓条約を堅持しながら、依然として北朝鮮敵視政策を取り続け、朝鮮半島の緊張激化を煽る役割を果たしている。最近、い

日朝
わゆる「日本人妻」の帰国問題を通じ、**交渉再開が合意された**とはいえ、消極姿勢を固持し続けている。食糧支援に対してもきわめて消極的な態度をとり続けている。

そこには、かつての日朝正常化交渉の過程で明らかになった問題がはらんでいる。
日朝正常化交渉は91年1月から開始されたが、その中で日本政府は「日韓条約との整合性」の確保を至上命題とすることを繰り返し主張してきた。

いうまでもなく日韓条約は、過去の日本の侵略・植民地支配を正当化し、韓国のみとの正常化によって、日本が南北分断に直接関与を開始した条約である。この「日韓条約との整合性」とは、日本が北朝鮮と正常化する場合でも、侵略・植民地支配を正当化し続けることを意味しているのである。

まさに日韓条約見直しと日朝正常化は一対のものであり、問われているのは、今後の日韓関係・日朝関係を日韓条約体制との「整合性」によってではなく、日韓条約に盛られた不当性の是正の上に築くことを通じて、こうして南と北の区別なく朝鮮半島全体との和解と共生を築く方向に日本の進路を転換させる問題なのである。

そして、これこそが朝鮮半島の平和と統一に寄与する日本の道である。

(4) 現在、新ガイドラインに対して、民間軍事協力の対象とされている航空労働者や港湾労働者たちは、軍事協力拒否の立場を打ち出し、抵抗は徐々に拡大しつつある。また反基地運動を繰り広げてきた市民運動の全国的な連携も形成されつつある。そして在日米軍の駐留を支えている「思いやり予算」廃止の闘いも開始されている。

沖縄では、引き続き反戦地主を先頭とした基地撤去の闘いが堅持され、劣化ウラン弾の使用に抗議する闘い、さらに新たな海上基地（ヘリポート）建設に反対する名護市民を中心とした闘いも拡大している。

私たちは、韓国民衆と連帯を強めつつ、日本全国の人々とともに新ガイドライン反対・有事立法阻止の闘いと陣形を拡大し、日米の戦争政策を打ち破るために奮闘する。

同時に日韓条約見直し・日朝正常化の実現のために奮闘する。

アジアの平和のために、ともに連帯を強めよう。

第3部

亞細亞 地域 平和와 進歩를 위한 連帶

▶ 발제자 ◀

김 용 한(전국연합 미군기지대책위원장)

尾澤孝司(한일공동심포지움 일본측실행위원회 사무국)

▶ 토론자 ◀

이동진(전교조 부위원장)

유문종(한청협 부의장)

吉田満智子(단체 連塾)

常岡雅雄(조선문제연구회의 대표)

<3부 발제1>

아시아 지역 평화와 진보를 위한 연대

김용한(문학박사, 전국연합 미군기지대책위원회)

1. 문제 제기-진보적 평화 세력의 국제 연대는 왜 필요한가?

국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진행되는 각국 정부나 재벌 기업 등 지배 세력 간의 국제 연대는 그 뿐만 아니라 상당히 깊다. 특히 요즘에는 세계화, 국제화라는 이름으로 그 범위가 거의 모든 부문으로 확대되어 있다. 무작위로 인명을 살상하는 각종 최신 무기를 팔고 사는 일도 '세일 외교'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그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을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고 있다. 반면에 각기 자기 나라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민간 세력이 국제적으로 연대하기 시작한 역사는 그리 깊지 못하다. 민간인들이 국제 연대를 한다고 해서 '훌륭한 민간 외교'라며 출장비를 주는 나라도 물론 없다. 국제 연대는커녕 국내 연대조차도 그리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비밀 기간이 해제된 문서를 통해 몇십 년 뒤에 드러나는 내용의 보면, 권력자들이나 재벌들 간의 국제 연대는 대부분 그들의 기득권, 즉, 독재 권력이나 제국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들이다. 그러나 진보적 평화 세력 간의 국제 연대는 인권 보호, 생명 존중, 인간 해방, 환경 보호, 전쟁 반대, 핵무기 반대, 강대국 군대의 약소국 침략 반대 등 내용만 봐도 그 차이가 확연하다.

물론 나라마다 그 나라 민중이 처한 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점을 강조하다 보면 민중 간의 국제 연대는 불가능하다. 어느 회사의 노동자들이 각자의 처지가 다르다면 노동조합을 건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라. 설사 노동조합을 건설했다 하더라도 자기 회사 문제만 생각하며 산별 연맹이나 업종별 연맹 등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되겠는가? 대항하여 싸우는 악덕 자본가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강력한 노동조합만이 노동자가 자본가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수단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20세기초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면서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구호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긴 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강대국에 의해 남북이 갈라진 한반도에서는 민간 세력끼리 국제 연대를 이루어 나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지난 전에는

그러나 진보적 평화 세력의 국제 연대는 올초 민주노총 중심으로 진행된 총파업 과정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미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망명한 진보적 인사들에 대한 국제 기구의 각종 연대와 지원이, 한 나라의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데도 엄청난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동안 충분히 확인해 왔다.

보수 기득권 세력은 끊임없이 전쟁 기운을 고조시킴으로써 대를 이어 지배 계층 계급을 형성하고 있어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다. 바로 이런 이들이 움켜 쥐고 놓지 않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세력이 곧 진보적 평화 세력이라면, 국제 연대는 그 투쟁을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가교가 될 것이다.

2. 최근에는 어떤 국제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96년 3월 태국의 방콕에서는 '제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가 열렸다. 여기에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10개국과 유럽연합(EU) 소속 15개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그들은 아시아와 유럽 간의 정치 대화 촉진과 경제 협력 증진, 문화를 비롯한 제반 분야 협력 강화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 협력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새롭고 포괄적인 아시아·유럽 나라들 사이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는 내용의 입장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앞으로 2년마다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결정하고 민간 기업의 무역·투자 증진을 위해 '아시아·유럽비즈니스 포럼'을 설치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 정상회의에 대한 노조쪽의 반응은 비판적이었다. 정상회의는 경제 문제나 대외 정책 등은 강조했지만 사회적 차원을 배제했다는 것이며, 특히 '민중과 민중의 관계'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비판의 근거였다. 그래서 노조쪽에서는 아시아와 유럽의 협력 관계는 경제와 비즈니스의 차원을 뛰어 넘어 '민중과 민중의 관계'에 바탕을 둔 상호 이해와 신뢰의 토대를 구축하는 가운데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올 5월 '아시아·유럽 노조 대화'라는 이름의 아시아와 유럽의 노조 교류를 위한 워커샵을 같은 장소인 태국의 방콕에서 열었다. 독일 사민당 산하 기구인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이 주관한 이 모임의 목적은 아시아와 유럽 노조 운동의 국제 연대 강화 방안 모색에 있었다. 토의의 주요 내용은 두 지역 노조운동의 공동 현안, '사회적 기준' 설정 문제, 노조 지도자 회의 개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 대한 다양한 대응 등이었다. 역사적·정치적·경제적 배경이 서로 달랐기 때문인지, 토의가 진행되면서 두 지역 노조들 사이의 견해 차이는 예상과 달리 매우 커졌다. 그러나 많은 차이를 극복하고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명제에 합의했다.

96년 11월 필리핀 마닐라 근교의 수빅만에서 열린 '에이펙(APEC)'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각국 정상들이 모여 '정상 회의'를 가졌다. 물론 이와 때를 같이 하여 각국의 NGO 대표들도 한 자리에 모여 각국 정부의 정책과 비전을 비판하며 민중의 목소리를 내었다.

특히 미군기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1992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해외 기지 없는 세기를 향하여'라는 부제로 '태평양 민중회의'가 열린 이후, 지난 해부터는 오키나와와 한국 민중의 교환 행사가 10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기도 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한국에서 43명이나 되는 다중의 오키나와 방문단을 구성해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시찰하였는가 하면, 지난 5월과 8월에는 일본에서 각각 10명과 20명의 방문단을 조직해 전국의 미군기지 주변을 돌며 각종 회의와 집회에 참석한 바 있다.

이밖에도 인권, 환경, 외국인 노동자, 정신대 문제 등과 관련하여 국제 연대 행사는 지속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처럼 이제까지 이루어진 국제 교류가 부문별로 이루어져 왔다면, 지난 3월 3.1절 78주년을 맞아 도쿄에서 한일의 양심 세력이 한 자리에 모여 개최했던 '제1차 한일심포지움'은 모든 문제를 총망라한 '종합판'이었다고 하겠다. 오늘 열리는 바로 이 '제2차 한일심포지움'은 이 종합판 국제 연대를 심화하는 계기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3. 무엇이 국제 연대를 가로막는가?

지난 1월 국제자유노련 아태지역기구 이즈미 다카시 사무총장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존 애번스 사무총장 등 국제노동단체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발언하자, 우리나라 법무부는 국제노동단체 지도자 4명에게 자제를 촉구하고, 계속 파업에 관여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위반인 만큼 제재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제 노동단체 대표단은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경고와 관련해 "국제 연대를 표시하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활동은 정당하다"고 밝힘으로써 법무부의 경고를 묵살했다. 국제 연대의 틀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자칫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갔던 것이다.

당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철회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출국금지 조치는 해제하지 않음으로써 이탈리아 집권당 전당대회에 초청받아 로마로 떠날 예정이던 민주노총의 한 간부가 김포공항에서 출국을 저지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전국연합의 이창복 상임의장도 비자를 내주지 않아 미국 방문이 좌절된 바 있다. 이처럼 사법 당국이 자의적이고 부당한 조처 때문에 국제 연대 활동이 가로막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이 정도의 탄압은 탄압도 아니다. 국제 연대 과정에서 간첩으로 체포되는 사람도 너무 많다. 재일동포로서 뿌리를 찾아 고국인 한국으로 유학 왔다가 민주화 시위에 동참했다가 간첩으로 몰리는가 하면, 일본에 다녀 오는 길에 누구에겐가 '공작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간첩이 된다. 대부분의 경우 독재 정권의 조작이지만, 국제 연대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물론이다.

그러나 정부의 탄압 못지 않게 일반 국민의 감정도 국제 연대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일본과의 연대는 특히 더 심한 편이다. 과거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저질렀던 과오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전혀 반성하거나 사죄를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은 물론이다.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은 제국주의 정책을 버리지 않고 군사대국화를 통해 다시 아시아의 군사적 패권마저 장악해 보려는 일본 정부와 양심적인 일본인을 구분할 줄 모른다. 일본 양심 세력의 존재를 쉽게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속된 말로 '때리는 시에미에 말리는 시누이'라든가 '모두 한통속'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일반 국민은 물론 진보적 평화 세력 사이에도 국제 연대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좁은 경우를 접하는 것도 아주 흔한 일이다. 앞에서 예를 든 아시아와 유럽 지역 노조들 사이의 견해도 평행선을 그으면서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아시아와 유럽의 노동 운동이 공통으로 부닥치고 있는 도전과 그것에 대한 대응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었다. 국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자본의 경영합리화 방책, 다국적 기업과 국제기구들의 행동양식에 대한 노조의 대응 방식과 형태는 다를 수밖에 없지만 전략적 목표는 동일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눈 것이다. 또 이런 접근 방식에 따라 두 지역 노조 사이의 구체적인 공동 실천 프로그램을 세우자고 강조했다. 결국 아시아·유럽 노조 교류는 앞으로 더욱 강화해 가면서 주요 활동 계획은 제2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가 열리는 내년 4월 이전에 수립하기로 하고 모임을 마무리했다.

미군기지 관련 국제 연대는 더욱 어려움이 많았다. 한국쪽에서는 '일본에는 미군 기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일본에서 미군이 떠나면 일본은 분명 재무장할 것이고, 또 다시 아시아를 침략할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는 게 사실이다. 반면에 일본 쪽에서는 '남한의 반미주의자들은 모두 주사파로서 김일성주의자들인데, 그들과 연대하면 일본에서 조차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간간이 들려오곤 한다.

그밖에 일본인들의 한국인 무시, 천대, 차별과 같은 고질적인 장애물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일반적인 일본인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와 연대하는 것에 대해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듯하다. 그와는 반대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머슴으로 부리던 미개인'들과 연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일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여러 국제 행사에 미국과 유럽 국가 대표들은 대거 초청을 받지만, 아시아 지역 대표는 겨우 한두 사람만 초청할 뿐이다. 숫자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언론도 '일본 정부는 원폭 투하에 대해 인류 최초의 원폭 피해국임을 강조하기 전에 아시아인들에게 침략에 대해 먼저 사죄해야 한다'는 아시아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저 '핵은 절대 안 된다'는

우 모어 히로시마, 노우 모어 나가사키'만 강조할 뿐이다.

히로시마 평화 박물관에 '농어민 한반도 이주'라는 제목의 사진이 있다. 그 사진 설명은 이렇다. "1910년 (...) 아키군(安藝郡) 사카촌(坂村) 같은 어촌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일본해를 건너 한국으로 갔다. 한국에 정착한 일본인들은 계속해서 낚시를 통해 생계를 꾸려나갔다. 그러자 이번에는 반대로 일본인 이주자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이주해 왔다." 침략을 이주로 표현한 것도 문제이지만,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 한국인이나 재일 조선인들을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해 들어간 사람들로 표현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강제 연행을 정면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 또한 한일 연대에 엄청난 걸림돌임은 물론이다.

4. 어떻게 하면 상설적인 국제 연대 기구를 건설할 수 있을까?

한국과 일본은 물론 아시아 지역의 민중이 공동의 운명을 지니게 되는 경우는 많다. 예를 들어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똑같이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세계 전략 변화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중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일미안보조약에 따른 '신가이드라인'은 아시아의 평화와 직결되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일본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본의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이기 때문이다.

그밖에 필리핀에서 철수한 미군이 한국이나 오키나와로 옮긴다든가, 오키나와나 이와쿠니에서 미군 폭격 훈련기가 한국의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에 있는 미공군 사격장에 와서 폭격 훈련을 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최근에는 오키나와에 배치했다가 호된 저항을 받은 열화우라늄탄을 모조리 한국으로 이동 배치하기까지 했다.

때로는 한일 두 나라의 정상이나, 외무부 장관, 국방 장관 등이 여러 형태로 회담을 갖는다. 곁으로는 그럴 듯하게 포장하여 발표하지만, 내막을 자세히 뜯어 보면 지배 세력 간의 정권 연장 야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의 총리를 비롯한 여러 각료들이 앞다퉈 공개적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일도 벌어졌으며, 2002년 공동 개최하게 될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사죄하지 않은 전범자인 일본 천황의 방한이 추진될 가능성도 높다.

오키나와나 이와쿠니 등지의 미군기지가 한국으로 이전 배치될 가능성도 있다.

한일은 물론 아시아 민중들의 생명과 평화에 직결되는 문제들이 앞으로도 양국 지배 세력 간에 밀실에서나 공개적으로 꾸준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 때마다 우리는 사사건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일 평화 세력 간에 공동 성명도 발표하고, 해당 대사관이나 정부 종합청사에 항의 방문단을 파견하기도 해야 한다. 그 때마다 조직을 새로 꾸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 때마다 공동 성명 문안을 놓고 국제적으로 합의하려면 번역하고 글짜를 고치느라 시기를 놓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연대에 많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시아의 진보와 평화를 위해 상설적인 연대 기구를 건설하자고 제안한다. 처음에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만 교환하는 아주 소극적인 교류라도 좋다. 물론 상호 방문을 하며 가지는 적극적인 교류도 좋다. 국제 연대의 방식과 관계 없이 우리는 '종합판' 국제 연대 기구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가능한 분야를 모두 포함시키는 능력은 각국의 진보와 평화 운동 역량을 총집결하고 확산하는 전국연합과 일본 실행위의 능력일 것이다. 한일 두 나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 지역으로 기구를 확대하는 것도 역시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다.

우선 한일 두 나라에 공동의 사무실을 각각 두고 공동 대표제로 운영하되 가벼운 네트워크 형태를 뛰어넘어 양국의 상근 실무 대표 한 명씩 1년 정도씩 교환 근무하게 하면 어떨까? 그들이 연락과 접행, 자

료 수집, 자료집 발간, 영상물 제작 등의 실무 책임을 맡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이와 관련한 모든 실무적인 문제는 이번 서울 심포지움 기간에 논의하여 결정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제3차 한일 심포지움' 때는 각국 운동 단체의 활동 내용과 특성 등을 한데 모은 '진보와 평화를 위한 국제 운동 단체 편람' 등을 발간할 수도 있고, 그 동안의 공동 성명서를 모아 책자로 발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 동안의 연대 과정과 성과를 영상물로 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제적으로도 가장 우뚝 서는 '국제 평화 기구'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글쎄, 너무 빠른지 모르겠지만,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구의 명칭마저 제안하자면 "국제 평화(國際平和)"로 하고, 영어로는 "Peace International"로 하면 어떨까?

<3부 발제2>

한반도의 평화와 일한 민중연대운동

尾澤孝司(한일공동심포지움 일본측실행위원회 사무국)

10월 21일은 미국의 베트남 북쪽에 대하여 세계 각지에서 일제히 항의한 날이다. 베트남 민중은 미국의 침략에 맞서 싸워, 남북을 통일하고 독립을 달성하였다. 일본에서도 광범위한 사람들이 운동에 참가하여 활발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그후 30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가 일본에서, 아시아에서, 세계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한 민중연대운동의 관점에서 한반도의 평화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일한연대운동의 중요성

(1) 과거청산의 관점에서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지배하고, 수많은 조선민중을 침략전쟁으로 내몰아, 그 결과 한반도의 민중에게 필설로 다할 수 없는 대대한 피해를 주었다. 그뿐 아니라 전후에는 냉전체제의 와중에서 전쟁책임도 추궁받지 않은 채 이들 피해자들에게 배상도 하지 않고 방치해왔다. 식민지지배와 전쟁에 의해 야기된 군대 위안부, 강제연행, 징용, 징병, BC급전범, 재일 상이군인, 군속, 재한괴폭자, 혹은 폭행, 강간, 집단학살 등 여러 유형의 전쟁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진상조사, 사죄, 배상 등을 요구하여 일본정부와 기업은 재판에 기소되었다. 이것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이 침략한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 걸친 문제이다. 이러한 잔학한 일을 국민전체가 행해 온 근저에는 조선과 아시아를 멸시하는 사상이 있다. 아시아에 대한 멸시 중에서도 조선반도에 대한 멸시는 역사적으로 더욱 뿌리가 깊다.

따라서 한반도 민중에 대한 전쟁책임, 전후책임을 명확히하고 전후보상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역사적 책임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이라는 측면에서 지극히 중요하며, 아시아 전역에 걸쳐 있는 전후 보상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커다란 돌파구가 될 것이다. 또한 조선을 멸시하는 사상을 갖고 있는 일본인의 역사인식을 바꾸는 일도 중요하다.

(2)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 통일의 관점에서

아시아의 평화문제는 한반도의 평화문제를 빼놓고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 한반도의 통일은 아시아의 평화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요소이다. 이미 신방위지침은 지금까지의 과정으로 보아 한반도의 유사시를 상정한 것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일본이 이 지역에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한반도 유사시를 구실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미군의 후방지원이라는 이름아래 한반도에 자위대 출동을 가능하게 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는데 있다. 아시아의 평화를 생각한다면 일본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정책

전환을 모색하고, 한반도와 그 주변에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반도의 힘의 균형이 아닌 평화로운 환경의 창출은 통일을 촉진시키기도 할 것이다. 한반도의 긴장완화, 평화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일본과 오키나와에서 미군기지를 없애고, 일미 안보체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이 북한적대정책을 중지하고 먼저 긴급한 대책으로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민중에게 인도적인 원조를 하고, 북한을 국가로서 승인, 국교를 맺는 것도 평화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평화환경은 응당히 통일을 촉진하는 것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러한 때에 '일본군의 재침략이다', '제2의 한국전쟁이다'라고 방위지침 개정을 비판하며, 평화와 통일을 요구하는 한국민중의 목소리를 일본에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3) 재일한국인, 조선인에 대한 민족적 차별문제의 해결의 관점에서

지금 일본에서는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이 100만을 넘어, 많은 사람들이 국제화를 외치고 있다. 등록된 외국인 가운데 그 반 이상은 전전(戰前)에 강제연행등에 의해 일본에 끌려온 재일 한국인, 조선인과 그 자손들이다. 일본 정부는 아직도 재일 한국인, 조선인을 치안대상으로 보고 있고, 외국인 등록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증의 상시휴대 의무를 부과하는 등 민족적 차별을 가하고 있다. 그들에 대한 일본사회의 대응의 근거에는 민족적 차별의식이 있는 까닭에, 취업, 주거, 교육, 융자를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면에서 차별대우가 나타나고 있으며, 한반도의 정치적 긴장이 높아지면 조선학교 여학생에 대한 폭행사건과 같은 민족차별사건이 발생한다. 70년대 한국으로 유학을 간 많은 재일한국인 학생이나 청년이 정치범으로 구속되었다. 그들이 유학을 간 배경은 일본정부의 차별동화정책에 있으며, 민족차별에 의해 빼앗긴 언어와 문화, 민족성을 되찾으려고 한국으로 유학을 간 것이다. 그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했지만 문제는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또한 이 문제는 교토(京都)에 있는 우토로 지역주민의 거주권 문제와 같이 전후보상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일본민중의 역사인식을 변화시키는 점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2. 일한 민중연대운동의 개관

(1) 정치범 구원운동

일본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일한 민중연대운동이 시작된 것은 정치범구원운동에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많은 재일한국인이 정치범으로 희생당했다. 재일한국인 정치범의 구원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71년 4월 서승, 서준식형제의 구원운동에서였다. 서형제의 사상에 공감하여 운동이 확산되었다. 또한 시인 김지하씨(74년 4월)의 구원운동도 큰 계기가 되었다. 정치범 구원운동이 대중적으로 전개되게 된 것은 '재일한국인정치범가족협의회'(75년 5월)가 결성되어 영화 '고발' 상영운동을 통해서였다. 이 운동에는 노동조합도 참여하여 일본 전역에 걸쳐 약 300여 곳에서 6만여명이 상영회에 참가하는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구원운동의 발전과정에서 일본 전역의 개별 구원회가 참가하여 '재일한국인 정치범'을 지원하는 모임들의 전국회의(76년 6월)가 결성되었다. 운동의 확대과정에서 정치범 가족과 재일한국인 민주세력이 연대하여 '재일한국인 정치범'을 구원하는 가족, 교포모임(77년 6월)도 결성되었다. 또한 간사이(關西)지방을 중심으로 '11.22 재일한국인 유학생, 청년 부당체포자를 구원하는 모임'(75년)도 결성되었다. 70년대의 과제는 6명의 사형확정자의 집행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70년대 구원운동의 큰 특징은 정치범 본인이 가혹한 탄압에 항의하여 일어났으며, 민주화와 통일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구하는 자세를 분명히 한 점이다. 또한 그와 함께 가족도 그에 호응하여 그때까지의 구명탄원운동으로부터 무죄석방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운동으로 전환하고, 민주화운동과의 밀접한 결합 속에서 진행되었다.

80년대의 전두환, 노태우 정권시절에도 정치범이 잇따라 생겨나는 상황은 변함이 없었다. 간사이(關西) 지방에서는 '간사이 한국정치범구원센터'(84년 7월)가 결성되었다. 전두환정권시절에는 사형확정자의 감형을 획득하였다. 노태우정권시절 민주화운동의 커다란 발전을 배경으로 70년대 사형확정자의 석방을 쟁취하였다. 90년대 들어와 김영삼정권이 탄생하여 최초의 문민대통령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군사정권시절과 변함이 없었다. 한국의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여 '간사이 한국정치범구원연락회의', '한국인권기금국제센터'(93년 7월)가 결성되었다. 김영삼정권하에서 재일 및 일본관련 정치범 조작사건이 4건 일어났다. 70년대부터 계산해보면 백수십명에 달하는 재일한국인 정치범의 석방을 실현하여 현재 일본과 관련된 정치범의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으나 구원운동은 계속 전개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재일한국인 정치범의 석방에 대해 '내정간섭'론을 들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보이고 않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다분히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역할을 해왔다. 자의적 적용과 고문수사 등은 물론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유엔 인권위원회나 고문방지위원회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는 아시아의 공통되는 과제이기도 하며, 보편적인 인권과제로 인식해야 하는 문제이다.

(2) 민주화, 통일운동지원

민주화지원운동이 일한 연대운동으로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73년 8월 김대중씨 납치사건부터였다. 사건에 충격을 받은 당시 사회당과 총평을 비롯하여, 수많은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가 재일민주화운동 세력과 연대하여 구출운동에 나섰다.

김대중씨 납치사건을 계기로 운동의 질이 크게 달라졌다. 그때까지의 운동은 한국민중의 입장이나 처지는 전려 고려되지 않았다. 65년 일한조약반대투쟁은 '보쿠(朴-한국인을 지칭함)에게 주려면 보쿠(僕-본인, 일본인을 지칭함)에게 주오'(번역자주 : 한국에 대한 배상을 비꼬는 말로써 한국에 주는 것보다 일본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라는 경제협력지원에 반대하는 슬로건에서 볼 수 있듯이 자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싸움이었으며, 한국민중과의 연대를 목표로 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일한조약과 동시에 맺어진 어업협정에서도 한국 어민측의 입장에 서서 반대하는 운동은 없었다.

김대중씨 납치사건 이후 '일한연대연락회의', '일한민중연대수도권연락회의',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여 민주화투쟁에 연대하는 오사카(大阪)부민공투회의', '일한민중연대간담회' 등이 결성되어, 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지원, 제2차 김대중씨 구출운동, 전두환 방일반대(84년), 87년 6월 민중항쟁지원, 노태우 방일반대(90년)나 팀스피리트 훈련반대 등을 주제로 일한연대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에는 한국 국내에서 통일운동이 고조되는데 대응해서, 그리고 92년에는 전국연합 대표단을 처음으로 초청, 통일문제와 전쟁, 전후책임을 결합한 집회(92년 9월 19일)를 개최하였다. 또한 일청 전쟁(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95년에는 일본 근대 100년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반도 민중과의 연대를 생각하는 집회를 한국관계자를 초청하여 개최하였다. 최근에는 한국,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철거투쟁에 연대하는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3) 노동자지원, 연대운동

73년 김대중씨 구출운동 이후 민주화 지원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나 민중의 실태와 그 투쟁이 서서히 전해지게 되었다. 전태일씨의 분신항의 사태가 전해져 큰 충격을 주었으며, 노동자지원의 출

발점이 되었다. 78년 전태일씨와 그 어머니인 이소선씨의 활동을 그린 영화 '어머니-분노는 탄다'가 제작되어 노동자지원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후 YH무역 여성노동자의 투쟁, 동일방적, 방립방적, 콘트롤티타, 원풍방적 등의 노동자 지원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속하였다. 그리고 87년 노동자대투쟁 지원을 거쳐, 89년부터 90년에 걸쳐 일본계 기업인 한국 수미다, TND, 아시아수와니의 해고 철회투쟁이 전개되었으며, 최근 민주노총 지원활동, 금년의 노동법과 안기부법 개악철회 총파업 지원활동을 전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일한민중연대운동의 과제와 전망

(1) 한반도의 평화와 당면과제

지난 달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4자회담의 예비회담이 열렸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한미간에 올해만도 22번이나 합동훈련이 되풀이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은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4자회담의 성격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현재의 제조건 하에서 4자회담에 큰 기대를 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본은 일북 간 관계개선을 남북관계 개선에 연계시키는 것을 한국에 약속하여, 4자회담 출석을 식량지원 조건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북한 거주 일본인 처의 일본 귀향'문제나 '일본인소녀납치의혹'문제를 꺼내 국교교섭의 장벽을 스스로 높이고, 긴장완화에 역행하고 있다.

일미한이 인도적 입장에서 조건없이 대규모 식량원조를 하고, 또한 94년의 제네바합의를 신속히 이행하는 등 긴장완화의 분위기 속에서 4자회담이 열리지 않는 한 결실을 맺을 수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부간 회담에 기대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곤란이 조성된 시기에 민중차원의 연대를 강화하여, 각각의 정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정부간의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민중차원에서의 연대운동을 어떻게 심화, 발전시킬 것인가이다.

현재 일한연대운동은 다양한 부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 운동과도 연계하면서 역사적 경과에 입각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분위기를 촉성하기 위한 일한민중연대운동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억압민족과 피억압민족의 입장의 구별이다. 그리고 당면해서 ① 일미 신방위지침의 개정과 일본의 유사시입법화에 반대하는 것, ② 한국, 오키나와,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를 철거하는 것을 과제로 하여 일한민중이 연대한 공동투쟁을 강화해 가는 것이다.

(2) 재일한국인민주화세력과 일본의 일한연대운동

일본에서의 일한연대운동은 먼저, 일본내 재일한국인 민주화세력과 연대하는 일에서 시작되었다. 재일한국인 민주화세력을 통해서 한국민중의 투쟁을 알게 되었다. 한국 국내에서 엄혹한 탄압이 벌어지고 있던 70년대에 일한연대운동에 있어서 김대중씨 구원운동을 비롯하여 재일한국인 민주화세력이 맡아온 역할은 지대하다. 우리는 재일한국인 민주화세력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앞으로도 재일한국인 민주화세력과 연대하면서 한국의 민주화, 통일운동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지금 일본은 유사시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가지야마(梶山) 전 관방장관의 발언에서 보이듯이 앞으로 재일한국인, 조선인을 둘러싼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일한국인, 조선인의 인권을 지키지 않고서 한국의 민주화, 통일운동과 연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현재 국가보안법 때문에 재일한국인 민주화세력은 한국과 자유롭게 왕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의 일한연대운동이 재일민주화세력과 한국의 민주화, 통일운동을 연결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국가보안법은

재일한국인 민주화운동세력의 자유왕래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 통일운동의 발전도 저해하는 최대의 장애물이다.

(3) '일한미래지향'론과 '한국은 이미 민주화되었다'론

84년 전두환대통령이 방일했을 때부터 일본의 식민지지배와 그 잔재를 불문에 부치고 앞으로 일한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하자고 하는 경향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한편, 93년 김영삼정권이 탄생한 이후에는 87년 민중항쟁 이후 한국은 이미 기본적으로 민주화되었다는 주장이 나타났다. 일본의 대부분의 언론은 이와같이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운동세력 중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 결과 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 두가지 주장의 뿌리는 하나이다. 즉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전후보상문제가 아직 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등 과거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본의 현실과 또한 국가보안법이 아직 맹위를 멀치고, 본질적인 민주화가 달성되어 있지 않는 한국의 현실을 보지 못하거나,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은 일한조약을 기본으로한 현재의 일한관계를 긍정하는 위험한 경향이다.

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일본 지배세력과 언론은 의례적으로 일한친선을 부추겼다. 경제적으로 발전한 한국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늘어났지만 진정한 일한 민중연대로는 연결되지 않고 있다. 2002년에는 일한 공동주최로 월드컵대회가 진행된다. 지배세력은 또다시 연출된 우호친선으로 일한 간의 협안이 되고 있는 군대 위안부문제 등의 과거청산문제를 의도적으로 은폐시키려 하고 있다. 다시한번 천황의 방한이 예상된다. 식민지지배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천황의 방한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일본은 한반도의 분단에 책임이 있으면서도 전후 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고 미국과 공동으로 북한적대정책에 기초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권에 기초하여 조선인의 민족적, 민주적 권리 여전히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 즉 일본은 1875년 운양일한국인, 조선인의 민족적, 민주적 권리 여전히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 즉 일본은 1875년 운양호사건을 시작으로 한반도에 본격적 침략을 개시한 이래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다. 100년전 문제를 그대로 현재에도 남아 있는 것이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100년전의 문제를 일본인 스스로가 해결하여 일본과 한반도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도 지극히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민중에게는 일한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朝鮮半島の平和と日韓民衆連帯運動

尾澤 孝司

10月21日はアメリカのベトナム北爆に対して世界の人々が一齊に抗議した日だ。ベトナム人民はアメリカの侵略を跳ね返し、南北を統一し独立を達成した。日本でも広範な人々が運動に参加し激しい闘いが展開された。あれから30年。朝鮮半島の平和と統一の問題が日本で、アジアで、世界で大きな問題となっている。こうした時に日韓民衆連帯運動の問題を検討する事を通して朝鮮半島の平和の問題を考えてみたい。

1. 日韓連帯運動の重要性

(1) 過去清算の観点から

日本は朝鮮半島を植民地支配し、その上に侵略戦争へ多くの朝鮮民衆を狩り出し、その結果、朝鮮半島の民衆に筆舌に表しがたい多大な被害を与えた。そればかりではなく戦後は、冷戦体制の中で戦争責任を問われること無く、これらの被害者に賠償をせずに放置してきた。このような植民地支配と戦争によって引き起こされた軍隊慰安婦、強制連行、徴用・徴兵、BC級戦犯、在日の傷痍軍人・軍属、在韓被爆者、あるいはまた暴行、強姦、集団虐殺などさまざまな戦争被害者とその遺族から、真相調査、謝罪、賠償などを求められ、日本政府と企業は裁判に訴えられている。これは朝鮮半島だけの問題でなく日本が侵略したアジア太平洋全域に広がっている。このような残酷なことを国民全体で行ってきたその根底には朝鮮蔑視、アジア蔑視の思想がある。アジアに対する蔑視の中でも朝鮮半島にたいする蔑視は歴史的な経過がある故により根深いものがある。

こうした中で、朝鮮半島民衆への戦争責任、戦後責任を明らかにし戦後補償の問題を解決することは、日本の朝鮮半島に対する歴史的責任の重大さ、与えた被害の甚大さからいっても極めて重要であり、アジア全体に広がっている戦後補償問題を解決する大きな突破口にもなる。また朝鮮蔑視の思想を含む日本人の歴史認識を変えることは重要なことだ。

(2) 東北アジアの平和と朝鮮半島統一の観点から

アジアの平和を考える場合、まず朝鮮半島の平和の問題を抜きには考えることは出来ない。朝鮮半島の統一是アジアの平和にとって非常に大きな要素である。日米新ガイドラインは、これまでの経過からいって朝鮮半島有事を想定したものであることは明らかである。問題は日本がこの地域での権益を守るために、朝鮮半島有事を口実に、軍事力を増強し、米軍の後方支援と称して朝鮮半島への自衛隊の出動を可能にしようするなど、朝鮮半島の緊張を高めていることにある。アジアの平和を考えるならば、まず日本が、朝鮮半島の緊

張を緩和するように政策の転換を図って、朝鮮半島を巡る平和な環境を作っていくしかなければならない。朝鮮半島の力の均衡でない平和な環境の創出は、統一を促進させるものとなるであろう。朝鮮半島の緊張緩和、平和な環境づくりには、まず、日本の軍事大国化を止めるることであり、日本と沖縄から米軍基地をなくし、日米安保体制をなくすことである。また、日本が、北朝鮮敵視政策を止めて、まず緊急の対策として食糧難に苦しむ北朝鮮の人道的な援助を送り、国家として承認し国交を結ぶことは、平和な環境づくりに寄与することになる。平和な環境は統一を促進することにつながっていくのではないだろうか。このような時に「日本軍の再侵略だ」「第二の朝鮮戦争だ」とガイドラインの改定を批判し平和と統一を求める韓国民衆の声を日本に伝えることは極めて重要だ。

(3) 在日韓国人・朝鮮人への民族的差別問題の解決の観点から

今、日本では外国人登録をした人が100万人を越え、国際化が呼ばれている。登録された外国人の内その半数以上は、戦前、強制連行などで日本に来た在日韓国人・朝鮮人とその子孫たちである。日本政府は、いまだに在日韓国人・朝鮮人を治安の対象として見ており、外登法による外登証の常時携帯義務を課し、民族差別の取り扱いをしている。彼らに対する日本社会の対応は、根底には民族的差別意識がある故に、就職、住居、教育、融資を始め政治、経済、社会のあらゆる面で差別的対応として現れ、朝鮮半島の政治的緊張が高まれば朝鮮学校女子生徒への暴行事件のような民族差別事件として現れてくる。70年代、韓国へ留学した多くの在日韓国人的学生や青年が政治犯として拘束された。彼らが留学していった背景には日本政府の差別同化政策があり、民族差別によって奪われた言葉や文化、民族性を取り戻そうとして韓国へ留学していったのである。それから20年以上たつが問題は根本的には何ら変わっていない。またこの問題は京都・ウトロ住民の居住権のように戦後補償の問題とも関連する問題である。この問題は、日本民衆の歴史認識を変えていく点からも重要な問題である。

2. 日韓民衆連帯運動の概観

(1) 政治犯救援運動

日本において本格的に日韓民衆連帯運動が始まったのは、政治犯救援運動から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朴正熙政権時代、多くの在日韓国人が政治犯として犠牲になった。在日韓国人政治犯の救援運動が本格的に始まったのは、71年4月の徐勝・徐俊植兄弟の救援運動からであった。徐兄弟の思想に共鳴して運動が広がった。また詩人金芝河氏（74年

4月）の救援運動も一つの大きなきっかけであった。政治犯救援運動が大衆的に取り組まれるようになったのは、『在日韓国人政治犯家族協議会』（75年5月）が結成され、映画『告発』上映運動を通してである。この運動には労働組合も参加し、日本全国300カ所6万人が上映会に参加し運動が一挙に拡大した。このような救援運動の発展の中で日本全国の個別救援会が参加し、『在日韓国人「政治犯」を支援する会全国会議』（76年6月）が結成された。更に運動の拡大の中で政治犯家族と在日韓国人民主勢力が連帯して、『在日韓国人「政治犯」を救援する家族・僑胞の会』（77年6月）が結成された。また関西を中心に『11・22在日韓国人留学生・青年不当逮捕者を救援する会』（75年）が結成された。70年代の課題は6名死刑確定者の死刑阻止であった。

70年代の救援運動の大きな特徴は政治犯本人が過酷な弾圧に抗して立ち上がりはつきりと民主化、統一を求める姿勢を明らかにしたことだ。また、それとともに家族もそれに答えてそれまでの助命嘆願運動から、堂々と無罪釈放を要求する運動に大きく転換し、救援運動は民主化運動と結合して取り組まれた。

80年代の全斗煥、盧泰愚政権時代も政治犯が次々と生み出されるという状況は変わらなかった。関西では『関西韓国政治犯救援センター』（84年7月）が結成された。全斗煥政権時代には、死刑確定者の減刑の獲得を獲得した。盧泰愚政権時代、民主化運動の大発展の中で、70年代の死刑確定者の釈放を勝ち取った。90年代に入り金泳三政権が誕生し、初の文民大統領と期待する一面もあったが、基本的には軍事政権時代と変わらなかった。韓国の新たな状況に対応して、『関西韓国政治犯救援連絡会議』、『韓国人権基金国際センター』（93年7月）が結成された。金泳三政権下で在日及び日本関連政治犯でっち上げ事件が4件起きている。70年代から数えれば百数十名の在日韓国人政治犯の釈放を実現し、現在日本に関連する政治犯の数が少なくなったとはいえ粘り強く救援運動が取り組まれている。

日本政府は、在日韓国人政治犯の釈放について「内政干渉」論になるからとして積極的な取り組みの姿勢を見せていない。しかし国家保安法は、表現の自由、言論の自由など基本的人権を侵害し、少なからず政権保持の道具の役割を果たしてきた。恣意的適用や拷問検査などと共に基本的人権を侵害する国家保安法に対しては、国連人権委員会や拷問防止委員会でもその改正が勧告されている。国家保安法による人権侵害はアジア共通の課題もあり、普遍的な人権課題として解決すべき問題である。

(2) 民主化・統一運動支援

民主化支援運動が日韓連帯運動として本格的に始まったのは73年8月の金大中氏拉致事件からであった。事件の衝撃を受けた当時の社会党、総評を始め多くの労働組合や市民団体が、在日民主化運動勢力と連帯して救出運動に立ち上がった。

金大中氏拉致事件を境に運動の質が大きく変わった。それまでの運動は韓国の民衆の姿は全く見えていなかった。65年の日韓条約反対闘争では、「ボク（朴）にやるならボク（僕）にくれ」という経済協力金に反対するスローガンに示されるように自国民の利益を守る闘いであって、韓国民衆との連帯をめざす運動とはいえない。日韓条約と同時に結ばれた漁業協定では韓国の漁民の側に立って反対する運動は無かった。

金大中氏拉致事件以降、「日韓連帯連絡会議」「日韓民衆連帯首都圏連絡会議」「朝鮮の
自主的平和統一を支持し韓国の民主化闘争に連帯する大阪府民共闘会議」「日韓民衆連帯
懇談会」などが結成され、80年5月光州民衆抗争支援、第二次金大中氏救出運動、全斗
煥来日反対（84年）、87年6月民衆抗争支援、盧泰愚来日反対（90年）やチームス
ピリット演習反対などをテーマに活発に運動を展開してきた。また87年の6月民衆抗争
以降、韓国国内での統一運動の高まりに対応して、92年には全国連合代表団を初めて招
き統一問題と戦争・戦後責任を結合した集会（92年9月19日）を開いた。また、日清
戦争（甲午農民戦争）100年に当たる95年には日本の近代100年を問い合わせ朝鮮半島民
衆との連帯を考える集会を韓国ゲストを招いて開いた。最近では韓国、沖縄の米軍基地撤
去の闘いに連帯する運動にも取り組んでいる。

(3) 労働者支援・連帶運動

73年の金大中氏救出運動以降の民主化支援運動に取り組む中から、労働者や民衆の実態とその闘いが徐々に伝わってくるようになった。全泰壱氏の焼身抗議の事態が伝えられ大きな衝撃を与え、労働者支援の出発点になった。78年に全泰壱氏とオモニの李小仙氏の活動を描いた映画『オモニ——怒りは燃える』が制作され労働者支援の輪が全国に広がった。以降、YH貿易女子労働者の闘い、東一紡績、邦林紡績、コントロール・データー、元豊紡績などの労働者の支援を厳しい状況の中で続けてきた。そして87年労働者大闘争の支援をへて、89年から90年にかけて日系企業の韓国スミダ、TND、アジアスワニーの解雇撤回闘争が取り組まれた。そしてさらに民主労総支援の取り組み、今年の労働法・安企部法改悪撤回ゼネスト支援に取り組み現在に至っている。

3. 日韓民衆連帯運動の課題と展望

(1) 朝鮮半島の平和と当面の課題

先月朝鮮半島の平和体制を構築するための4者会談の予備会談が行われたが、一方で米韓は今年に入り22回も米韓合同演習を繰り返し、朝鮮半島の緊張を高めている。これは4者会談の性格を示す一端だ。現在の諸条件の下では4者会談に大きな期待を持つことはできない。日本は、日朝関係改善を南北関係にリンクさせることを韓国に約束し、4者会談の出席を食糧支援の条件に出すと共に、「日本人妻里帰り」問題や「日本人少女拉致疑惑」問題を持ち出して国交交渉のハードルを自ら高くして、緊張緩和に逆行している。日米韓が無条件に人道的立場から大規模な食糧援助を行い、また94年のジュネーブ合意の速やかな実施を行うなど、緊張緩和の雰囲気の中で4者会談が開かれない限り実りはないだろう。大切なことはこのような政府間の会談に大きな期待を寄せることではなく、このような困難な時期に、民衆レベルの連帯を深め、それぞれの政府への働きかけを強めて、それを通して政府間の正しい関係を作っていくことだ。最も重要な事は民衆次元での連帯運動をいかに深く広く作っていくかだ。

現在、日韓連帯運動は、さまざまな部門、分野で活発に行われ、ネットワークが作られている。これらの運動ともリンクしながら、歴史的経過を踏まえて、朝鮮半島の平和と統一の雰囲気を醸成するための日韓民衆連帯運動を作つて行かなければならぬ。その際重要なのは抑圧民族と被抑圧民族の立場の区別である。

そして当面、①日米新ガイドラインの改定と日本の有事立法化に反対すること、②韓国、沖縄、日本の米軍基地を撤去することを課題として日韓民衆の連帯した共同闘争を強めていこう。

(2) 在日韓国人民民主化勢力と日本の日韓連帯運動

日本における日韓連帯運動は、まず日本の在日韓国人民主化勢力と連帯する事から始まった。在日韓国人民主化勢力を通して韓国民衆の鬱いを知った。韓国国内の厳しい弾圧が行われている70年代、日韓連帯運動においては、金大中氏救援運動を始め、在日韓国人民主化勢力の果たしてきた役割は大きい。我々は在日韓国人民主化勢力から多くの事を学んできた。今後も在日韓国人民主化勢力と連帯しながら韓国の民主化統一運動との連帯を強めていきたい。今、日本は有事立法化を進めているが、梶山前官房長官の発言に示されるように、今後、在日韓国人・朝鮮人をとりまく状況はより厳しい状況が予想される。こうした時に在日韓国人・朝鮮人の人権を守らないで韓国の民主化・統一運動との連帯は出来ない。また、現在国家保安法のために在日韓国人民主化勢力は韓国との自由な往来が出

일본 한일공동심포지움 실행위원회

来ない。このような状況のなかで、日本の日韓連帯運動が在日民主化勢力と韓国の民主化統一運動を結ぶ助けに少しでもなればよいと考える。国家保安法は、在日韓国人民主化運動の自由往来権を侵害しているだけではない。民主化・統一運動の発展を阻害する最大動勢力の障害である。

(3) 「日韓未来志向」論と「韓国はもう民主化された」論

84年の全斗煥大統領の来日の時から、日本の植民地支配とその残滓を不間にしてこれからの日韓関係は「未来志向で」築こうとする傾向が強まっている。一方、93年の金泳三政権の誕生以来は、87年の民衆抗争以降、韓国はもう基本的に民主化されたという主張がある。日本のほとんどのマスコミはこの認識である。また日本の運動勢力の中にもこうした主張の人がいる。その結果、韓国の民主化・統一運動への関心が薄れたり、他の課題へ関心を転じて日韓連帯運動から離れる傾向がある。この2つの主張の根は一つである。つまり慰安婦問題を始めとする戦後補償問題が何も解決されてないなど過去清算が行われていないという日本の現実と、また国家保安法がいまだ猛威をふるい本質的な民主化が達成されていないという韓国の現実を見ない見たくないという問題だ。これは現在の日韓条約を基本とする現状の日韓関係を肯定する危険な傾向だ。

88年のソウルオリンピックの時、日本の支配勢力とマスコミは上辺だけの日韓親善を煽った。経済発展した韓国に関心を持つ人は増えたが、眞の日韓民衆連帯にはつながらなかった。2002年には日韓共催でワールドカップ大会が行われる。支配勢力は再び、演じた。支離滅裂の日韓間で懸案となっている軍隊慰安婦問題などの過去清算問題を覆出された友好親善で、日韓間で懸案となっている軍隊慰安婦問題などを正当化する隠そうとしている。更に天皇の訪韓が予想される。植民地支配と侵略戦争を正当化する天皇の訪韓を許してはならない。

日本は、朝鮮半島の分断に責任がありながら、戦後補償もきちんと行わず、米国と共に北朝鮮敵視政策のもと、東北アジアの平和を脅かし朝鮮半島の自主的平和統一を妨げている。そして、在日韓国人・朝鮮人の民族的民主的権利は依然として充分に保障されてない。つまり日本は、1875年の雲揚号事件によって朝鮮半島へ本格的侵略を開始し以来、基本的に変わっていない。100年前の問題がそのまま現在も残っているということだ。いまだに解決出来ていない100年前の問題を日本人自身が自ら解決し、日本と朝鮮半島との関係を変えることが朝鮮半島の平和にとって極めて重要である。こうした点から、日本の民衆には、第一義的に、この日韓間の問題を解決する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

日本側 訪韓 代表団

- ・吉松 繁 (요시마쓰 시게루, 64세, 王子北교회 목사)
- ・前野 良 (마에노 リョウ, 84세, 정치학자)
- ・常岡雅雄 (쓰네오가 마사오, 57세, 현대연구소 연구원)
- ・吉田満智子 (요시다 마치코, 50세, 단체 連塾)
- ・峯一也 (미네 가즈야, 39세, 아시아공동행동일본연락회의 전국사무국)
- ・北川廣和 (기타가와 히로가즈, 44세, 월간 '일한분석' 편집)
- ・渡邊健樹 (와타나베 겐주, 45세, 일한민중연대간담회 사무국장)
- ・新美 隆 (니이미 다카시, 40세, 변호사)
- ・伊藤 晃 (이토우 아키라, 56세, 지바공업대학 교수, 현대사)
- ・久保清隆 (구보 기요타카, 46세, 재일한국인 '정치범'을 지원하는 북구시민모임)
- ・杉浦まこと (스기우라 마코토, 25세, 한국노동자지원 연락회의)
- ・石井 寛 (이시이 히로시, 48세, 재일한국인 '정치범'을 지원하는 회 전국회의 사무국)
- ・太田武二 (오오타 타케시, 48세, 생명존중네트워크 대표)
- ・尾澤孝司 (오자와 다카시, 49세, 한일공동심포지움 일본측 실행위원회 사무국)

個 人

吉松 繁(목사), 前野 良(정치학자, 원수금 고문, 전 長野대학교수), 北川廣和(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월간 일한분석 편집), 山崎道人(전국노동조합협의회 회장), 大島孝一(아시아태평양 전쟁희생자를 생각하는 집회 실행위원장), 德鷹 守(일본기독교단 재일한국인 조선인·일한연대특별위원회위원장), 相馬信夫(카톨릭주교, 카톨릭 정의평화협의회 회장), 小川ルミ子(일본부인회의 본부사무국장), 鎌倉孝夫(埼玉대학교수), 吉田義久(相模여자대학교수), 原田重雄(주식회사 原田빌딩사장), 山川暁夫(오사카경제법과 대학교수), 渡辺一夫(재일한국인 정치범을 지원하는 회 전국회의 공동대표), 渡辺健樹(일한민중연대간담회 사무국장), 田 英夫(국회의원 사민당), 佐佐木秀典(국회의원 민주당), 谷川部 理(국회의원 신사회당위원장), 西尾正二(카톨릭 玉造교회 신부), 武田隆雄(일본 山妙法寺스님), 資沼 紀子(作新學院여자단대 교수), 辻本清美(국회의원 사민당), 中北龍太郎(변호사), 內田雅敏(변호사), 松井茂樹(변호사), 前田康博(北九州 대학교수), 長沼節夫(저널리스트), 木 健三(카톨릭 정의평화협의회 회장), 石田 雄(동대 명예교수), 武者小路公秀(明治학원대학교수), 伊藤 晃 (千葉공대교수), 藤井治夫(군사문제평론가), 宮島信夫(神奈川대학교수), 天野恵一(反 천황제련학회의), 太田武二(命寶네트워크), 三宅和子(교과서문제를 생각하는 시민회), 柴田高好(동경경제대학명예교수), 信太正道(不戰兵士회), 岩松繁俊(나가사키대학명예교수), 古澤久美子(北區의회 의장), 藤原位憲(일본기독교단 총간사대행), 中岡基明(전국일반노동조합 전국협의회, 중앙집행위원회), 新美 隆 (변호사), 大倉一美(카톨릭신부, 카톨릭 동경정의와 평화위원회 사무국장), 石黨清倫(저술가), 山川暁夫(오사카 경제법과대학교수), 矢澤 賢 (동경도 노동조합 연합회 위원장), 片平 博 (카톨릭 정의와 평화협의회), 芳村光輝(의사) 외 多數

團 體

일본크리스트교단 王子北교회, 재일한국인『정치범』을 지원하는전국회의, 한국인권기금국제센터, 아시아문제연구회, 한국노동자지원연락회의, 한국정치범을 구원하는동경·神奈川모임, 재일한국인『정치범』을 지원하는松戶시민모임, 재일한국인『정치범』을 지원하는 北區시민의모임, 활동가집단사상운동, 立川자위대감시 센터마을, 전통일노동조합, 해외기술자연수협회노동조합, 아시아공동행동일본연락회의, 일본妙法寺, 荒川일한문제를 생각하는 모임, 유정식씨를 지원하는 모임, 평화활동21, 카톨릭 정의와 평화협의회, 일한민중연대 간담회, 문경조선사연구회, 동경수도노동조합 외 多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全國聯合 代表團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천영세 전국연합 공동의장
이수금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귀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박정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양재덕 한국노동운동협의회 의장
유기홍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최규업 전국연합 정책위원장
조성범 전국연합 자주통일위원장 대행
조성우 전국연합 민생위원장
김용한 전국연합 미군기지 대책위원장
한충목 전국연합 사무처장

加入會員團體

가입 조직 (24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한국노동운동협의회
가톨릭노동사무전국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민주주의민족통일서울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경기도협의회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충북사회민주단체연대회의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북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경남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울산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부산본부, 민주주의민족통일제주연합

참관 조직 (5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민족통일원주연합(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